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3. 10. 27.

#### 저작권

국제회계기준(IFRSs) 및 부속 출판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발표한 것입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5 IFRS Foundation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국제회계기준재단(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undation: IFRS Foundation) 및 이 출판물의 저작자와 출판자는, 이 출판물에 의거하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은 자의 부주의 등 여하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제회계기준(IAS) 및 해석서(Interpretations)를 포함하는 국제회계기준(IFRSs)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s)의 정본은 IASB가 발표한 영문판입니다. 사본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출판 및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국제회계기준재단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이 없이, 이 출판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번역, 재인쇄, 재출간 또는 전자, 기계 또는 기타의 방법(복사와 리코딩을 포함한 정보저장과 검색의 방법으로서 알려진 것과 이후 개발될 것을 포함)에 의한 형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재단의 동의 하에 국제회계기준과 이 출판물에 포함된 관련 문서들의 한국어 번역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에 대한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게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은 국제회계기준재단이나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3층, 04513, 전화: +82 (0)2 6050-0150, 팩스: +82 (0)2 6050-0170, 이메일: webmaster@kasb.or.kr, 홈페이지: www.kasb.or.kr

국제회계기준재단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의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사용과 관련하여, 한국어로 구성된 일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 또는 채택한 번호가 매겨진 모든 국제회계기준(IAS) 및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의 본문,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나 상설해석위원회(SIC)가 발표한 해석서의 본문(이하'기준서 본문')으로 구성됩니다.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서 본문을 한국어로 재출간할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재단은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모든 권리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한국어로 구성된 기준서 본 문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 COPYRIGHT NOTIC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together with their accompanying documents are issued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5 IFRS Foundation

The IASB, the IFRS Foundation, the authors and the publishers do not accept responsibility for loss caused to any person who acts or refrains from acting in reliance on the material in this publication, whether such loss is caused by negligence or otherwise.

IFRSs (which includ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Interpretations) are copyrigh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Foundation. The authoritative text of IFRSs is that issued by the IASB in the English language. Copies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Please address publication and copyright matters to: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translated, reprinted or reproduced or utilised in any form either in whole or in part or by any electronic, mechanical or other means, now known or hereafter invented, including photocopying and recording, or in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prior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related material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has been approved by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in Korea with the permission of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is the copyright of the IFRS Foundation. Copies of the Korean translation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or the KASB, KCCI Building 3rd Flr., 39 Sejong-daero, Jung-gu, Seoul, 04513, Korea.

Tel: +82 (0)2 6050 0150 Fax: +82 (0)2 6050 0170 Email: webmaster@kasb.or.kr

Web: www.kasb.or.kr

The IFRS Foundation has waived the right to assert its copyright in certain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such materials consist of all numbered, bar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in the form that they are issued or adopted by the IASB, or Interpretations issued by the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S IC) or 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S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sovereign consent and in connection with any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oduction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is permitted for any use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nd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FRS Foundation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 목 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문단번호
목적	1~2
적용	한3.1
적용범위	3~5A
금융상품의 종류와 공시수준	6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	7~30
재무상태표	8~19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	8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9~1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11A~11B
재분류	12B~12D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13A~13F
담보	14~15
대손충당금	16A
복수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복합금융상품	17
채무불이행과 계약 위반	18~19
포괄손익계산서	20~20A
수익・비용・손익의 항목	20~20A
그 밖의 공시	21~30
회계정책	21
위험회피회계	21A~24G
위험관리전략	22A~22C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	23A~23F

# 목 차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서 위험회피회계의 효과	24A~24F
신용 익스포저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옵션	24G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	24H
이자율지표 개혁에 관한 추가 공시	24I~24J
공정가치	25~30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	31~42
질적 공시	33
양적 공시	34~42
신용위험	35A~38
범위와 목적	35A~35E
신용위험 관리실무	35F~35G
기대신용손실에서 생기는 금액에 대한 양적 정보와	
질적 정보	35H~35L
신용위험 익스포저	35M~36
담보물과 그 밖의 신용보강	38
유동성위험	39
시장위험	40~42
민감도 분석	40~41
그 밖의 시장위험 공시	42
금융자산 양도	42A~42H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	42D
전체가 제거된 양도 금융자산	42E~42G
보충 정보	42H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	42I~42S
시행일과 경과 규정	43~44JJ
기준서 등의 대체	45

목 차

부록 A. 용어의 정의

부록 B. 적용지침

B1~B5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7호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 된다.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실무적용지침 (IG1-IG41)

[결론도출근거]

IFRS 7의 결론도출근거 (BC1-BC73)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는 문단 1부터 45까지와 부록 A, B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단의 권위는 같다. **궁게 표시**된 문단에서는 주요 원칙을 설명한다. 부록 A에서 정의하는 용어가 이 기준서에 처음 나올 때에는 **궁은 기울임글자꼴**로 적고 그 다음에는 일반글자꼴로 적는다. 다른 용어의 정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용어집에 있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적, 결론도출근거, '기업회계기준 전문'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서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을 위한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 목적

-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 사항을 평가할 수 있 도록 금융상품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 (1)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
  - (2) 보고기간 말 현재와 회계기간에 노출되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와 기업이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 2 이 기준서의 원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서 규정한 금융자산과 금융 부채의 인식, 측정, 표시에 관하여 원칙을 보완하는 것이다.

## 적용

한3.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적용범위

#### 범위

3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7호 '별도재무제표',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지분.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0호, 제1027호, 제1028호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규정을 적용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해당 투자지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의 투자지분에 연계된 파생상품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정의하는 지분상품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파생상품에도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를 적용하는 종업원급여 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서 정의하는 보험계약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 다만 다음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 다.
  -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파생상품
  -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그 기준서에 따라 분리된 투자요소. 다만 분리된 투자요소 가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다)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보험계약의 계약발행자가 그 계약의 인식과 측정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 하는 경우의 발행자의 권리와 의무. 그러나 기업회계기준 서 제1117호의 문단 7(5)에 따라 계약발행자가 기업회계기

준서 제1117호를 적용하여 그 계약을 인식하고 측정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한다.

- (라)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으로서 신용이나 지급약 정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에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 문단 7(8)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2.1(5)(라) 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 경우 해당 계 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
- (마)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약에 따라 발생할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결제해야 하는 금액으로 보험사건에 대한보상이 한정되는 보험계약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8A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
-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는 주식기준 보상거래에 따른 금융상품, 계약, 의무.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대상인 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6A·16B나 문단 16C·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하는 금융상품
- 4 이 기준서는 인식된 금융상품과 인식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인식된 금융상품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가 포함되고, 인식되지 않은 금융상품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서는 벗어나더라도,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 5 이 기준서는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 중 기업회 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 적용한다.

5A 문단 35A~35N의 신용위험 공시 요구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정하는 권리에 대해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그러한 권리에 적용한다. 이 문단에서 금융자산이나 금융상품은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이 권리를 포함하다.

# 금융상품의 종류와 공시수준

이 기준서에 따라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시 하는 정보의 특성에 맞게,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 을 종류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개별 항목 과 대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

7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한다.

#### 재무상태표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

- 8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하는 다음의 각 범주별 장부금 액을 재무상태표나 주석에 공시한다.
  -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별 도로 각각 표시한다.
    -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7.1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 이나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 (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3.3.5의 선택권에 따라 당기 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33A의 선택권에 따라 당기 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의무적으로 당기손익-공 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2)~(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5)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별 도로 각각 표시한다.
  -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7.1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 이나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
  - (山)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 하는 금융부채
- (6)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7)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별도로 각각 표시한다.
  - (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5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 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 에 대한 투자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9 기업이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단)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지 않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보고기간 말 현재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신용위험 에 대한 최대 익스포저(문단 36(1) 참조)
- (2) 관련 신용파생상품이나 이와 비슷한 금융상품이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익스포저를 줄이는 금액(문단 36(2)참조)
- (3) 회계기간 중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생긴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공정가치 변동금액과 변동누계액. 이는 다음 중하나의 금액으로 결정한다.
  - (가) **시장위험**을 일으키는 시장상황의 변동에 기인하지 않은 공 정가치 변동금액
  - (i) 해당 자산의 신용위험의 변동이 원인인 공정가치 변동금액을 더 충실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대체 방법을 사용하여 산출한 금액

시장위험을 일으키는 시장상황의 변동에는 관측된 (기준)금리,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등의 변동이 포함 된다.

- (4) 금융자산이 지정된 이후의 해당기간에 생긴 관련 신용파생상 품이나 이와 비슷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금액과 변동누 계액
- 10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2.2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고 그 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효 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도록 요구(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7 참조)된다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생긴 해당 금융부채의 공정가 치 변동누계액(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효과를 결정하는 지침 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7.13~B5.7.20 참조)
  - (2)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계약조건에 따라 채권자에게 만기에 상환할 금액과의 차이
  - (3) 보고기간에 자본 내에서 대체된 누적손익과 그러한 대체의 이유

- (4) 보고기간에 부채를 제거하였다면 제거로 실현되어 기타포괄손 익에 표시한 금액
- 10A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2.2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고 그 부채의 공정가치의 모든 변 동(그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 포함)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도 록 요구(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7과 5.7.8 참조)된다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보고기간에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생긴 해당 금융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과 변동누계액(부채의 신용위험 변 동효과를 결정하는 지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7.13~5.7.20 참조)
  - (2)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계약조건에 따라 채권자에게 만기에 상환할 금액과의 차이
- 11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문단 9(3), 10(1), 10A(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7(1) 에 따르기 위해 사용한 방법의 자세한 설명과 사용한 방법이 적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
  - (2) 문단 9(3), 10(1), 10A(1),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7(1)을 따르기 위해 재무상태표나 주석에 공시한 사항이 신용위험 변동에서 생기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을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결론을 내린 이유와 목적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요인
  - (3)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것이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자세히 설명(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5.7.7과 5.7.8 참조).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당기손 익에 표시하도록 요구한 경우(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5.7.8 참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B5.7.6에

서 설명한 경제적 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공시에 포함해야 한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 11A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5에서 허용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으로 지정한 항목
  - (2) 이 표시 대안을 사용하는 이유
  - (3) 해당 투자 각각의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
  - (4) 보고기간에 인식한 배당금(보고기간에 제거한 지분상품과 관련된 금액과 보고기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상품과 관련된 금액을 별도로 표시)
  - (5) 보고기간에 자본 내에서 대체된 누적손익과 그러한 대체의 이유
- 11B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처분하는 이유
  - (2) 제거일 현재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 (3) 처분시점의 누적손익

#### 재분류

12~12A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12B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4.1에 따라 당기나 이전 보고기 간에 금융자산을 재분류하였다면 재분류한 금융자산을 공시한다. 이러한 사건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재분류일
  - (2) 사업모형 변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그 변경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적 설명
  - (3) 범주별로 재분류한 금액
- 12C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4.1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한 금융자산에 대해 재분류한 이후 해당 자산을 제거하기 전까지 매 보고기간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재분류일에 결정한 유효이자율
  - (2) 인식한 이자수익
- 최근의 연차 보고일 이후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로 재분류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 주에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 한다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보고기간 말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 (2) 금융자산을 재분류하지 않았다면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이나 기 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을 공정가치 손익
- 1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13A 문단 13B~13E의 공시는 이 기준서의 다른 공시 규정을 보완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에 따라 상계되는 인식된 모든 금융상품은 문단 13B~13E의 공시를 해야 한다. 이러한 공시는 인 식된 금융상품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에 따라 상계 되는지에 상관없이,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인식된 금융상품에도 적용한다.

- 13B 상계약정이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이러한 공시에는 문단 13A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인식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와 관련된 상계 권리의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이 포함된다.
- 13C 문단 13B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문단 13A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인식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각각에 대해 다음의 양적정보를 보고기간 말에 공시한다.
  - (1) 인식된 해당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총액
  - (2)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순액을 결정할 때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의 기준에 따라 상계된 금액
  - (3)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순액
  - (4)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금액(문단 13C(2)에 포함되는 금액은 제외). 다음을 포함한다.
    - (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의 상계기준 중 일부나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는 인식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금액
    - (내) 금융담보(현금담보 포함)와 관련된 금액
  - (5) 위의 (3)의 금액에서 (4)의 금액을 차감한 후의 순액
  - 이 문단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다른 형식이 더 적절하지 않다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로 구분하여 표 형식으로 표시한다.
- 13D 하나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문단 13C(4)에 따라 공시하는 총액은 그 금융상품에 대한 문단 13C(3)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 13E 문단 13C(4)에 따라 공시하는,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 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인식된 금융자산·금융부채와 관련된

상계 권리에 대한 설명(이러한 권리의 특성 포함)을 공시사항에 포함한다.

13F 문단 13B~13E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재무제표에 대한 둘 이상의 주석에 공시된다면, 그 주석끼리 서로 참조하였음을 표시한다.

#### 담보

- 14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부채 또는 우발부채의 담보로 제공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기 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3.2.23(1)에 따라 재분류한 금액 포함)
  - (2) 담보와 관련된 조건
- 15 담보물 소유자(담보 제공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 니더라도 기업이 보유한 담보물(금융자산이나 비금융자산)을 매도 하거나 다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 한다.
  - (1) 보유하고 있는 담보물의 공정가치
  - (2) 매도하거나 다시 담보로 제공한 담보물의 공정가치와 이러한 담보물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의 유무
  - (3) 담보물의 사용에 관련된 조건

#### 대손충당금

- 16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16A 기업회계기준서 1109호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 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에 의해 감소되 지 않으며, 금융자산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손실충당금

을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무제표의 주 석에 손실충당금을 공시한다.

#### 복수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복합금융상품

17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28 참조)을 발행하였고 그 금융상품에 내재된 복수의 파생상품의 가치가 상호의존적이라면(예: 상환이 가능한 전환 채무상품), 이러한 특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시한다.

## 채무불이행과 계약 위반

- 18 보고기간 말 현재 인식된 **차입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회계기간 중 이러한 차입금의 원금, 이자, 감채기금, 상환조건 의 (채무)불이행 명세
  - (2) 보고기간 말 현재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차입금의 장부금액
  - (3) 재무제표의 발행이 승인되기 전에 (채무)불이행의 해소 여부 또는 차입 조건의 재협상 여부
- 19 회계기간에 문단 18에서 기술한 사항 외에 차입약정의 조건을 위반하여 대여자가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면 기업은 문단 18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정보를 공시한다. 다만, 보고기간 말이나 그 전에 계약 위반 상태가 해소되거나 차입조건을 재협상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포괄손익계산서

수익 · 비용 · 손익의 항목

- 20 다음과 같은 수익·비용·손익의 항목을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한다.
  - (1) 다음과 같은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 (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7.1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 이나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의무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부채)와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는 기타포 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의 금액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나)~(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마)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5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 (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의 금액과 제거 시점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2)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총 이자수익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금융부채의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총 이자비용
  - (3) 다음에서 생기는 수수료 수익과 수수료 비용. 다만, 유효이자 율을 결정할 때 포함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 (내) 개인, 신탁, 퇴직연금, 그 밖의 기관을 대리하여 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신탁활동이나 이와 비슷한 활동
- (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5)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20A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제거로 인해 포괄손익계산서 에 인식하는 손익의 분석내용을 공시한다. 이러한 금융자산의 제 거에서 생기는 손익은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 공시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이유를 포함한다.

#### 그 밖의 공시

#### 회계정책

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117에 따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한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한 금융 상품 측정기준에 대한 정보는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위험회피회계

- 21A 기업이 회피하려는 위험 익스포저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 문단 21B~24F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위험회피회계 공시에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 (1) 위험관리전략과 위험관리를 위한 적용방법
  - (2) 위험회피활동이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3) 위험회피회계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에 미치는 영향

- 21B 규정된 공시사항은 재무제표의 단일의 주석이나 별도의 절에서 표시한다. 다른 보고서(예: 재무제표와 같은 조건과 같은 시기에 재무제표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경영진분석보고서, 위험보고서)를 상호 참조하여 재무제표에 포함한 정보로 이미 다른 보고서에 표시한 정보는 거듭해서 공시할 필요는 없다. 정보를 상호 참조하여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재무제표는 불완전하다.
- 21C 문단 22A~24F에 따라 정보를 위험범주별로 구분하여 공시할 때 위험을 회피하기로 결정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위험 익스 포저를 기준으로 각 위험범주를 결정한다. 모든 위험회피회계 공시사항에 위험범주를 일관되게 결정한다.
- 21D 문단 21A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업은 다음을 결정한다. (다만,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
  - (1) 공시가 얼마나 상세해야 하는지
  - (2) 공시 요구사항의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강조의 정도
  - (3) 통합과 세분화의 적정한 수준
  - (4) 재무제표이용자가 양적 공시정보를 평가하기 위한 추가 설명 의 필요 여부

다만,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서 관련 정보의 공시를 위해 이용한 통합과 세분화는 같은 수준이어 야 하다.

#### 위험관리전략

- 2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22A 위험을 회피하기로 결정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위험 익스 포저의 각 위험범주별로 위험관리전략을 설명한다. 아울러, 재무 제표이용자가 다음(예시)을 평가할 수 있는 설명을 포함한다.

- (1) 각 위험이 어떻게 생기는지
- (2) 각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모든 위험에 대해 항목을 전체로 위험회피 하는지, 항목의 위험요소(또는 위험요소들)별로 위험회피를 하는지와 그 이유를 포함한다.
- (3) 기업이 관리하는 위험 익스포저의 정도
- 22B 문단 22A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정보에는 다음의 설명을 포함 한다(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 (1) 위험 익스포저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된 위험회피수단
  - (2)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간의 경제적 관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 (3) 위험회피비율을 설정하는 방법과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천
- 22C 특정 위험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때(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3.7 참조) 문단 22A와 22B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 뿐만 아니라 다음 사항에 대한 질적 또는 양적 정보를 제공한다.
  - (1)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위험요소를 결정하는 방법(위험 요소와 전체 항목 사이의 관계의 특성에 대한 설명 포함)
  - (2) 위험요소가 전체 항목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예: 지정된 위험요소가 과거에 전체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의 평균 80%를 차지한다.)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

- 2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23A 문단 23C에서 제외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무제표이용자가 위험회 피수단의 조건을 평가하고 위험회피수단이 기업의 미래현금흐름

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양적 정보를 위험범주별로 공시한다.

- 23B 문단 23A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의 내역을 공시 하다.
  - (1) 위험회피수단의 명목 금액의 시기 명세
  - (2) 적용할 수 있다면, 위험회피수단의 평균가격이나 평균비율(예: 행사가격이나 선도가격 등)
- 23C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 모두 자주 변동하기 때문에 위험회피관계를 다시 구성(중단하고 재시작)하는 경우(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6.5.24(2)의 예와 같이 오랫동안 똑같이 유지되지 않는 익스포저와 이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에 동적 과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기업은 다음에 따른다.
  - (1) 문단 23A와 23B에서 규정한 공시를 면제
  - (2)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가) 그 위험회피관계와 관련하여 궁극적인 위험관리전략이 무 엇인지에 대한 정보
    - (山) 위험회피회계를 사용하고 특정한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여 위험관리전략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설명
    - (다) 해당 위험회피관계와 관련하여 기업 절차의 일부로 위험회 피관계를 중단하고 재시작하는 빈도를 표시
- 23D 위험회피기간에 위험회피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천에 대한 설명을 위험범주별로 공시한다.
- 23E 위험회피가 비효과적인 그 밖의 원천이 위험회피관계에서 나타난다면, 위험범주별로 그 원천을 공시하고 이에 따라 위험회피가 비효과적인 부분을 설명하다.

23F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에는, 이전 기간에 위험회피회계를 사용해왔으나 더 이상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예상거래에 대한설명을 공시한다.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서 위험회피회계의 효과

- 2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24A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항목과 관련하여 위험회피의 각 유형(공 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을 위험범주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금액을 표 형식으로 공시한다.
  - (1) 위험회피수단의 장부금액(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별도로 표시)
  - (2) 위험회피수단을 포함한 재무상태표의 항목
  - (3) 해당기간에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하기 위해 기초로 사용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
  - (4)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톤이나 세제곱미터와 같은 양적 정보를 포함)
- 24B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하여 위험회피의 유형을 위험범주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금액을 표 형식으로 공시한다.
  - (1) 공정가치위험회피
    - (가)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자산과 부채를 별도로 표시)
    - (나)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포함 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위험회피조정누적액(자산 과 부채를 별도로 표시)
    - (대) 위험회피대상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항목
    - (라) 해당기간에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변동

-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5.10에 따라 위험회피 손 익 조정을 위해 중단한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해 재무상태 표에 남아있는 공정가치위험회피조정누적액
- (2) 현금흐름위험회피와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 (개) 해당기간에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하기 위하여 기초로 사용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변동(현금호름 위험회피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5.11(3)에 따라 인식하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가치의 변동)
  -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5.11과 6.5.13(1)에 따라 계속해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위험회피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과 외화환산적립금의 잔액
  - (다) 더 이상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위험회피관계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과 외화환산적립금의 잔액
- 24C 위험회피유형을 각 위험범주별로 별도로 구분하여 다음의 금액을 표 형식으로 공시한다.
  - (1) 공정가치위험회피의 경우
    - (가)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 항목의 위험회피손익의 차이)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 액(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5에 따라 공정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것을 선택한 기업 은 지분상품의 위험회피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
    - (J)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인식한 항목을 포함하는 포괄손익계산서의 항목
  - (2) 현금흐름위험회피와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의 경우
    - (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보고기간의 위험회피손익
    - (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F) 인식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포함한 포괄손익계 산서의 항목

- (라)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나 외화환산적립금에서 재분류 조정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참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였으나 더 이상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의 금액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대체되는 금액과의 차이)
- (마) 재분류조정에 포함되는 포괄손익계산서의 항목(기업회계기 준서 제1001호 참조)
- (ii) 순포지션 위험회피의 경우에 포괄손익계산서의 별도 항목 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손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6.4)
- 24D 문단 23C의 면제가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의 규모가 해당기간 동안 통상적인 규모를 나타내지 못할 때(예: 보고기간 말의 규모가 보고기간의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그 규모가 통상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사실과 이유를 공시한다.
- 24E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자본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조 정내역과 기타포괄손익의 분석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시 한다.
  - (1) 최소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5.11(4)(가와 (4)(다)에 따라 회계처리된 금액뿐만 아니라 문단 24C(2)(가와 (2)(라)의 공시와 관련된 금액을 구분한다.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5.15에 따라 옵션의 시간가치를 회계처리하는 경우, 다음 (가)와 (나)를 구분한다.
    - (가) 거래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을 회피하는 옵션의 시 간가치와 관련된 금액
    - (L) 기간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을 회피하는 옵션의 시 간가치와 관련된 금액
  -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5.16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 우, 다음 (개와 (내)를 구분한다.

- (가) 거래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을 회피하는 선도계약 의 선도요소와 금융상품의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와 관련 된 금액
- (나) 기간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을 회피하는 선도계약 의 선도요소와 금융상품의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와 관련 된 금액
- 24F 문단 24E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위험범주별로 별도로 공시한다. 위험별로 정보를 세분화하여 재무제표의 주석에 공시할 수 있다.

신용 익스포저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옵션

- 24G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파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일부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7.1에 따라서 당기손익-공정 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해온 신용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보고기간의 기초와 기말의 명목금액과 공정가치 각 금액의 조정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7.1에 따라 금융상품 또는 금 융상품의 일부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경 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익
  - (3)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일부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중단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7.4에 따라 새로운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이 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이와 관련된 명목금액이나 원금(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비교정보를 제공한다면 후속기간에 해당 공시를 계속할 필요는 없다.)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

- 24H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8.4~6.8.12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102D~102N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 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 (1) 위험회피관계가 노출되어 있는 유의적인 이자율지표
  - (2) 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위험 익스포저 중 이자율지표 개혁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정도
  - (3)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방법
  - (4) 이 문단들을 적용할 때 사용한 유의적인 가정과 판단에 대한 기술(예: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해 언제 더 이상 나타나 지 않는지에 대한 가정과 판단)
  - (5) 해당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이자율지표 개혁에 관한 추가 공시

- 24I 이자율지표 개혁이 기업의 금융상품과 위험관리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
  - (1) 이자율지표 개혁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에 기업이 노출된 경우 그 위험의 특성과 범위, 그리고 기업이 이 러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 (2)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 진척도, 그리고 이러한 전환을 관리하는 방법
- 24] 문단 24[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
  - (1)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을 관리하는 방법과 보고일 현재 그 진척도, 그리고 이러한 전환으로 인해 금융상품에 노출된 위험
  - (2) 이자율지표 개혁의 대상이 되는 유의적인 이자율지표별로 세 분화하여 보고기간 말 현재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이 완

료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한 양적 정보를 다음과 같이 구분 하여 공시한다.

- (개) 비파생금융자산
- (나) 비파생금융부채
- (대) 파생상품
- (3) 문단 24J(1)에서 식별된 위험으로 기업의 위험관리전략(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22A 참조)이 변동되었다면, 이러한 변동에 대한 설명

#### 공정가치

- 25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종류별(문단 6 참조)로 공정가치와 장부금 액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공시한다. 다만, 문단 29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 26 공정가치를 공시할 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종류별로 분류하지 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이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는 정도까지만 그 공정가치를 상계한다.

#### 27~27B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일부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같은 자산 또는 부채의 활성시장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으로 입증할 수 도 없고,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만을 이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 기 초하지도 않기 때문에(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1.2A 참 조), 그러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에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종 류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시장참여자들이 자산의 가격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였을 요소(예: 시간)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초 인식

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1.2A(2) 참조)

- (2) 기초와 기말 현재 당기손익으로 아직 인식하지 아니한 총 차이금액과 그 차이조정
- (3)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이유(공정가치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한 설명 포함)
- 29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 (1)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에 상당히 가까운 경우. 이러한 예로는 단기 매출채권이나 단기 매입채무와 같은 금융상품을 들 수 있다.
  -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4) 리스부채
- 30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

- 31 보고기간 말 현재 금융상품에서 생기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 32 문단 33~42의 공시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과 이러한 위험의 관리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위험은 전형적으로 신용위 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을 포함하지만, 이러한 위험에만 한정되 지 않는다.
- 32A 양적 공시와 관련하여 질적 공시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관련 된 공시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질적 공

시와 양적 공시의 상호작용은 이용자가 기업이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더 잘 평가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공시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질적 공시

- 33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각 유형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와 위험이 생기는 형태
  - (2) 위험관리의 목적, 방침, 절차와 위험측정방법
  - (3) 위 (1) 또는 (2)가 과거 기간과 달라진 내용

#### 양적 공시

- 34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각 유형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보고기간 말 현재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대한 간략한 양적 자료. 이러한 사항은 이사회나 대표이사 등과 같은 주요 경영 진(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의 정의 참조)에 게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공시한다.
  - (2) 문단 35A~42의 공시사항. 다만, 위 (1)에 따라 공시한 부분은 제외하다.
  - (3) 위험의 집중에 관한 정보. 다만, 위 (1)과 (2)에 따라 명확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35 보고기간 말 현재를 기준으로 공시된 양적 자료가 회계기간 중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 중 익스포저를 반영하는 정보를 추가로 공시하다.

#### 신용위험

범위와 목적

- 35A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금융상품 에 문단 35F~35N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다.
  - (1)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의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연체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였지만 변경되었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 문단 5.5.15에 따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하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는 문단 35J(1)을 적용한 다.
  - (2) 리스채권에는 문단 35K(2)를 적용하지 않는다.
- 35B 문단 35F~35N에 따른 신용위험 공시로 재무제표이용자는 미래현 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신용위험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신용위험 공시로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기업의 신용위험 관리실무에 대한 정보와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가정, 정보를 포함하여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방법과 측정 방법
  - (2) 재무제표이용자가 기대신용손실에서 생긴 재무제표의 금액, 기 대신용손실액의 변동과 그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정보
  - (3)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집중도를 포함한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 포저에 대한 정보(기업의 금융자산에 내재된 신용위험과 신용 대출약정)
- 35C 다른 보고서(예: 재무제표이용자가 재무제표와 같은 조건과 같은 시기에 이용할 수 있는 경영진분석보고서나 위험보고서)를 상호 참조하여 재무제표에 포함한 정보로서 이미 다른 보고서에 표시한 정보는 거듭하여 공시할 필요는 없다. 정보를 상호 참조하여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재무제표는 불완전하다.
- 35D 문단 35B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시의 상세정도, 공시 요구사항의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강조의

정도, 통합과 세분화의 적정수준, 재무제표이용자가 공시된 양적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 추가설명이 필요한지를 고려한다.

35E 문단 35F~35N에 따라 제공한 정보가 문단 35B의 목적을 이루기 에 충분하지 않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 신용위험 관리실무

- 35F 신용위험 관리실무를 설명하고 신용위험 관리실무가 기대신용손 실의 인식과 측정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한다. 이 목적을 이 루기 위하여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한다.
  - (1)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 를 판단하는 방법. 이에는 다음 (가)와 (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판단 방법을 포함한다.
    - (가) 금융상품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0에 따라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본다(이 문단을 적용하는 금융상 품의 종류 포함)
    -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1의 간주규정(금융자산 의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한 경우에 최초 인식 후 신용위 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봄)이 반증된다.
  - (2) 채무불이행에 대한 기업의 정의와 그 정의를 선택한 이유
  - (3) 기대신용손실을 집합기준으로 측정한다면 금융상품을 집합으로 구성하는 방법
  - (4)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 (5) 기업의 제각정책(계약상 현금흐름의 회수에 대한 기대가 합리 적이지 않다는 지표와 제각되었지만 여전히 회수활동이 계속 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 포함)

- (6)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2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 다음을 포함하여 공시한다.
  - (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중에 변경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기업회계기 준서 제1109호 문단 5.5.5에 따라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 (나) 위 (카의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을 후속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3에 따라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시 측정하는 정도를 관찰하는 방법
- 35G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5절의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요소, 가정, 추정방법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투입요소, 가정의 근거, 다음에 사용한 추정기법
    - (개) 12개월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 (H)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 는지의 판단
    - 때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인지의 판단
  - (2)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할 때 미래전망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거 시경제 정보의 활용을 포함)
  - (3) 보고기간 중 추정방법이나 유의적인 가정의 변경과 그 변경의 이유

기대신용손실에서 생기는 금액에 대한 양적 정보와 질적 정보

35H 손실충당금의 변동과 변동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손실충당금의 기초 잔액에서 기말 잔액으로의 조정은 기간 동안의 변동을 표 형식으로 금융상품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각각 공시한다.

- (1)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된 손실충당금
- (2)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된 손실충당 금
  - (개)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L) 보고기간 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단, 최초 발생시점 이나 매입할 때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하 '취 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 (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5에 따라 손실충당금을 측정한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 (3)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보고기간에 최초로 인식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조정내역 뿐만 아니라 최초 인식시점에 할인되지 않은 기대신용손실의 총 금액을 공시한다.
- 35I 재무제표이용자가 문단 35H에 따라 공시되는 손실충당금의 변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총 장부금액의 유의적인 변동이 손실충당금의 변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설명을 공시한다. 문단 35H(1)~(3)에서 열거한 손실충당금을 표시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이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된 양적이고 질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손실충당금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금융상품의 총 장부금액의 변동의 예는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1) 보고기간에 발행되었거나 취득한 금융상품으로 인한 변동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해당 금융자산은 제거에는 해당하지 않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
  - (3) 보고기간에 제거된 금융상품으로 인한 변동(제각한 금융상품 포함)
  - (4) 손실충당금을 12개월 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함으로써 비롯되는 변동

- 35J 제거에는 해당하지 않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의 특성과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고 그러한 변경이 기대신용 손실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공 시한다.
  - (1) 손실충당금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 정해온 경우에 보고기간 중에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된 금융 자산의 변경 전 상각후원가와 변경에 따라 인식한 순손익
  - (2)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최초 인식 후 보고기간 중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으로 바뀐 금융자산의 보고기간 말 총 장부금액
- 35K 재무제표이용자가 기대신용손실액에 대한 담보 효과와 그 밖의 신용보강의 효과를 이해하도록 금융상품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보유하고 있는 담보나 그 밖의 신용보강(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른 상계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계약정)을 고려하지 않고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익스포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금액
  - (2) 보유하고 있는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에 대한 서술적 설명
    - (개) 보유하고 있는 담보의 특성과 질에 대한 설명
    - (L) 보고기간에 담보나 신용보강의 가치가 하락되었거나 기업 의 담보정책 변경으로 인한 담보나 신용보강의 질의 유의 적인 변동에 대한 설명
    - (다) 담보가 있어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 (3) 보고일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담보 와 그 밖의 신용보강에 관한 양적 정보(예: 담보와 그 밖의 신 용보강으로 신용위험이 감소되는 정도의 계량화)

35L 보고기간에 제각되었지만 여전히 회수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금융 자산의 계약상 미회수 금액을 공시한다.

#### 신용위험 익스포저

- 35M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를 평가하고 유의적 인 신용위험의 집중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신용위험 등급별로 금 융자산의 총 장부금액, 대출약정의 신용위험 익스포저, 금융보증 계약의 신용위험 익스포저를 공시한다. 이 정보는 다음의 금융상 품에 대해 별도로 공시한다.
  - (1) 손실충당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 (2) 손실충당금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 (가)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나) 보고기간 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단,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5에 따라 손실충당금을 측정한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 (3)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 35N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5를 적용하는 매출채권, 계약 자산, 리스채권에 대해서 문단 35M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는 충당 금 설정률표에 기초할 수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35).
- 36 이 기준서의 적용대상이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 요 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서 금융상품의 종 류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보고기간 말 현재 신용위험의 최대 익스포저를 가장 잘 나타 내는 금액. 이 경우에는 보유한 담보나 그 밖의 신용보강(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상계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계약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이 신용위험의 최대 익스포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 공시를할 필요는 없다.
- (2) 보유한 담보 및 그 밖의 신용보강, 신용위험의 최대 익스포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금액(위 (1)에 따라 공시하거나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을 나타내는 금액)에 미치는 재무 영향(예: 담보와그 밖의 신용보강으로 신용위험이 줄어드는 정도를 계량화)
-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37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담보물과 그 밖의 신용보강

- 38 회계기간에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그 밖의 신용보강(예: 보증)을 요구하여 취득하게 된 금융자산 또는 비금융자산이 다른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서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고일 현재 해당 자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자산의 특성 및 장부금액
  - (2) 자산을 쉽게 현금화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의 처분 방침이 나 영업상 이용 방침

#### 유동성위험

- 39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남은 계약기간을 나타내는 비파생금융부채(발행된 금융보증계약 포함)의 만기분석

- (2) 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 파생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가 현금 흐름의 시기를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을 만기분석에 포함한다(문단 B11B 참조).
- (3) 위 (1)과 (2)에 내재된 유동성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 명

#### 시장위험

#### 민감도 분석

- 40 문단 41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보고기간 말 현재 노출된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 분석. 이러한 분석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reasonably possible) 관련 위험변수의 변동이 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 (2)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때 사용한 방법과 가정
  - (3) 이전 회계기간에 적용한 방법과 가정을 바꾼 경우 그 변경 내용과 이유
- 41 위험변수(예: 이자율과 환율) 사이의 상호의존도를 반영하는 민감도 분석[예: 최대손실예상액(VaR, value-at-risk)]을 수행하여 금융위험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문단 40에서 규정하는 분석 대신에 이민감도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사항도 공시한다.
  - (1) 이러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때 사용한 방법과 자료에 내재된 주요 매개변수 및 가정에 대한 설명
  - (2) 사용한 방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 관련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 치를 해당 정보가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약에 대한 설명

#### 그 밖의 시장위험 공시

42 문단 40 또는 41에 따라 공시한 민감도 분석이 금융상품에 내재 된 위험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예: 연말 익스포저가 연중 익스포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감도 분석이 위험 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공 시한다.

### 금융자산 양도

- 42A 금융자산 양도와 관련된 문단 42B~42H의 공시 규정은 이 기준서의 다른 공시 규정을 보충한다. 문단 42B~42H의 공시 규정은 재무제표에서 하나의 주석으로 표시한다. 해당 양도거래가 있었던시기와 관계없이, 보고일에 존재하나 제거되지 않은 모든 양도 금융자산과 양도자산에 대한 지속적 관여에 대해 필요한 공시를 한다. 해당 문단의 공시 규정을 적용하는 목적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양도된 금융자산)의 전체나 일부를 양도한 것이다.
  - (1) 해당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받을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 (2) 해당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받을 계약상 권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어떤 약정에 따라 하나 이상의 수취인에게 해당 현금흐름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42B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을 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 (1)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과 관련 부채의 관계에 대한 이해
  - (2)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자의 지속적 관여의 특성 및 관련된 위험에 대한 평가
- 42C 문단 42E~42H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목적상 양도의 일부로, 양도자가 양도한 금융자산에 내재된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유지하거나 양도한 금융자산과 관련된 새로운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양도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다. 문단 42E~42H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목적상 다음은 지속적 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 (1) 법적 소송의 결과로 양도를 무효화할 수 있는 부정양도와 합리성, 선의, 공정거래의 개념에 관련된 일반적인 표명과 보증
- (2) 양도 금융자산을 재매입하는 선도, 옵션, 그 밖의 계약으로서 계약금액(또는 행사가격)이 해당 양도자산의 공정가치인 경우
- (3)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받을 계약상 권리를 갖지만, 해당 현금 흐름을 하나 이상의 기업에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3.2.5(1)~(3)의 조건을 충족하 는 계약

####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

- 42D 금융자산의 일부나 전체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금융자산을 양도할 수 있다. 문단 42B(1)에서 설명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양도하였으나 그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금융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보고기간 말마다 공시한다.
  - (1) 양도자산의 특성
  - (2) 소유권에 따라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 및 보상의 특성
  - (3) 양도자산과 관련 부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대한 기술 (양도로 생기는 보고기업의 양도자산 사용 제약을 포함)
  - (4) 관련 부채의 거래상대방이 양도자산에 대해 소구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공정가치, 관련 부채의 공정가치, 순포지션(net position, 양도자산과 관련 부채의 공정가치의 차이)을 나타내는 명세
  - (5)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 인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 (6) 양도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만 양도자산을 계속 인식하는 경우(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3.2.6(3)나)와

3.2.16 참조), 양도 전 원래 자산의 총 장부금액, 양도자가 계속 인식하는 자산의 장부금액,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 전체가 제거된 양도 금융자산

- 42E 문단 42B(2)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양도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지 만(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3.2.6(1)과 (3)(가) 참조) 해당 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 양도자는 지속적 관여의 각 유형별로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고기간 말마다 공시한다.
  - (1)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자의 지속적 관여를 나타내어 양 도자의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해당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이 인식된 개별 항목
  - (2)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자의 지속적 관여를 나타내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 (3) 제거된 금융자산에 양도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하여 생길 수 있는 손실에 최대로 노출되는 금액을 가장 잘 나타내는 금액, 그리고 손실에 최대로 노출되는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보
  - (4) 제거된 금융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필요할 수 있는 미할인 현금유출액(예: 옵션계약의 행사가격)이나 양도자산과 관련되어 양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그 밖의 금액. 현금유출액이 달라질 수 있다면 공시하는 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는 조건에 기초하여야 한다.
  - (5) 제거된 금융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필요할 수 있는 미할인 현금유출액의 만기분석이나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양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그 밖의 금액의 만기분석(양도자의 지속적 관여의 남은 계약기간을 나타냄)
  - (6) (1)~(5)에서 요구하는 양적 공시를 설명하고 보완하는 질적 정보

- 42F 제거된 금융자산에 둘 이상의 유형으로 지속적으로 관여한다면 양도 자는 문단 42E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그 자산과 관련하여 통합할 수 있고, 한 가지 유형의 지속적 관여로 보고할 수 있다.
- 42G 양도자는 다음 사항도 지속적 관여의 유형별로 공시한다.
  - (1) 자산의 양도일에 인식한 손익
  - (2)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해 양도자의 지속적 관여로 보고기간에 인식된 수익 및 비용과 그 누계액(예: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 동)
  - (3) (제거조건을 충족하는) 양도 행위의 대가총액이 보고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생기지 않는 경우(예: 양도 행위의 총 금액 중 많은 액수가 보고기간 종료일에 생김)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개) 보고기간 중 가장 큰 양도 행위가 일어난 시점(예: 보고기 간 말 직전 마지막 5일간)
    - (나) 보고기간 중 (카에 해당하는 기간에 일어난 양도 행위로 인 식된 금액(예: 관련 손익)
    - (다) 보고기간 중 (가)에 해당하는 기간에 일어난 양도 행위의 대 가총액

양도자는 이 정보를 포괄손익계산서가 표시되는 기간마다 제공한 다.

### 보충 정보

42H 양도자는 문단 42B의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

42I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을 포함한 보고기간에 최초 적용일 현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각 종류별로 다음 정보를 공시한다.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결정된 최초의 측정 범주와 장부금액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결정된 새로운 측정 범주와 장부금액
- (3) 이전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였으나, 그러한 지정에서 제외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재무상태표상 금액. 이 금액은 최초 적용일에 기업회계기준 제1109호에 따라재분류가 요구되는 금융상품과 기업이 재분류를 선택한 금융상품으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2에 따라 그 기준서를 적용하기 위해 기업이 선택한 접근법에 따라, 관련 경과 규정은 둘 이상의 최초 적용일과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단에 따라 둘 이상의 최초 적용일에 공시 할 수 있다. 다른 형식이 더 적절하지 않다면 표 형식으로 이러한 양적 정보를 공시한다.

- 42J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을 포함한 보고기간에 이용자가 다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질적 정보를 공시한다.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으로 금융자산의 분류가 바뀐 경우에는 제1109호의 분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
  - (2) 최초 적용일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이유나 지정을 취소한 이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2에 따르면 그 기준서를 적용하기 위해 기업이 선택한 접근법에 따라 경과규정은 둘 이상의최초 적용일과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단에 따라 둘 이상의최초 적용일에 공시가 될 수 있다.
- 42K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금융자산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로 변경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15의 요구에 따라 이 기준서 문단 42L~42O에서 정한 공시사항을 표시한다.

- 42L 문단 42K의 요구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의 변동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시한다.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측정범주에 기초 한 장부금액의 변동(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로의 전환에 따른 측정속성의 변동 금액은 제외)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로의 전환에 따른 측정속성의 변동에 서 생기는 장부금액의 변동
  - 이 문단의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최초로 적용한 연차보고기간 이후에 공 시할 필요는 없다.
- 42M 문단 42K의 요구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의 적용 결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 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공시한 다.
  - (1) 보고기간 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 (2)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재분류하지 않았다면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공정가치 평가손익이 문단의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최초로 적용한 연차보고기간 이후에 공시할 필요는 없다.
- 42N 문단 42K의 요구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을 적용한 결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재분류된 금융자산 과 금융부채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최초 적용일에 산정한 유효이자율
  - (2) 인식한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

최초 적용일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새로운 총장부금액으로 보는 경우(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11)에 금융상품을 제거할 때까지 각 보고기간에 이 문단에 따라 공시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 문단의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최초로 적용한 연차보고기간 이후에 공시할 필요는 없다.

- 42O 문단 42K~42N에서 정한 공시를 표시할 때 그 공시와 이 기준서의 문단 25의 공시는 최초 적용일 현재 다음 (1)과 (2)간의 조정이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와 제1109호에 따라 표시된 측정 범 주
  - (2) 금융상품의 종류
- 42P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5절의 최초 적용일에 (1) 제1039호에 따른 손상충당금과 제1037호에 따른 충당부채의 기말잔액과 (2) 제1109호에 따라 산정된 손실충당금의 차이조정 정보를 공시한다. 최초 적용일에 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와 제1109호에 따른 관련 금융자산의 측정 범주별로 공시하며 측정 범주의 변동이 손실충당금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공시한다.
- 42Q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을 포함한 보고기간에 다음 (1)과 (2)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4절과 제5.5절의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 측정 관련 요구사항과 손상관련 요구사항 포함)에 따라 보고하였을 각 항목의 금액을 공시할 필요는 없다.
  - (1) 과거 기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 (2) 당기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42R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4에 따라 제1109호의 최초 적 용일에 그 기준서 문단 B4.1.9B~B4.1.9D에 따라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변형된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를 평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9B~B4.1.9D에 따른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의 변형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을 평가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9B~B4.1.9D에서 변형된 화폐의 시간가치 요소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보고기간 말에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을 평가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이 제거될 때까지 해당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5에 따라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중도상환특성의 공정가치가 해당 기준서 문단 B4.1.12(3)에 따라 경미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12에 따른 중도상환특성에 대한예외를 고려하지 않고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을 평가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12에 따른 중도상환특성에 대한 예외를 고려하지 않고, 보고기간 말에 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점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금융자산의 계약상현금흐름의 특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해당금융자산이 제거될 때까지 공시한다.

## 시행일과 경과 규정

43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44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44A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44A.1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할 수도 있다.

한44A.2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한44A.3, 44B와 44K를 적용한다.

- 한44A.3 2009년 4월에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에 관한 공시의 개선'에 따라 문단 27, 39와 B11을 수정하였고 문단 27A, 27B, B10A와 B11A~B11F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1 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최초로 적 용하는 회계연도에는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정 내용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비교 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1)
  - (1) 2009년 12월 31일 전에 종료되는 연차 비교기간 내에서 표시되는, 재무상태표를 포함하는, 연차기간 또는 중간기간
  - (2) 2009년 12월 31일 전의 특정일을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개시일로 하는 재무상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 전부개정)에 따라 문단 3(3)을 삭제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부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개정 내용도 동시에

<sup>1)</sup> 문단 44G\*는 2010년 1월에 발표한 '최초 채택 시 국제재무보고기준 제7호의 비교공시에 대한 제한적 면제(국제재무보고기준 제1호에 대한 개정)'의 결과로 추가하였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금융상품에 관한 공시의 개선(국제재무보고기준 제7호에 대한 개정)'의 결론과 의도되었던 경과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단 44G를 개정하였다.

<sup>\*</sup>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7호의 문단 한44A.3은 국제재무보고기준 제7호의 문단 44G에 대응하는 문단이다.

적용한다. 그러나 이 개정 내용은 취득일이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3호(2008 전부개정)의 적용일 전인 사업결합에서 생긴 조건부 대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그러한 조건부 대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10년 개정) 문단 65A~65E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44C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44D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44E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44F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44G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44H~4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44K 문단 44B는 2010년 10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 개선 에 따라 수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 44L 2010년 10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 개선에 따라 문단 32A를 추가하였고 문단 34와 36~38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44M 2011년 4월에 공표한 '금융자산 양도에 관한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개정)'에 따라 문단 13을 삭제하였고 문단 42A~42H와

B29~B39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이 개정 내용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 전에 표시되는 기간에는 제공할 필요는 없다.

- 44N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44O 2012년 11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기업회계기준 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 따라 문단 3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 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제1111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2011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따라, 문단 3,
  28, 29와 부록 A를 개정하였고 문단 27~27B를 삭제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44Q 2012년 6월에 공표한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개정)에 따라 문단 27B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44R 2012년 9월에 공표한 '공시: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기준서 제 1107호 개정)'에 따라 문단 13A~13F와 B40~B53을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적용한다. 이 개정 내용에서 요구하는 공시는 소급하여 제공한다.

## 44S~44W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2013년 6월에 공표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정)에 따라 문단 3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기업'에 포함된 모든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 44Y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개정으로 문단 2~5, 8~11, 14, 20, 28~30, 36, 42C~42E, 부록 A, 문단 B1, B5, B9, B10, B22, B27을 개정하였고, 문단 12, 12A, 16, 22~24, 37, 44E, 44F, 44H~44J, 44N, 44S~44W, 44Y, B4, 부록 D를 삭제하였으며, 문단 5A, 10A, 11A, 11B, 12B~12D, 16A, 20A, 21A~21D, 22A~22C, 23A~23F, 24A~24G, 35A~35N, 42I~42S, 44ZA, B8A~B8J를 추가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 이전에 표시된 비교정보에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1.2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전의 연차보고기간에 대해 해당 기준서의 다른 요구사항은 적용하지 않고 해당 기준서의 문단 5.7.1(3), 5.7.7~5.7.9, 7.2.14, B5.7.5~B5.7.20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에서 생긴 손익의 표시 요구사항만 조기적용을 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해당 문단만 적용하기로 선택한다면 그 사실을 공시하고 이 기준서의 문단 10~11에서 정한 관련 공시를 계속해서 공시한다.
- 44AA 2015년 11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 개선'에 따라 문단 44R 및 B30을 개정하였으며, 문단 B30A를 추가하였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이 개정사항을 소급해서 적용한다. 다만, 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 전에 표시되는 기간에 문단 B30 및 B30A의 개정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문단 44R, B30, B30A의 개정 사항은 조기 적용할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44BB 2015년 11월 발표된 '공시개선'(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개정)은 문단 21과 B5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 44CC 2017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문단 29, B11D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2021년 6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라 문단 3, 8
  과 29를 개정하고 문단 30을 삭제하였다<sup>한1)</sup>. 이 개정 내용은 기업 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44EE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제1039호를 개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2020년 2월 공표)에 따라 문단 24H와 44FF가 추가되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나 제1039호의 개정내용을 적용할 때 이 기준서의 개정내용을 적용한다.
- 44FF 2020년 2월에 공표된 '이자율지표 개혁'을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 기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의 문단 28(6)에 따른 정량적 공시사항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 44GG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제1104호, 제 1116호를 개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 2단계'(2021년 3월 공표)에

한1)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17년 5월 발표한 IFRS 17 '보험계약'에 대응하는 K-IFRS 제 1117호 '보험계약'을 제정 의결하였으나 공표하지 않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20년 6월에 발표한 개정 IFRS 17을 포함하여 K-IFRS 제1117호를 2021년 4월에 수정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17년 5월에 발표한 IFRS 17에 따라 문단 3, 8, 29를 개정하고, 문단 30을 삭제하였다. 또 2020년 6월에 발표한 IFRS 17에 따라 문단 3을 추가로 개정하였다.

따라 문단 24I~24J와 문단 44HH가 추가되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제1104호, 제1116호의 개정 내용을 적용할 때 이 기준서의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 44HH '이자율지표 개혁 2단계'를 기업이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 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8(6)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 44II 2021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를 개정하고 국제 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 번역서<sup>한2)</sup>를 수정하는 '회 계정책 공시'에 따라 문단 21과 B5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를 개정하는 2023년 12월에 발표된 '공급 자금융약정'에 따라 문단 B11F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기업 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개정내용을 적용할 때 적용한다.

## 기준서 등의 대체

45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2)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국제회계기준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 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외에,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변동될 위험. 다만, 이러한 변 동은 개별 금융상품이나 발행자에게 특정되는 요인 에 따라 생길 수 있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비 슷한 금융상품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따라 생길 수

도 있다.

시장위험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미

래현금흐름이 변동될 위험. 시장위험은 환위험, 이 자율위험과 그 밖의 가격위험의 세 유형의 위험으

로 구성된다.

신용위험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어느 한 편이 의무를 이행하

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위험

신용위험등급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채무불이행 위험에 근거한 신

용위험의 순위

**유동성위험** 기업이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

는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어

려움을 겪게 될 위험

이자율위험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변동될 위험

차입금 차입금은 금융부채이나 정상적인 신용조건에 따른

단기 매입채무는 제외한다.

환위험 환율의 변동으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

금흐름이 변동될 위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다음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1, 제 1039호 문단 9, 제1109호의 부록 A, 제1113호 부록 A에서 정의하며, 제1032호, 1039호, 1109호, 1113호에서 정한 의미로 이 기준서에서 사용한다.

- 계약자산
- 공정가치
- 금융보증계약
- 금융부채
- 금융상품
- 금융자산
-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
-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 단기매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배당
- 손상차손(환입)
- 손실충당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연체
- 예상거래
- 위험회피수단
- 유효이자율법
- 재분류일
-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
- 제거
- 지분상품
- 최초 발생시점이나 매입할 때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하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라 한다)
- 파생상품

## 부록 B. 적용지침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 금융상품의 종류와 공시수준(문단 6)

- B1 문단 6에서는 기업이 공시하는 정보의 특성에 맞게,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분류하도록 규정한다. 문단 6에서 기술한 금융상품의 종류는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기업 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의 측정방법과 공정가치 변동의 인식 방법을 결정하는)에서 규정한 금융상품의 범주와는 구별된다.
- B2 금융상품의 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야 한다.
  - (1)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 상품을 구분한다.
  - (2)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는 금융상품은 다른 종류로 처리한다.
- B3 기업은 주어진 상황에서 이 기준서의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얼마나 공시를 상세히 할 것인지, 규정들의 각각 다른 측면을 얼마나 강조할 것인지와 특성이 다른 정보를 결합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개요를 보여주기 위하여 어떻게 정보를 통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으로 재무제표를 과중하게 하는 것과 지나치게 항목을 통합하여 중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경미한 세부항목들이 집계된 금액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중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게 해서는 아니 된다. 마찬가지로 정보를 지나치게 통합하여 개별 거

래 사이의 중요한 차이나 관련 위험의 중요한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게 해서는 아니 된다.

B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그 밖의 공시: 회계정책(문단 21)

- B5 문단 21에 따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정보에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한 금융상품 측정기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상품의 경우, 이러한 공시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경우 다음 사항
    - (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특성
    - (J)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기준
    - (다) 그러한 지정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2.2의 조건을 충족하는 근거
  - (1-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의 경우 다음 사항
    - (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의 특성
    - (나) 그러한 지정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5의 조건을 충족하는 근거
  -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3)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및 매도에 적용하는 회계처리방법 (매매일 회계처리방법이나 결제일 회계처리방법)(기업회계기준 서 제1109호 문단 3.1.2 참조)
  - (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5) 금융상품의 범주별로 순손익을 결정하는 방법(문단 20(1) 참조). 예를 들면,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순손익에 이자수익이나 배당수익의 포함 여부
- (6)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7)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122에서는 추정에 관련된 판단과는 별도로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내린 판단으로서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준 판단도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나 그 밖의 주석과 함께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문단 31~42)

B6 문단 31~42에서 요구하는 공시는 재무제표로 제공하거나, 재무제표와 같은 조건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와 상호 참조하는 별도의 보고서(예: 경영진 설명서나 위험보고서)에 포함할수도 있다. 상호 참조되는 정보가 없다면 그 재무제표는 불완전한 것이다.

## 양적 공시(문단 34)

- B7 문단 34(1)에 따라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대한 간략한 양적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가장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서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B8 문단 34(3)에 따라 위험의 집중을 공시하여야 한다. 위험의 집중은 특성이 비슷하고 경제 상황이나 그 밖의 상황의 변동에 비슷하게

영향을 받는 금융상품에서 생긴다. 위험의 집중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환경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위험의 집중에대한 공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1) 경영진이 집중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
- (2) 각 집중을 구별하는 공통된 특성에 대한 기술(예: 거래상대방, 지역, 통화, 시장)
- (3) 이러한 특성을 공유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관련되는 위험 익스 포저 금액

### 신용위험 관리실무 (문단 35F~35G)

B8A 문단 35F(2)에 따라 금융상품별로 채무불이행을 어떻게 정의하는 지와 해당 정의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9에 따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하는지의 판단은 최초 인식 후 생기는 채무불이행 위험의증가에 기초한다. 기업의 채무불이행 정의에 대한 정보로서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대신용손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1) 채무불이행을 정의할 때 고려한 양적 요인와 질적 요인
- (2)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다른 정의를 적용하는지
- (3)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이 일어난 후의 회복률(정상상태로 회 복된 금융자산의 수)에 대한 가정

B8B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재조정과 변경 정책을 평가할 수 있도록, 문단 35F(6)(水)에 따라 이전에 공시하였던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을 후속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3에 따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하는 정도를 관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의 공시를 문단 35F(6)(小)에서 요구한다. 이용자가 변경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후속적으로 증가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돕는 양적 정보에는 문단 35F(6)(水)의 조건을 충

족하는 변경된 금융자산 중 해당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을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시 측정하게 된 금융 자산에 대한 정보(신용악화 비율)를 포함할 수 있다.

B8C 문단 35G(1)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요소와 가정의 근거, 추정기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거나 최초 인식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한 기업의 가정과투입요소에는 내부의 과거 정보나 등급보고서에서 얻은 정보를 포함하며,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대한 가정과 담보의 처분시기를 포함한다.

## 손실충당금의 변동(문단 35H)

B8D 문단 35H에서 보고기간 중 손실충당금의 변동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손실충당금의 기초잔액에서 기말잔액으로의 조정뿐만 아니라, 변동을 서술적으로 설명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 서술적 설명에는 보고기간의 손실충당금 변동 이유의 분석을 포함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포트폴리오 구성
- (2) 최초 발생하거나 매입한 금융상품의 규모
- (3) 기대신용손실의 강도

B8E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손실충당금의 변동 정보는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의 변동과 구분하여 별도로 공시한다. 그러나 금융상품이 대출(금융자산)과 미사용 한도약정(대출약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금융자산 요소에서 생기는 기대신용손실과 대출약정 요소에서 생기는 기대신용손실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다면 대출약정의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과 함께 인

식한다.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초과한 기대신용손실은 충당부 채로 인식한다.

### 담보 (문단 35K)

B8F 문단 35K에서 재무제표이용자가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이 기대 신용손실의 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게 정보를 공시하 도록 규정한다. 담보나 그 밖의 신용보강의 공정가치 정보나 기대 신용손실(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의 손실, loss given default) 을 계산하기 위해 포함된 담보의 정확한 가치를 계량화하여 공시 할 필요는 없다.

B8G 담보의 서술적 설명과 기대신용손실 금액에 미치는 담보의 영향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 (1) 보유하고 있는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의 주요 유형(그 밖의 신용보강의 예: 보증, 신용파생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의 상계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계약정)
- (2) 보유하고 있는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의 규모, 손실충당금에 미치는 유의성
- (3)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의 가치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정책과 과정
- (4)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의 거래상대방의 주요 유형과 거래상 대방의 신용도
- (5)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 내에서 위험집중도에 대한 정보

#### 신용위험 익스포저 (문단 35M - 35N)

B8H 문단 35M은 보고기간 말에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집중에 대한 정보의 공시를 요구한다. 많은 거래상대방이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비슷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경제 또는 그 밖의 상황의 변동으로 계약상 의무

를 충족하는 데에 비슷하게 영향을 미치는 비슷한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신용위험이 집중되어 있다. 재무제표이용자가 특정위험의 집중도와 같이 금융상품 집합의 대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의 집합이나 포트폴리오가 있는 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담보인정비율별, 지역별, 산업별, 발행자 유형의 집중도를 포함한다.

- B8I 문단 35M에 따른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용위험 등급의 수는 신용위험 관리목적으로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수와일치해야 한다. 만약 대출자에게 특정된 정보로 연체정보만을 이용할 수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1에 따라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연체정보를 이용한다면 해당 금융자산의 연체상태별로 분석을 공시한다.
- B8J 집합기준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경우에, 개별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의 신용위험 익스포저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신용위험등급에 할당하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신용위험 등급을 직접 할당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문단 35M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며 집합기준으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총 장부금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 신용위험에 최대로 노출되는 정도(문단 36(1))

- B9 문단 35K(1)과 36(1)은 신용위험의 최대 익스포저를 가장 잘 나타 내는 금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금융자산의 경우 이 금액은 일반적 으로 총 장부금액에서 다음을 모두 차감한 금액이다.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상계한 금액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인식한 손실충당금
- B10 신용위험을 일으키는 활동과 이와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익스포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고객에 대한 대여금과 다른 기업에 예치한 예금. 이 경우 신용 위험에 대한 최대 익스포저는 관련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다.
  - (2) 파생상품계약(예: 외환계약, 이자율스왑, 신용파생상품)을 체결하는 일. 그 결과로 생긴 자산이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경우에 보고기간 말 현재 신용위험에 최대로 노출되는 정도는 장부금액과 같다.
  - (3) 금융보증을 제공하는 일. 이 경우 신용위험에 최대로 노출되는 정도는 피보증인이 청구하면 지급하여야 할 최대 금액이고, 이 는 부채로 인식한 금액보다 유의적으로 클 수 있다.
  - (4) 대출약정기간에 철회할 수 없거나 중요한 부정적인 변화가 생겨야만 철회할 수 있는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일. 이 경우 발행자가 대출약정을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없다면 신용위험에 최대로 노출되는 정도는 약정금액 전체이다. 이는 사용되지 않은 한도가 미래에 사용될지가 불확실하기때문이다. 이 경우 신용위험에 최대로 노출되는 정도는 부채로인식한 금액보다 유의적으로 클 수 있다.

## 유동성위험에 대한 양적 공시(문단 34(1), 39(1)과 39(2))

B10A 문단 34(1)에 따라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유동성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관한 간략한 양적 자료를 공시하고, 이 자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한다. 그 자료에 포함된 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의 유출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재무제표이용자들이이러한 위험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양적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이러한 정보가 문단 39(1)이나 39(2)에서 요구하는 계약상 만기분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자료에 제시된 시기보다 유의적으로 더 이른 기간에 생길 수 있다.
- (2) 자료에 제시된 것과 유의적으로 다른 금액일 수 있다(예: 차액 결제기준으로 자료에 포함되었으나 상대방이 총액결제를 요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는 파생상품의 경우).
- B11 문단 39(1)과 39(2)에서 요구하는 만기를 분석하는 경우에 적절한수의 기간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기간의 간격이 적절하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
  - (1) 1개월 이하
  - (2)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 (3) 3개월 초과 ~ 1년 이하
  - (4) 1년 초과 ~ 5년 이하
- B11A 문단 39(1)과 39(2)를 따르는 경우에는 복합금융상품에서 내재파생 상품을 분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금융상품에는 문단 39(1)을 적 용한다.
- B11B 문단 39(2)에서는 파생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가 현금흐름의 시기를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면, 남은 계약기간을 보여주는 양적 만기분석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1) 변동이자율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에 대한 현금흐름 위험회 피에서 남은 기간이 5년인 이자율스왑
  - (2) 모든 대출약정
- B11C 문단 39(1)과 39(2)에서는 일부 금융부채의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 간을 보여주는 금융부채의 만기분석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공시에는
  - (1) 거래상대방이 지급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금융부채의 경우에

는 지급이 청구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에 금융부채를 배분한다. 예를 들면, 지급이 청구된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금융부채(예: 요구불예금)는 가장 이른 기간에 포함한다.

- (2) 분할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하는 약정의 경우에는 지급이 청구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에 각 분할 금액을 배 분한다. 예를 들면, 사용하지 않은 대출약정은 행사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이 속한 기간에 포함한다.
- (3) 발행된 금융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을 요구받을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에 최대 보증금액을 배분한다.
- B11D 문단 39(1)과 39(2)에서 요구하는 만기분석에서 공시하는 계약상 금액은 할인되지 아니한 계약상 현금흐름이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1) 리스부채의 총액(금융원가 차감 전)
  - (2) 현금으로 금융자산을 매입하기로 하는 선도계약의 경우에는 특정 가격
  - (3) 변동이자를 지급하고 고정이자를 받는, 순액의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이자율스왑의 경우에는 현금흐름의 순액
  - (4) 총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파생금융상품(예: 통화스왑)의 경우에 는 교환되는 계약상 금액
  - (5) 총 대출약정금액

이러한 할인되지 아니한 현금흐름은 재무상태표에 포함된 금액과는 다르다. 해당 재무제표는 할인된 현금흐름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조건을 참조하여 공시할 금액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현재 지수의 수준에 기초하여 공시할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B11E 문단 39(3)에서는 문단 39(1)과 39(2)에서 요구하는 양적 공시의 항목에 내재된 유동성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보유한 금융자산(예: 즉시 매도할 수 있거나 금융부채의 현금유출에 지급하기 위해 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자산)의 만기분석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가 유동성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면 그러한 정보를 공시하다.

B11F 문단 39(3)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할 때에 고려할 수 있는 그 밖의 요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1) 유동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차입한도약정 (예: 상업어음한도약정)이나 그 밖의 신용한도약정(예: 보증신 용한도약정) 체결 여부
- (2) 유동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중앙은행 예치금 보유 여부
- (3) 매우 다양한 자금조달수단 보유 여부
- (4) 자산 또는 자금조달수단에 유동성위험의 유의적인 집중 여부
- (5)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절차 및 비상계획의 유무
- (6) (예: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상환시기를 앞당기는 조건을 포함하는 금융상품 보유 여부
- (7)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예: 파생상품에 대한 증거금 요구)할 수 있는 금융상품 보유 여부
- (8) 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거나 자기주식을 인도하여 금융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금융상품 보유 여부
- (9) 일괄상계약정의 대상인 금융상품 보유 여부
- (10) 기업에 연장지급 조건을 주거나 기업의 공급자에게 조기지급 조건을 주는 공급자금융약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문단 44G에서 기술함)에 따른 한도약정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B12~B16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시장위험: 민감도 분석(문단 40과 41)

B17 문단 40(1)에 따라 노출된 시장위험의 유형별로 민감도 분석을 공시하여야 한다. 문단 B3에 따르면 기업은 유의적으로 다른 경제적환경에서 일어나는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대하여 특성이 다른 정보를 결합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개요를 보여주기 위하여 어떻게 정보를 통합할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기업은 단기매매금융상품과 단기매매금 융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을 구분하여 민감도 분석 정보를 공시 할 수 있다.
- (2) 초인플레이션 지역에서 일어나는 시장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와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같은 시장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하나로 통합하지 않는다.

기업이 하나의 경제 환경에서 한 가지 유형의 시장위험에만 노출되는 경우에는 민감도 분석 정보를 구분하여 공시하지 아니한다.

B18 문단 40(1)에 따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관련 위험변수(예: 현행시장이자율, 환율, 지분가격, 일반상품가격)의 변동이 당기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민감도 분석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관련 위험변수가 달랐다면 당기손익이 얼마가 되었을 지를 파악할 필요는 없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관련 위험변수의 변동이 보고기간 말 현재 생겼고, 보고기간 말 현재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보고기간 말의 당기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한다. 예를 들면 기말 현재 변동금리부 부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이자율의 변동이 해당 연도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자비용)을 공시하면 된다.
- (2)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관련 위험변수의 변동 범위에서 각각의 변동이 당기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공시할 필요는 없다. 가

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변동 범위의 한계에서 변동의 영향을 공 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B19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관련 위험변수의 변동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기업이 영업하는 경제환경.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변동에 희박한 시나리오, '상황이 최악인' 시나리오나 '위기상황분석 (stress test)'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기초위험변수의 변동률이 안정적일 경우에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위험변수의 변동으로 선택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이자율이 5%이고, 50 베이시스 포인트의 상하 변동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라고 가정하자. 기업은 이자율이 4.5% 또는 5.5%로 변동되는 경우에 당기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게 될 것이다. 다음 회계기간에 이자율이 5.5%로 오르더라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변동은 여전히 50 베이시스 포인트의 상하 변동이라고(이자율의 변동이 안정적이다) 판단할 수 있다. 이자율이 5%나 6%로 변동된다면, 당기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할 것이다. 이자율의 변동성이 유의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이자율50 베이시스 포인트의 상하 변동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
  - (2) 평가대상기간. 민감도 분석에는 다음 공시를 하기 전까지의 기 간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변동의 영향을 표시해야 한다. 해당 기간은 보통 차기의 연차 보고기간이다.
- B20 문단 41에 따르면 기업이 금융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관리하는 경우에 위험변수 사이의 상호의존도를 반영하는 민감도 분석[예: 최대손실예상액 측정방법론(VaR, value-at-risk methodology)]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잠재적 손실만 측정하고 잠재적이익을 측정하지 않더라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최대손실예상액 측정 모형의 유형(예: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 의존하는지),

적용방법, 주요 가정(예: 보유기간, 신뢰수준)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여 문단 41(1)을 따를 수 있다. 역사적 관측기간과 그 기간의 관측치에 적용한 가중치, 계산과정에서 옵션을 다룬 방법에 대한 설명과 분석에 사용된 변동성·상관관계(또는 대안으로 몬테카를로확률분포 시뮬레이션) 등도 공시할 수 있다.

B21 기업은 전체 사업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공시하여야 하나, 금융상 품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유형의 민감도 분석을 공시할 수도 있 다.

#### 이자율위험

B22 이자율위험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이자부 금융상품(예: 취득하거나 발행한 채무상품)과 재무상태표에 인식되지 않은 금융상품의일부(예: 일부 대출약정)에서 생긴다.

#### 환위험

- B23 환위험(또는 외환위험)은 외화로, 즉 금융상품을 측정하는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된 금융상품에서 생긴다. 이 기준서의 목적상비화폐성 항목이나 기능통화로 표시된 금융상품에서는 환위험이생기지 않는다.
- B24 유의적으로 노출된 외화별로 민감도 분석을 공시한다.

#### 그 밖의 가격위험

B25 금융상품에 대한 그 밖의 가격위험은 일반상품가격이나 지분가격 등의 변동으로 생긴다. 문단 40을 따르기 위하여 기업은 특정 주식시장지수, 일반상품가격, 그 밖의 위험변수의 하락에 따른 영향

을 공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이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잔존 가치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은 보증한 자산의 가치 증감을 공시한다.

- B26 지분가격위험을 일으키는 금융상품의 두 가지 예로 (1) 다른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와 (2) 원본을 지분상품으로 운용하는 신탁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다른 예로는 특정 수량의 지분상품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선도계약·옵션과 지분가격에 연계된 스왑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기초자산인 지분상품의 시장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 B27 문단 40(1)에 따라 당기손익에 대한 민감도(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서 생기는 당기손익에 대한 민감도)는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민감도(예: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에서 생기는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민감도)를 구분하여 별도로 공시한다.
- B28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분류한 금융상품은 재측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금융상품의 지분가격위험은 당기손익과 자본에 영향을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민감도 분석을 공시할 필요는 없다.

# 제거(문단 42C~42H)

## 지속적 관여(문단 42C)

B29 문단 42E~42H 공시 규정의 목적상 양도한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지는 보고실체 수준에서 판단한다. 예를 들면 종속기업이 특수 관계에 있지 않은 제삼자에게 금융자산을 양도할 때지배기업이 해당 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한다면, 그 종속기업은 자신의 별도재무제표 또는 개별재무제표(종속기업이 보고기업인경우)에서 양도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지를 판단할 때 지배기

업의 관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보고기업이 연결실체인 경우)에서 종속기업이 양도한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지를 판단할 때 지배기업은 자신의 지속적 관여(또는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의 지속적 관여)를 포함한다.

B30 양도의 일부로서, 양도 금융자산에 내재된 계약상 권리나 의무를 유지하지도 않고 양도한 금융자산과 관련된 새로운 계약상 권리나 의무를 갖게 되지도 않는 경우에는 양도자는 양도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양도 금융자산의 미래 성과에 대한 지분을 갖지도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도 금융자산에 대해 미래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양도자는 양도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급'이라는 용어는 기업이 수취하여 양수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양도된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은 포함하지 않는다.

B30A 금융자산을 양도할 때 예를 들어 관리용역 계약에 포함된 수수료를 받고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공시규정의목적 상 관리용역 계약의 결과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관여하는지를결정하기 위해서 문단 42C, B30의 지침에 따라 관리용역 계약을평가한다. 예를 들어, 양도된 금융자산에서 획득하는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수취시점에 따라 관리용역 수수료가 결정된다면 공시규정의목적상 관리용역 제공자는 양도된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를하게 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양도된 금융자산의 불이행으로 고정 수수료를 전부 지급받지 못한다면 관리용역 제공자는 공시규정의목적 상 지속적으로 관여를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에서 관리용역 제공자는 양도된 금융자산의 미래성과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이평가는 수취하는 수수료가 관리용역 제공에 대한 적정한 대가로예상되는지는 상관없다.

B31 양도 금융자산에 대한 지속적 관여는 양도계약의 계약 조항이나 양도와 관련하여 양수자나 제삼자와 체결한 별도 계약의 조항에 기인할 수 있다.

####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문단 42D)

B32 문단 42D에서는 양도 금융자산의 일부나 전체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의 공시사항을 규정한다. 이러한 공시는 양도 시점과 상관없이, 양도자가 양도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는 보고일마다 해야 한다.

#### 지속적 관여의 유형(문단 42E~42H)

B33 문단 42E~42H에서는 제거된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유형별로 질적 공시와 양적 공시를 규정한다. 양도자는 위험에 노출되는 대표적인 유형별로 지속적 관여를 통합한다. 예를 들면 금융상품 유형별(예: 보증이나 콜옵션)이나 양도 유형별(예: 매출채권 팩토링, 증권화와 유가증권대여계약)로 지속적 관여를 통합할 수있다.

### 양도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한 미할인 현금유출액의 만기분석(문단 42E(5))

B34 문단 42E(5)에서는 제거된 금융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한 미할인 현금유출액의 만기분석이나 제거된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양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그 밖의 금액의 만기분석을 공시(지속적 관여의남은 계약기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이 분석은 지급해야 하는현금흐름(예: 선도계약), 양도자가 지급하게 될 수도 있는 현금흐름(예: 매도풋옵션)과 양도자가 지급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는 현금흐름(예: 매입콜옵션)으로 구분한다.

- B35 문단 42E(5)에 따라 만기분석을 작성할 때, 양도자는 적절한 수의 기간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기간의 간격이 적절하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
  - (1) 1개월 이하
  - (2)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 (3)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 (4) 6개월 초과 ~ 1년 이하
  - (5) 1년 초과 ~ 3년 이하
  - (6) 3년 초과 ~ 5년 이하
  - (7) 5년 초과
- B36 가능한 만기일의 범위가 있다면,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거나 지급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짜에 기초하여 그 현금흐름을 포함한다.

#### 질적 정보(문단 42E(6))

- B37 문단 42E(6)에서 요구하는 질적 정보는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과 해당 자산을 양도한 후에도 유지하는 지속적 관여의 특성 및 목적을 포함한다. 이 질적 정보는 양도자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에 대한 설명도 포함하며, 그러한 설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1)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한 지속적 관여에 내재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 (2) 양도자가 다른 당사자들보다 먼저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지와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자의 지분(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자의 지속적 관여)보다 더 낮은 순위의 지분을 갖는 다른 당사자들 이 부담하는 손실 금액과 그 순위
  - (3) 재무적인 지원을 하거나 양도한 금융자산을 재매입해야 하는 의무 부과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사건에 대한 설명

#### 제거 손익(문단 42G(1))

B38 문단 42G(1)에서는 양도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금융자산과 관련된 제거 손익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양도자는 앞서 인식된 자산의 구성요소별(예: 제거된 자산의 지분과 양도자가 계속 유지하는 지분) 공정가치 합계와 앞서 인식된 자산 전체의 공정가치가다르기 때문에 제거 손익이 생긴 것인지를 공시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양도자는 공정가치 측정이 문단 27A에서 기술하는, 관측 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를 포함하는지도 공시한다.

#### 보충 정보(문단 42H)

B39 문단 42D~42G에서 요구하는 공시는 문단 42B의 공시 목적을 이루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양도자는 공시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추가 정보가 있다면 이를 공시한다. 양도자는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와 그러한 추가 정보의 서로 다른 측면에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부여할지를 상황에 비추어 결정한다.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으로 재무제표를 과중하게 하는 것과 지나치게 많은 항목을 통합하여 정보를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문단 13A~13F)

#### 적용범위(문단 13A)

B40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에 따라 상계되는 인식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여 문단 13B~13E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또 금융 상품이 이와 비슷한 금융상품이나 거래에도 적용되는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한 금융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에 따라 상계되는지에 상관없이, 문단 13B~13E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B41 문단 13A와 B40에서 언급된 비슷한 약정에는 파생상품청산약정, 국제표준환매약정, 국제표준증권대여약정, 금융담보와 관련된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문단 B40에서 언급된 비슷한 금융상품 및 거래에는 파생상품, 환매조건부매도약정, 환매조건부매수약정, 증권자입약정, 증권대여약정이 포함된다. 문단 13A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예로는 같은 금융기관에 있는 대여금·고객예금(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는 경우)과 담보약정만 적용받는 금융상품이 있다.

# 문단 13A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인식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한 양적 정보의 공시(문단 13C)

B42 문단 13C에 따라 공시하는 금융상품은 서로 다른 측정 규정을 따를 수도 있다(예를 들면, 재매입약정과 관련된 채무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도 있지만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이다). 금융상품은 인식된 금액에 포함하고 이에 따른 측정의 차이는 관련 공시에서 설명한다.

# 문단 13A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인식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총액 공시(문단 13C(1))

B43 문단 13C(1)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에 따라 상계되는 인식된 금융상품과 관련이 있다. 문단 13C(1)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상계기준을 충족하는지에 상관없이 집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인식된 금

융상품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문단 13C(1)에서 요구하는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의 상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담보약정의 결과로 인식되는 금액과는 관련이 없다. 그 대신에 그러한 금액은 문단 13C(4)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의 기준에 따라 상계되는 금액의 공시(문단 13C(2))

B44 문단 13C(2)에서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순액을 결정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에 따라 상계되는 금액을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같은 약정에 따라 상계되는 인식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금액은 모두 각각 금융자산의 공시와 금융부채의 공시에 공시될 것이다. 그러나 (예: 표에서) 공시되는 금액은 상계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문단 42의 상계기준을 충족하는 인식된 파생상품자산 및 파생상품부채의 총액보다 많다면, 금융자산을 공시하는 표에는 (문단 13C(1)에따른) 파생상품자산 전체 금액과 (문단 13C(2)에 따른) 파생상품부채 전체 금액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공시하는 표에는 (문단 13(1)에 따른) 파생상품부채 전체 금액이 포함되는 반면, 파생상품부채 금액과 같은 (문단 13C(2)에 따른) 파생상품자산 금액만이 포함될 것이다.

####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순액의 공시(문단 13C(3))

B45 (문단 13A에서 규정한) 공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만 기업회계기 준서 제1032호 문단 42의 상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문단 13C(3)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금액은 문단 13C(1)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금액과 같을 것이다.

B46 문단 13C(3)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금액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개별 항목의 금액으로 조정을 나타내야 한다. 예를 들면 재무제표의 개별 항목의 금액을 통합하거나 분리하는 편이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한다면, 문단 13C(3)에 따라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공시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개별 항목의금액으로 다시 조정을 나타내야 한다.

문단 13C(2)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금액의 공시(문단 13C(4))

B47 문단 13C(4)에서는 문단 13C(2)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금액을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문단 13C(4)(가)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의 상계기준의 일부나 전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인식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금액을 언급하고 있다(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문단 42(2)의 상계기준의 일부나 전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행 상계 권리, 거래당사자 중 어느 하나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나 지급할 수 없거나 파산하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하고 행사할수 있는 조건부 상계 권리).

B48 문단 13C(4)(나)에서는 받거나 제공한 금융담보(현금담보 포함)와 관련된 금액을 언급하고 있다. 기업은 담보로 받거나 제공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공시해야 한다. 문단 13C(4)(나)에 따라 공시하는 금액은 받거나 제공한 실제 담보와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담보를 반환하거나 다시 받기 위하여 인식되는 채무 또는 채권과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

문단 13C(4)의 공시금액의 한도(문단 13D)

B49 문단 13C(4)에 따른 금액을 공시할 때 금융상품별 초과 담보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문단 13C(3)에 따라 공시하는 금액에서 문단 13C(4)(가)에 따라 공시하는 금액을 먼저 차감해야한다. 그 후 관련 금융상품에 대하여 문단 13C(4)(나)에 따라 공시하는 금액은 문단 13C(3)의 남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러나 담보권을 여러 금융상품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면, 그러한 권리는 문단 13D에 따라 제공하는 공시에 포함될 수 있다.

#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상계 권리에 대한 설명(문단 13E)

B50 문단 13C(4)에 따라 공시하는 상계 권리 및 이와 비슷한 약정의 유형(그러한 권리의 특성 포함)을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의 조건부권리를 설명하여야 한다. 미래 사건에 좌우되지 않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의 나머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계 권리의 대상인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받거나 제공한 모든 금융담보의 경우에는 담보약정의 조건(예: 담보가 제한되는 경우)을 설명한다.

#### 금융상품 또는 거래상대방의 유형별 공시

B51 문단 13C(1)~(5)에서 요구하는 양적 공시는 금융상품 또는 거래의 유형(예: 파생상품, 재매입약정·재매도약정, 증권차입약정·증권 대여약정)별로 분류할 수도 있다.

B52 그렇지 않으면 문단 13C(1)~(3)에서 요구하는 양적 공시는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문단 13C(3)~(5)에서 요구하는 양적 공시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 요구하는 정보를 거래상대방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을 명칭에 따라 식별할필요는 없다. 그러나 표시되는 회계연도마다 비교 가능성을 유지

하기 위하여 매년 일관되게 거래상대방을 지정(예: 거래상대방 A, 거래상대방 B, 거래상대방 C 등)하여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유형에 관하여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질적 정보를 고려해야한다. 문단 13C(3)~(5)의 금액 공시를 거래상대방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거래상대방금액에서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액은 별도로 공시하고, 나머지 개별적으로 경미한 거래상대방금액은 하나의항목으로 통합한다.

#### 그 밖의 사항

B53 문단 13C~13E에서 요구하는 특정 공시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다. 문단 13B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및 관련 약정의 조건에 따라, 상계 권리의 특성과 상계 권리가 기업 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을 포함한 추가적 (질적) 공시로 그 공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제정(2007. 11. 23.)은 회계기준 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8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2008. 11. 28.)은 회계기준 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9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2009. 4. 14.)은 회계기준위 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박영진, 변용희, 손성규, 최 관, 최상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1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안(2011. 4. 27.)은 회계기준 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2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안(2012. 5. 24.)은 회계기준 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권수영, 안영균, 전 괄, 최신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4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2014. 12. 12.)은 회계기준 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한종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9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2019. 12. 20.)은 회계기준 위원회 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김영석, 박희춘,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0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2020. 12. 18.)은 회계기준 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박희춘, 오병관,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공급자금융약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3년)

'공급자금융약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와 제1107호)의 개정(2023.10.27.)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한상(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박정혁, 윤재원, 이동근, 전영순, 허세봉

#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목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실무적용지침

문단번호

IG37~IG40

IG40D

IG40A~IG40C

도입 IG1~IG2 금융상품의 종류와 공시 수준(문단 6과 B1~B3) IG5~IG6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 (문단 7~30, B4와 B5) IG12~IG14 채무불이행과 계약 위반(문단 18과 19) IG12 총 이자비용(문단 20(2)) IG13 위험회피회계(문단 24A~24C) IG13C~IG13E 공정가치(문단 28) **IG14**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 (문단 31~42와 B6~B28) IG15~IG40 질적 공시(문단 33) IG15~IG17 양적 공시(문단 34~42와 B7~B28) IG18~IG40 신용위험(문단 35A~36, B8A~B10) IG20A~IG31 문단 35H와 35I의 적용 예시 IG20B 문단 35M과 35N의 적용 예시 IG20C~IG22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문단 36(2)) IG22 유동성위험(문단 39(1)) IG31A 시장위험(문단 40~42와 B17~B28) IG32~IG40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제1109호로의 전환규정

그 밖의 시장위험 공시(문단 42)

공시(문단 13A~13F와 B40~B53)

제거(문단 42D와 42E)

#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목차

IG40E

(문단 42K~42O)

경과 규정(문단 44) IG41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실무적용지침

이 실무적용지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 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 도입

- IG1 이 실무적용지침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서 요구하는 일부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다. 이 실무적용지침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모든 요구사항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요구사항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 IG2 편의상 이 기준서에 있는 각 공시 규정은 별도로 논의한다. 실무적으로 공시는 보통 통합된 형태가 될 것이고 각 공시사항은 둘이상의 규정을 충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위험의 집중에 대한 정보는 신용위험 또는 그 밖의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대한 정보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IG3~IG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금융상품의 종류와 공시 수준(문단 6과 B1~B3)

IG5 문단 B3에서 '기업은 주어진 상황에서 이 기준서의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얼마나 공시를 상세히 할 것인지, 규정들의 각각 다른 측면을 얼마나 강조할 것인지와 특성이 다른 정보를 결합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개요를 보여주기 위하여 어떻게 정보를 통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은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모든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IG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문단 17(3)에서는 기업이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따르더라도 특정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공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 (문단 7~30, B4와 B5)<sup>1)</sup>

IG7~IG1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채무불이행과 계약 위반(문단 18과 19)

IG12 문단 18과 19에서는 차입금의 채무불이행이나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공시를 요구한다. 채무불이행이나 계약 위반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부채를 유동이나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총 이자비용(문단 20(2))2)

IG13 문단 20(2)에 따라 공시하는 총 이자비용은 금융원가의 구성요소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82(2)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금융원가의 항목에 비금융부채와 관련된 금액도 포함할 수 있다.

<sup>1)</sup>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B4를 삭제하였다.

<sup>2) 2008</sup>년 5월 공표된 IFRS 개선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문단 IG13을 개정하였고, '총이자수익'을 금융비용의 요소에서 삭제하였다. 이 개정으로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수익과 비용의 상계를 배제하는 IAS 1 '재무제표 표시'의 문단 32와의 비일관성이 제거되었다.

IG13A- IG13B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위험희피회계(문단 24A~24C)

IG13C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24A는 기업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표 형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다음의 사례는 이러한 정보를 공시하는 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위험회피 수단의 명목금액	위험회피수단의 장부금액		재무상태표 상 위험회피수 단의	20X1년의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자산	부채	계정과목	위해 사용된 공정가치의 변동
현금흐름위험회피					
일반상품가격위험				계정과목	
- 선도매출계약	XX	XX	XX	XX	XX
공정가치위험회피					
이자율위험				계정과목	
- 이자율스왑	XX	XX	XX	XX	XX
외화환산위험				계정과목	
- 외화대출	XX	XX	XX	XX	XX

IG13D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24B는 기업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표 형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다음의 사례는 정보를 공시하는 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위험회피대상항		위험희피대상항목		재무상태	20X1의	현금흐
	목의 정	<b>  부금액</b>	의 장투	의 장부금액에		위험회피의	름위험
			포함된		위험회피	비효과적인	회피적
				공정가치위험회피		부분을	립금
			조정의 누적금액		을 포함한	계산하기	
					계정과목	위해	
	3 .3		2.2	<b></b>		사용된	
	자산	부채	자산	부채		가치 변동	
현금흐름위험회피							
일반상품가격							
위험							

	위험회3	피대상항	대상항 위험회피대상항목 <b> </b>		재무상태	20X1의	현금흐
	목의 정	부금액	의 장투	의 장부금액에		위험회피의	름위험
			至?	함된	위험회피	비효과적인	회피적
			공정가치	위험회피	대상항목	부분을	립금
			조정의	누적금액	을 포함한	계산하기	
					계정과목	위해	
	א (ב	ㅂㅋ	7) XL	ម÷ា		사용된	
	자산	부채	자산	부채		가치 변동	
-예상매출	n/a	n/a	n/a	n/a	n/a	n/a	n/a
-위험회피중단							
(예상매출)	n/a	n/a	n/a	n/a	n/a	n/a	n/a
공정가치위험회	기피						
이자율위험							
					계정과목		
-차입금	-	XX	-	XX	XX	XX	n/a
-위험회피중단					계정과목		
(차입금)	-	XX	-	XX	XX	n/a	n/a
외화환산위험					계정과목		
-확정계약	XX	XX	XX	XX	XX	XX	n/a

IG13E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24C는 기업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한 결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을 표 형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다음의 사례는 이러한 정보를 공시하는 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현금흐름위험 회피 <sup>(1)</sup>	순포지션위 험희피로 당기손익으 로 인식된 별도의 계정과목 <sup>(2)</sup>	기타포괄 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 수단의 가치변동	당기손익 으로 인식된 위험회피 회계의 비효과적 인 부분	당기손익으 로 인식된 계정과목(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포함)	현금 의 위험 리금에 서 당기 소 역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재분류로 당기손익 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과목
일반상품가격 위험				계정과목		계정과목 XX
일반상품X-위 험회피중단	n/a n/a	XX	XX	XX n/a	XX XX	계정과목 XX

<sup>(1)</sup> 자본변동표에 공시된 정보(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는 이 공시와 같은 수준으로 상세하게 제공해야 한다.

<sup>(2)</sup> 이 공시는 외화위험의 현금흐름위험회피에만 적용한다.

공정가치 위험희피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회계의 비효과적인 부분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계정과목(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포함)
이자율위험	XX	계정과목 XX
외화환산위험	XX	계정과목 XX

#### 공정가치(문단 28)

IG14 어떤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거래가격이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다르며, 해당 공정가치가 같은 자산 또는 부채의 활성시장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으로 입증할 수도 없고, 관측가능한 시장자료만을 이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 기초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의회계정책에 따라 후속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시장참여자들이 자산 또는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에고려하는 요소(시간 요소 포함)의 변동을 반영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1.2A(2) 참조). 문단 28에서는 이러한 상황의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문단 28(1)~(2)에 따른 공시는 다음과 같을수 있다(문단 28(3)은 설명하지 않음).

#### 배경

20X1년 1월 1일에 기업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자산들을 15백만원에 매입하였다. 이 기업은 이러한 금융자산들을 한 종류만 가지고 있다.

거래가격은 15백만원이다.

기업은 최초 인식 시점에 거래가격이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와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이 기업은 금융자산들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하나의 평가기법을 사용한다. 이 평가기법에서는 관측 가능한 시장의자료가 아닌 투입변수를 사용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그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측정된 금융자산의 공정가 치는 14백만원이고 이는 거래가격과 1백만원만큼의 차이가 난다.

이 거래 전인 20X1년 1월 1일에 이 기업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5백만원의 기존 차이 잔액이 있다.

#### 규정의 적용

이 기업의 20X2년 공시에는 다음이 포함될 것이다.

#### 회계정책

기업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평가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평가기법에 대한 설명은 이 사례에 포함되지 않음]. 거래가격과 최초 인식시점에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공정가치 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기업의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업의 회계정책에 대한 설명은 생략].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주석 X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업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음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가치평가기법의 명칭]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입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이 다르다면, 이러한 차이는 [기업의 회계정책에 대한 설명]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아직 인식하지 않은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20X2년	20X1년
	12월 31일	12월 31일
기초 잔액	5.3	5.0
신규 거래	_	1.0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0.7)	(0.8)
그 밖의 증가	_	0.2
그 밖의 감소	(0.1)	(0.1)
기말 잔액	4.5	5.3

#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 (문단 31~42와 B6~B28)

#### 질적 공시(문단 33)

- IG15 문단 33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이 공시할 수 있는 질적 정보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1)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와 위험이 생기는 형태.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대한 정보에서 익스포저 총액과, 위험을 이전하는 거래 와 그 밖에 위험을 줄이는 거래를 차감한 후의 익스포저 순액 을 설명할 수 있다.
  - (2) 위험의 인수, 측정, 감독, 통제를 위한 기업의 방침 및 절차.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독립성과 책임에 관한 논의를 포함한, 위험관리 기능의 구 조와 조직
    - (내) 위험을 보고하거나 측정하는 시스템의 범위 및 특성
    - (I) 담보와 관련된 방침과 절차를 포함한, 위험을 회피하거나 줄이는 방침
    - (라) 위험을 회피하거나 줄이는 수단의 지속적 효과성을 감독하 는 절차
  - (3) 위험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피하는 방침과 절차
- IG16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에 관한 정보는 미래현 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상품 간관계를 강조하는 경우에 더욱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재무제 표의 이용자는 이러한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위험 익스포저를 이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공시가 유용할 수도 있다.

IG17 문단 33(3)에 따라, 전기에 공시한 질적 정보에서 달라진 내용과 달라진 이유를 공시한다. 이러한 질적 정보의 변동은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달라지거나 그러한 익스포저를 관리하는 방법이 바뀌면서 생길 수 있다.

#### 양적 공시(문단 34~42와 B7~B28)

- IG18 문단 34에서는 위험의 집중에 대한 양적 자료의 공시를 요구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용위험이 집중될 수 있다.
  - (1) 산업부문.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하나 이상의 산업부문(예: 소매업 또는 도매업)에 집중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각 집중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를 구분하여 공시한다.
  - (2) 신용등급이나 그 밖의 신용건전성.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하나 이상의 신용건전성(예: 담보대여금 또는 무담보대여금)이나 하 나 이상의 신용등급(예: 투자등급 또는 투기등급)에 집중된 경 우에는 거래상대방의 각 집중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를 구 분하여 공시한다.
  - (3) 지역별 분포.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하나 이상의 지역 시장(예: 아시아 또는 유럽)에 집중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각 집중 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를 구분하여 공시한다.
  - (4) 제한된 수의 개별 거래상대방이나 밀접하게 관련된 거래상대 방의 집합
- IG18A 이와 비슷한 원칙을 유동성위험과 시장위험을 포함한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집중을 식별해 낼 때 적용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1) 유동성위험의 집중은 다음의 사항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 (개) 금융부채의 상환 조건
    - (내) 차입한도약정의 원천
    - 따 유동자산(liquid assets)을 실현하기 위한 특정 시장의 의존

- (라) 원래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융부채의 일부를 금융제공자에게 집중시키는 공급자금융약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문단 44G에서 기술함)
- (2) 외환위험의 집중은 하나의 외화에 노출된 유의적 순포지션이 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몇 가지 통화에 노 출된 통합 순포지션을 보유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 IG19 문단 B8에 따라, 위험의 집중에 대한 공시에는 각 집중을 식별해 내는 공통된 특성의 설명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이 공통된 특성으로 여러 국가의 집합별, 개별 국가별, 국가 내 지역별로 거래상 대방의 지역별 분포를 언급할 수 있다.
- IG20 보고기간 말의 양적 정보가 기중 위험 익스포저를 잘 나타내지 못할 때 문단 35에서는 추가 공시를 요구한다. 이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기중에 노출된 위험의 최고, 최저, 평균 모두를 공시할수 있다. 예를 들면 전형적으로 특정 통화에 노출되는 정도가 크지만 기말에는 이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라면, 기중의 다양한 시점 별로 익스포저를 보여주는 도표를 공시하거나 익스포저의 최고, 최저, 평균을 공시할 수 있다.

#### 신용위험 (문단 35A~36, B8A~B10)

IG20A 다음의 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35A~35N에서 규정한 공시를 제공하는 가능한 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 예시는 공시규정을 적용하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

#### 문단 35H와 35I의 적용 예시

IG20B 다음의 사례는 문단 35H~35I의 규정에 따라, 보고기간 중 손실충 당금의 변동을 초래하는 금융자산(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제외)의 총 장부금액의 유의적인 변동과 손실충당금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 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주택담보-손실충당금	12개월 기대신 <del>용</del> 손 실	기대신용손		손상된 금융자산(전
(단위: 천원)				
1월 1일 손실충당금 1월 1일 인식된 금융상품으로 인한 변동	X	X	X	X
-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로 대체	(X)	Χ	X	_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X)	-	(X)	X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X	(X)	(X)	-
- 보고기간 중 제거된 금융자산	(X)	(X)	(X)	(X)
발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X	-	-	-
상각	-	-	(X)	(X)
모형/위험매개변수의 변동	X	X	X	X
외화환산과 그 밖의 변동	X	X	Χ	X
12월 31일 손실충당금	X	X	X	X

손실충당금의 변동을 초래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총 장부금액의 유의적인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ABC 우량주택담보대출 포트폴리오의 취득으로 주택담보대출 장부금액이 X% 증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12개월 기준으로 측정한 손실충당금의 증가하였습니다.
- 국내시장의 침체로 DEF 포트폴리오 XX원을 상각하였고 이로 인해 손상 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이 X원으로 감소하였습니 다.
- 지역 X에서 실업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 순증가하였고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충당금이 X원으로 순증가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총 장부금액의 유의적인 변동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 과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손실충당금	12개월 기대신용 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 손실(집합 평가)	전체기간 기대신용 손실(개별 평가)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전체기간 기대신용 손실)
(단위: 천원)				
1월 1일 총 장부금액	X	Χ	X	X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로 대체된				
개별금융자산	(X)	-	X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된 개별금융자산	(X)	-	(X)	X
신용이 손상된 자산에서 대체된				
개별금융자산	X	-	X	(X)
집합기준으로 평가한 금융자산	(X)	X	_	-
발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X	-	_	-
상각	_	-	(X)	(X)
제거된 금융자산	(X)	(X)	(X)	(X)
제거를 초래하지 않는 변동	(X)	-	(X)	(X)
기타 변동	X	X	X	X
12월 31일 총 장부금액	Χ	Χ	X	x

#### 문단 35M과 35N의 적용 예시

IG20C 다음의 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35M에 따른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와 유의적인 신용위험 집중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몇 가지 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35M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 사용된 등급의 수는 내부적인 신용위험관리의 목적으로 주요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기업이 사용하는 수와 일관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용위험등급의 정보를 과도한 원가와 노력 없이는 사용할 수 없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1에 따라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업이 과거

정보를 사용한다면 기업은 그러한 금융자산의 연체 상태에 따른 분석을 제공해야 한다.

내부적 위험등급에 따흔	른 소비자 대출	·의 신용위험	익스포저	
20XX	소비자:신	]용카드	소비자:자동	· · · · · · · · · · · · · ·
(단위: 천원)	총 장투	<b>후금액</b>	총 장브	부금액
	_전체기간_	12개월	_전체기간_	12개월
내부등급 1-2	X	X	Χ	Χ
내부등급 3-4	X	X	Χ	X
내부등급 5-6	X	X	X	Χ
내부등급 7	X	X	X	X
합계	X	X	X	X

외부등급에 따른 기업대출의 신용위험 프로파일					
20XX	기업:	장비	기업:	건설	
(단위: 천원)	총 장니	부금액	총 장브	부금액	
	_전체기간_	12개월	_전체기간_	12개월	
AAA-AA	X	X	X	X	
A	X	X	X	X	
BBB-BB	X	X	X	X	
В	X	X	X	X	
CCC-CC	X	X	X	X	
С	X	X	X	X	
D	X	X	X	X	
합계	X	X	X	X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에 따른 기업대출의 위험 프로파일					
20XX	기업-두	구담보	기업-	담보	
(단위: 천원)	총 장녀	쿠금액	총 장녀	부금액	
	전체기간_	12개월	전체기간	12개월	
0.00 - 0.10	X	X	X	X	
0.11 - 0.40	X	X	X	X	
0.41 - 1.00	X	X	X	X	
1.01 - 3.00	X	X	X	X	
3.01 - 6.00	X	X	X	X	
6.01 - 11.00	X	X	X	X	
11.01 - 17.00	X	X	X	X	
17.01 - 25.00	X	X	X	X	
25.01 - 50.00	X	X	X	X	

50.01이상	Χ	X	X	X
합계	X	X	X	X

IG20D 기업 A는 자동차를 제조하며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금융을 제공한다. 기업 A는 금융상품의 별도의 분류로 판매자금융과 소비자금융을 공시하며 매출채권에 간단한 접근법을 적용하여 손실충당금을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과 같도록 측정한다. 다음의 표는 간편법에 따른 위험프로파일의 공시로 충당금 설정률을 사용하여예시한 것이다.

20XX		만기:	가 지난 매출	·채권	
(단위: 천원)	현재	30일 이상	60일 이상	90일 이상	합계
판매상금융					
기대신용손실율	0.10%	2%	5%	13%	
추정 총 파산					
장부금액	20,777	1,416	673	235	101
전체기간기대신용					
손실-판매상금융	21	28	34	31	114
소매금융					
기대신용손실율	0.20%	3%	8%	15%	
추정 총 파산					
장부금액	19,222	2,010	301	154	21,687
전체기간기대신용					
손실-소매금융	38	60	24	23	145

IG21 문단 36에서는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의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같은 종류의 금융상품은 공시되는 위험(이 경우에도 신용위험)과 관련된 경제적 특성을 공유한다. 예를 들면 기업은 주택담보대출, 무담보소비자대출, 상업대출은 각각 경제적 특성이 다르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문단 36(2))

IG22 문단 36(2)에서는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유 자산과 획득한 그

밖의 신용보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다음을 공시하면 이 규정을 충족할 수 있다.

- (1) 획득한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방침 및 절차
- (2)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의 주요 유형에 대한 설명 (그 밖의 신용보강의 예로는 지급보증, 신용파생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른 상계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계계약이 있 다)
- (3)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주요 유형과 그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 (4) 담보나 그 밖의 신용보강 내의 위험 집중에 대한 정보

IG23~IG29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IG30~IG3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유동성 위험 공시[문단 39(1)]

IG31A 다음 사례에서는 기업이 문단 39(1)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따르는 지를 설명한다.

문단 39(1)의 적용을 설명함

할인되지 않은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비파생금융부채										
만기											
	합계	1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미만	이상 -	초과 - 6	초과	초과 - 3	초과 -	초과			
			3 개월	개월	- 1년	년 이하	5년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은행차입금	1,625				285	740	600				
리스부채	2,300	70	140	210	400	750	620	110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350	70	190	90							

문단 39(1)의 적용을 설명함

할인되지 않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비파생금융부채									
	만기									
	합계	1년	1년	2년초	3년초	4년	5년초	7년	10년	
		미만	이상 -	과 -	과	초과	과 - 7	초과	초과	
			2년	3년	- 4년	- 5년	년	- 10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년		
								이하		
은행 차입금	3,100	40	300	38	280	2,442				
리스부채	4,400	500	500	480	430	430	790	800	470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95	95								

#### 문단 39(1)의 적용을 설명함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비파생금융부채										
만기										
	합계	1개월	1개월	6개월	1년초과	2년초과	3년 초과			
		미만	이상 -	초과 -	- 2년	- 3년이				
			6개월	1년 이하	이하	하				
			이하							
사채	2,100	7	34	40	79	1,940				
리스부채*	4,970			340	310	290	4,030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980	280	700							

\* 리스부채의 만기 관련 추가 정보는 다음 표에서 제공된다.

만기										
	합계	1년 이하	1년초과	5년초과	10년초과	15년초과	20년초과			
			- 5년	- 10년	- 15년	- 20년	- 25년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리스부채	4,970	340	1,200	1,110	1,050	970	300			

#### 시장위험(문단 40~42와 B17~B28)

IG32 문단 40(1)에서는 기업이 노출된 시장위험의 유형별로 민감도 분석을 요구한다. 시장위험에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는 이자율위험, 환위험, 그 밖의 가격위험이다. 그 밖의 가격위험은 지분가

격위험, 일반상품가격위험, 중도상환위험(거래당사자가 조기에 상환하거나 예상보다 늦게 상환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거래상대방에게 금융손실이 생길 위험)과 잔존가치위험(예: 잔존가치보증을 계약한 자동차 리스제공자가 잔존가치위험에 노출된 경우)과 같은 위험을 포함할 수 있다. 시장위험의 공시와 관련이 있는 위험변수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1) 시장이자율의 수익률 곡선. 수익률 곡선의 평행이동과 비평행이동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 (2) 환율
- (3) 지분상품의 가격
- (4) 일반상품의 시장가격
- IG33 문단 40(1)에서는 목적 적합한 위험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변동이 당기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민감도 분석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목적 적합한 위험변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1) 변동금리부 대여금과 같이 이자율에 민감한 금융상품의 경우 에는 현행 시장이자율
  - (2) 외화사채와 같은 외화금융상품의 경우에는 환율, 이자율
- IG34 이자율위험의 경우에는 민감도 분석에서 시장이자율의 변동이 다음 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보여줄 수 있다.
  - (1)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 (2) 거래 손익과 같은 그 밖의 당기손익항목
  - (3) 자본(해당되는 경우)
  - 이자율위험에 중요하게 노출된 통화별로 이자율위험의 민감도 분석을 공시할 수도 있다.
- IG35 시장위험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각 기업의 특정 상황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시장위험의 민감도 분석을 제공할 때 고려해야 하

는 적절한 범위는 기업별로 그리고 시장위험별로 다양하다.

IG36 다음 예시에서는 문단 40(1) 공시 규정의 적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이자율위험

20X2년 12월 31일에 다른 모든 변수는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날의 이자율이 10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했다면, 세후 당기이익은 1.7 백만원(20X1년: 2.4백만원) 증가했을 것이며,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차입금의 이자비용 감소에 기인합니다. 이자율 이외의 모든 변수는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율이 10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했다면, 세후 당기이익은 1.5백만원(20X1년: 2.1백만원) 감소했을 것이며,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차입금의 이자비용 증가에 기인합니다. 이자율 상한이 있는 차입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기이익은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보다 감소하는 경우에 더 민감합니다. 민감도는 20X1년보다 20X2년에 더 낮은데, 이는 부채의 만기가 도래하여 미상환 차입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석X 참조\*)

#### 외화환율위험

20X2년 12월 31일에 다른 모든 변수가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가 미국 달러화에 대하여 10% 평가절하되었다면, 세후 당기이익은 2.8백만원(20X1년: 6.4백만원) 감소했을 것이며, 기타포괄손익은 1.2백만원(20X1년: 1.1백만원)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다른모든 변수가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가 미국 달러화에 대하여 10% 평가절상되었다면, 세후 당기이익은 2.8백만원(20X1년: 1.1백만원) 증가했을 것이고, 기타포괄손익은 1.2백만원(20X1년: 1.1백만원) 감소했을 것입니다. 20X1년과 비교하여 20X2년에 외화환율이 당기이익에 미치는 민감도가 낮아진 것은 외화표시부채의 감소에 기인합니다. 자본은 20X1년보다 20X2년에 더 민감한데, 이는 외화부채는 감소하였지만 이를 상쇄하여 외화매입의 위험회피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문단 39(1)에서는 부채의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 그 밖의 시장위험 공시(문단 42)

- IG37 문단 42에서는 공시된 민감도 분석이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추가 정보 공시를 요구한다. 예를 들면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생길 수 있다
  - (1) 금융상품에 포함된 조건의 영향이 민감도 분석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예: 위험변수의 선택된 변동에 대해 외가격(또는 내가격) 상태를 유지하는 옵션]
  - (2) 금융자산의 유동성이 작은 경우(예: 비슷한 자산의 거래량이 적고 거래상대방을 찾기 어려운 경우)
  - (3) 금융자산을 대량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전체를 매각하는 경우 에는 소량으로 보유할 때 공시하는 시장가격보다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매각하는 경우
- IG38 문단 IG37(1)의 상황에서, 추가 공시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1) 금융상품의 조건(예: 옵션)
  - (2) 조건이 충족된다면(옵션이 행사된다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 (3)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예를 들면 기업이 외가격 상태이고 레버리지된(예: 특정한 이자율하한과 현행 시장이자율의 차이의 10배를 지급하는) 매도옵션을 포함하는 이자율 칼라(interest rate collar)를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기업은 이러한 칼라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이자율의 증가에 대하여 저렴한 경제적 위험회피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큰 폭의 이자율 하락은, 레버리지 때문에 낮은 이자율에 따른 효익보다 유의적으로 큰 금액을 매도옵션에따라 지급하게 할 수도 있다. 칼라의 공정가치도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는 위험변수의 변동에 기초한 민감도 분석도 이러한 익스포저를 반영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추가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 IG39 문단 IG37(2)에서 설명한 상황에서, 추가 공시에는 유동성 부족의 원인과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
- IG40 문단 IG37(3)에서 기술한 상황에서, 추가 공시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1) 증권의 특성(예: 기업명)
  - (2) 보유 규모(예: 발행주식의 15%)
  - (3)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 (4)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

# 제거(문단 42D와 42E)

- IG40A 다음 사례들은 문단 42D와 42E의 양적 공시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보여준다.
- IG40B 다음 사례들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채택한 기업이 문단 42D와 42E의 양적 공시 규정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

#### 문단 42D(4)와 42D(5)의 적용사례

(단위: 백만원)	당기손익인	식금융자산	상각후원 금융	]가측정 자산	기타포괄 손익인식 금융자산
	단기매매 자산	파생상품	주택담보 대여금	소비자 대여금	지분투자
자산의 장부금액	X	X	X	X	X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X)	(X)	(X)	(X)	(X)
양도자산에 한정하여 소구권이 있는 부채:					
자산의 공정가치	Χ	X	Χ	X	Χ

관련 부채의 공정가치	(X)	(X)	(X)	(X)	(X)
순포지션	Χ	X	X	Χ	X

#### 전체가 제거된 양도 금융자산

# 문단 42E(1)~(4)의 적용사례

(단위: 백만원)	(제거된) 양도자산을 재매입하기	재무상태표상 지속적 관여의 장부금액			관여	녹적 겨의 가치	손실에 최대로 노출되
	위한 현금 유출액	당기손익 인식금융 자산	기타포괄 손익인식 금융자산	당기손익 인식금융 부채	자산	부채	는 금액
지속적 관여의 유형		, _	<u> </u>	, ,			
매도풋옵션	(X)			(X)		(X)	X
매입콜옵션 유가증권	(X)	X			X		X
ㅠ//공전 대여계약	(X)			(X)	X	(X)	X
총금액		X		(X)	X	(X)	X

# 문단 42E(5)의 적용사례

양도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한 미할인 현금흐름(단위: 백만원)								
		지속적 관여의 만기						
지속적 관여의 유형	합계	1개월  1~3  3~6  ~  5년    합계  미만  개월  개월  1년  1~3년  3~5년  초과						
매도풋옵션	Χ		X	X	X	X		
매입콜옵션	Χ			X	X	X		Χ
유가증권대여계약	Χ	X	X					

IG40C 다음 사례들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채택하지 않은 기업이 문단 42D와 42E의 양적 공시 규정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

# 문단 42D(4)와 42D(5)의 적용사례

(단위: 백만원)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대여금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단기매매 증권	파생상품	주택담보 대여금	소비자 대여금	지분투자
자산의 장부금액	X	X	X	X	X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X)	(X)	(X)	(X)	(X)
양도자산에 한정하여 소구권이 있는 부채:					
자산의 공정가치	X	X	X	X	X
관련 부채의 공정가치	(X)	(X)	(X)	(X)	(X)
순포지션	X	Χ	Χ	X	X

# 전체가 제거된 양도 금융자산

# 문단 42E(1)~(4)의 적용사례

(단위: 백만원)	(제거된) 양도자산을 재매입하기	재무상태	관여	속적 겨의 가치	손실에 최대로 노출되		
	위한 현금 유출액	단기매매	매도가능 금융자산	당기손익 인식금융 부채	자산	부채	는 금액
지속적 관여의 유형		U/  11 11	1 6 7 Y E	1 211	712	1 211	
매도풋옵션	(X)			(X)		(X)	X
매입콜옵션 유가증권	(X)	X			X		Χ
대여계약	(X)		Χ	(X)	Χ	(X)	X
총금액		X	Χ	(X)	Χ	(X)	X

문단 42E(5)의 적용사례

양도자산을 재매	양도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한 미할인 현금흐름(단위: 백만원)							
	지속적 관여의 만기							
지속적 관여의	취제	1개월	1~3	3~6	6개월	1 013	0 513	5년
유형	합계	미만	개월	개월	~1년	1~3년	3~5년	초과
매도풋옵션	X		X	Χ	X	X		
매입콜옵션	X			X	X	X		X
유가증권 대여계약	Х	Х	Х					

# 공시(문단 13A~13F와 B40~B53)

IG40D 다음의 사례에서는 기업이 문단 13C에서 요구하는 양적 공시를 제공하는 방법을 예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시가 문단 13B~13E에서 정한 공시 규정을 적용하는 가능한 방법을 모두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 배경

기업은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거래를 다음과 같은 거래상대방과 체결하였다. 기업은 문단 13A 공시 규정의 적용범위를 충족하는 이러한 거래에서 생기는 다음과 같은 인식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 거래상대방 A:

기업은 거래상대방 A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의 상계기준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자산(공정가치 100백만원)과 파생상품부채(공정가치 80백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총파생상품부채는 총파생상품자산과 상계되어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20백만원의 순파생상품자산을 표시하게 된다. 순파생상품자산의 일부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담보(10백만원)를 받았다. 10백만원의 현금담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의 상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채무불이행과지급불능 또는 파산의 경우에 관련 담보약정에 따라 파생상품자산과파생상품부채의 순액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

### 거래상대방 B:

기업은 거래상대방 B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의 상계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채무불이행과 지급불능 또는 파산의 경우에 기업이 상계할 권리를 가지는 파생상품자산(공정가치 100백만원)과 파생상품부채(공정가치 80백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파생상품자산(100백만원)의 총액과 파생상품부채의 총액(80백만원)은 기업의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한다. 또 파생상품자산과 파생상품부채의 순액(20백만원)에 대하여 거래상대방 B에게서 현금담보를 받았다. 현금담보 20백만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의 상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관련 담보약정에 따라 채무불이행과 지급불능 또는 파산의 경우에 파생상품자산과 파생상품부채의 순액에 대하여 상계할 수있다.

### 거래상대방 C:

기업은 거래상대방 C와 담보부차입으로 회계처리되는 환매조건부매도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거래에서 기업이 제공한 담보로 사용하는 금융 자산(채권)의 장부금액은 79백만원이며, 공정가치는 85백만원이다. 담보부차입(환매조건부매도약정 부채)의 장부금액은 80백만원이다.

기업은 거래상대방 C와 담보부대출로 회계처리되는 환매조건부매수약 정도 체결하였다. 담보로 받은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인식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채권)의 공정가치는 105백만원이다. 담보부대출(환매조건부매수약정 채권)의 장부금액은 90백만원이다.

이 거래는 채무불이행과 지급불능 또는 파산의 경우에만 상계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42의 상계기준을 충 족하지 못하는 국제표준환매약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관련 환매조건 부매도약정 부채와 환매조건부매수약정 채권은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한다.

### 금융상품의 유형에 따른 문단 13C(1)~(5)의 적용 예시

상계되는 금융자산,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및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 인 금융자산

(단위: 백만원) 20xx년 (1) (2)(4) (5)=(3)-(4)(3)=(1)-(2)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상계되는 재무상태표에 않은 관련 금액 인식된 인식된 표시되는 (4)(4)금융자산 금융부채 금융자산 (4)(7), (4)(4) 받은 순액 총액 총액 금융상품 현금담보 순액 설명 파생상품 200 (80)120 (80)(30)10 환매조건부매수, 증권차입 약정, 유사 약정 90 90 (90)그 밖의 금융상품 합계 290 (80)210 (170)(30)10

상계되는 금융부채,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및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 인 금융부채

·-					(단위	<u>]: 백만원)</u>
20xx년	(1)	(2)	(3)=(1)-(2)	(4	)	(5)=(3)-(4)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서 상계되지	
		상계되는	재무상태표에	않은 관i	견 금액	_
	인식된	인식된	표시되는		(4)( <del>니)</del>	
	금융부채	금융자산	금융부채	(4)(7), (4)(4)	제공한	
	총액	총액	순액	금융상품	현금담보	순액
설명						
파생상품	160	(80)	80	(80)	-	-
환매조건부매도,						
증권대여약정,						
유사 약정	80	-	80	(80)	-	-
그 밖의 금융상품	-	-	-	-	-	-
합계	240	(80)	160	(160)	-	

금융상품의 유형에 따른 문단 13C(1)~(3)의 적용 예시와 거래상대방에 따른 문단 13C(3)~(5)의 적용 예시

상계되는 금융자산,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및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

## 인 금융자산

			(단위: 백만원)
20xx년 12월 31일	(1)	(2)	(3)=(1)-(2)
	인식된	재무상태표에서	재무상태표에
	금융자산의	상계되는 인식된	표시되는
	총액	금융부채 총액	금융자산 순액
설명			
파생상품	200	(80)	120
환매조건부매수, 증권차입약정,			
유사 약정	90	-	90
그 밖의 금융상품			
합계	290	(80)	210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및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거래상대방별 순 금융자산

				(단위: 백만원)
20xx년 12월 31일	(3)		(4)	(5)=(3)-(4)
	재무상태표에 _	재무상태표 않는 :	_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순액	(4)(개), (4)(내 금융상품	(4)( <del>()</del> 받은 현금담보	순액
거래상대방 A	20	-	(10)	10
거래상대방 B	100	(80)	(20)	-
거래상대방 C	90	(90)	-	-
그 밖의 거래상대방	-	-	-	
합계	210	(170)	(30)	10

상계되는 금융부채,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및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 인 금융부채

			(단위: 백만원)
20xx년 12월 31일	(1)	(2)	(3)=(1)-(2)
		재무상태표에서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상계되는 인식된	표시되는 금융부채
	금융부채의 총액	금융자산 총액	순액

설명			
파생상품	160	(80)	80
환매조건부매도, 증권대여약			
정, 유사 약정	80	-	80
그 밖의 금융상품	-	-	-
합계	240	(80)	160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및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거래상대방별 순 금융부채

			(	'단위: 백만원)
20xx년 12월 31일	(3)		(4)	(5)=(3)-(4)
		재무상태표에	서 상계되지 않는	
	재무상태표에	관 :	련 금액	
	표시되는	(4)(7), (4)(4)	(4)(4)	
	금융부채의 순액	금융상품	제공한 현금담보	순액
거래상대방 A	-	-	-	-
거래상대방 B	80	(80)	-	-
거래상대방 C	80	(80)	-	-
그 밖의 거래상대방	-	-	-	
합계	160	(160)	-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제1109호로의 전환규정 (문단 42K~42O)

IG40E 다음의 예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42K~42O에서 규정한 양적 공시를 충족하기 위한 가능한 방법 중의 하나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 예시는이 기준서의 공시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

# 경과 규정 (문단 44)

2018년 1월 1일 기업회계기준	서 제1039호에	서 제1109	9호로의	재무상태표의	조정 내역
금융자산				(iv)=(i)+	
	(i) 2017년 12월 31일 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자보그에 (1)	(ii) 재분류	(iii) 재측정	(ii) + (iii) 2018년 1월 1일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장부금액	(v)= (iii) 2018년 1월 1일 이익잉여금 에 미치는
다기소이 고객기된 초객 최모	장부금액 (1)			<u> 경구급액</u>	영향 (2),(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					
가산: 메드키는즈리(기즈니					
매도가능증권(기준서 제1039호)에서 대체		(1)			(3)
상각후원가(기준서		(1)			(0)
제1039호)에서 대체:					
요구되는 재분류		(2)			
상각후원가(기준서					
제1039호)에서 대체: 선택한 공정가치 선택권 행사(2018.					
1. 1)					
차감:					
상각후원가(기준서					
제1109호)로 대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대체: 채무상품(기준서					
제1109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대체: 지분상품(기준서					
제1109호)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의 총 변동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					
가산-채무상품:					
매도가능증권(기준서					
제1039호)에서 대체					(7)
상각후원가(기준서					(0)
제1039호)에서 대체					(8)
당기손익-공정가치 (기준서 제1039호)에서: 분류요건에					
따라 요구되는 재분류					(9)
당기손익-공정가치 (기준서					
제1039호)에서 대체:					
2018년 1월 1일 현재					
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공정가치선택권 요건을					
증정가시선택된 표선들 충족하지 않음					(10)
당기손익-공정가치(기준서					1-4/
제1039호)에서 대체:					(11)

2018년 1월 1일 기업회계기준	서 제1039호에	서 제110	9호로의	재무상태표의	조정 내역
금융자산				(iv)= (i) +	
	(i)	(ii)	(iii)	(ii) + (iii)	(v)= (iii)
	2017년 12월	재분류	재측정	2018년 1월	2018년 1월
	31일 기준서			1일 기준서	1일
	제1039호에			제1109호에	이익잉여금
	따른			따른	에 미치는
	장부금액 (1)			장부금액	
선택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공정가치 선택권을					
취소					
가산-지분상품:					
매도가능증권(기준서					
제1039호)에서 대체					
당기손익-공정가치 (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공정가치					
선택권)에서 - 2018년 1월 101					
1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					
원가 (기준서 제1039호)에서					
대체					
차감-채무상품과 지분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기준서					
제1039호)에서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기준서 제1109호)으로					
대체: 분류요건에 따라					(4)
요구되는 재분류					(4)
매도가능금융자산(기준서					
제1039호)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기준서 제1109호)으로					
대체:2018년 1월 1일					
공정가치 선택권을 행사					
매도가능금융자산(기준서					
제1039호)에서 상각후원가					
(기준서 제1109호)로 대체					(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의 총 변동					
상각후원가					
가산:					
매도가능금융자산(기준서					
제1039호)에서 대체					(6)
당기손익-공정가치(기준서					
제1039호)에서 대체:					
요구되는 재분류					
당기손익-공정가치(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 2018년 1월 1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제1109호로의 재무상태표의 조정 내역 금융자산 (iv)=(i)+(ii) (iii) (v)=(iii)(i) (ii) + (iii) 재측정 2017년 12월 재분류 2018년 1월 2018년 1월 31일 기준서 1일 기준서 1일 제1109호에 제1039호에 이익잉여금 따른 따른 에 미치는 장부금액 (1) 장부금액 영향 (2),(3) 공정가치선택권)에서 대체: 2018년 1월 1일 공정가치선택권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당기손익-공정가치(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공정가치선택권):2018년 1월 1일 공정가치선택권을 취소 차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기준 (12) 서 제1109호)로 대체 당기손익-공정가치(기준서 제1109호)로 대체: 분류요건에 따라 요구되는 재분류 당기손익-공정가치(기준서 제1109호)로 대체:2018년 1월 1일 공정가치 선택권 행사 상각후원가의 총 변동 합계 2018년 1월 1일 재분류 및 (iv) =재측정된 총 금융자산의 (ii)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구분되는 (1)의 주계약 요소와 (2)의 요소로 구분되는 복합상품(hybrid instruments)을 재분류하는 효과를 포함하며, (1)의 요소는 2017년 12월 31일 공정가치 X인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되어 있으며, (2)의 요소는 2017년 12월 31일 공정가치가 Y인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된다.

0

(iii)

(i)+(ii)+(iii)

(i)

- 2 최초 적용일에 기타포괄손익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된 금액인 (3), (4), (5), (6)을 포함한다.
- 3 최초 적용일에 이익잉여금에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재분류된 금액인 (7), (8), (9), (10), (11), (12)를 포함한다.

IG4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자액

#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시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을 기술하여 결론도출근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IASB가 동 기준 제정시 제시한 결론도출근거를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를 갈음하고자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와 구 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로 별도 제시한다.

IFRS 7 '금융상품: 공시(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의 결론도출근거

문단번호 도입 BC1~BC5C BC6~BC11 적용범위(문단 3~5) 이 기준서의 적용대상 기업 BC6~BC8 IASB가 고려한 면제 규정 BC9~BC11 보헊자 BC9 중소기업 BC10 종속기업 BC11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에 관한 공시(문단 7~30, B4, B5) BC12~BC39H 원칙(문단 7) BC13 대차대조표 공시(문단 8~19와 B4) BC14~BC23B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문단 8) BC14~BC15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 (문단 9~11, B4 및 B5) BC16~BC22 재분류(문단 12B~12D) BC23~BC23B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BC24A~BC32 배경 BC24A~BC24E 적용범위(문단 13A) BC24F~BC24N 문단 13A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인식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한 양적정보의 공시(문단 13C) BC24O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순액의 공시(문단 13C(3)) BC24P 문단 13C(2)에 포함되지 않는,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금액의 공시(문단 13C(4)) BC24Q~BC24R 문단 13C(4) 공시금액의 한도(문단 13D) BC24S 금융상품 유형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공시 BC24T~BC24W 그 밖의 고려사항 BC24X~BC24AL 담보(문단 14와 15) BC25 대손충당금(문단 16) BC26~BC27 복수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복합금융상품 (문단 17) BC28~BC31 채무불이행과 계약 위반(문단 18과 19) BC32 손익계산서와 자본(문단 20) BC33~BC35 수익·비용·손익의 항목(문단 20(1)) BC33~BC34 수수료 수익과 수수료 비용(문단 20(3)) BC35 그 밖의 공시: 위험회피회계 BC35A~BC35CCC 일반적 고려사항 BC35F~BC35O 위험관리전략 BC35P~BC35S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 BC35T~BC35CC 위험회피회계가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BC35DD~BC35MM 기타포괄손익에 누적한 옵션의 시간가치 BC35NN~BC35QQ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한 신용위험회피 BC35RR~BC35SS

BC35TT~BC35CCC

BC35DDD~BC35CCO

BC35ZA~BC35ZB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그 밖의 공시: 회계정책

그 밖의 공시: 이자율지표 개혁에 관한 추가 공시

그 밖의 공시: 공정가치(문단 25~30) BC36~BC39H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에

관한 공시(문단 31~42와 B6~B28) BC40~BC65

질적 공시와 양적 공시의 상호작용(문단 32A) BC42A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을 공시하는 위치(문단 B6) BC43~BC46

양적 공시(문단 34~42와 B7~B28) BC47~BC48

기업이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기초한 정보

(문단 34와 B7) BC47~BC47A

평균에 대한 정보 BC48

신용위험(문단 36~38, B9와 B10) BC48A~BC54

공시 목적 BC48A~BC48C

신용위험 관리실무 BC48D~BC48O

기대신용손실에서 생기는 금액 BC48P~BC48BB

신용위험 익스포저 BC48CC~BC48GG

신용위험에 최대로 노출되는 정도

(문단36(1), B9와 B10) BC49~BC50

보유하고 있는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

(문단 36(2)와 37(3)) BC51~BC53

연체되지도 않고 손상되지도 않은 금융자산의

신용 건전성(문단 36(3)) BC54

조건을 재협상한 금융자산(문단 36(4)) BC54A

연체되거나 손상된 금융자산(문단 37) BC55~BC55A

담보물과 그 밖의 신용보강(문단 38) BC56~BC56A

유동성위험(문단 34(1), 39, B10A와 B11A~B11F) BC57~BC58E

시장위험(문단 40~42와 B17~B28) BC59~BC64

운영위험 BC65

금융자산 양도와 관련된 공시 BC65A~BC65S

배경 BC65A~BC65D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 BC65E~BC65H

전체가 제거된 양도 금융자산 BC65I~BC65N

관리용역계약에 대한 공시규정의 적용 BC65O~BC65S

시행일과 경과 규정(문단 43-44A) BC66~BC72A

상계관련 IFRS 7 개정사항의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적용 가능성(문단 44R) BC72B~BC72C

공개초안의 주요 변경 요약 BC73

### IFRS 7의 결론도출근거 관련 참고사항

-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주체(IASB, IASC, IFRIC 등)가 IFRS를 제정한 과정과 외부의견 등에 대한 논의내용 등을 기술한 것이다.
-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이용자를 위해 IASB가 작성한 문서이 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원문을 번역하 여 제공한다.
- 이 결론도출근거에 언급되는 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에 각 각 대응되는 K-IFRS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대응표를 제시한다.

	국제회계기준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
IFRS 4	Insurance Contracts	제1104호	보험계약
IFRS 8	Operating Segments	제1108호	영업부문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제1109호	금융상품
IAS 32	Financial Instrument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Presentati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Recognition and		측정
	Measurement		

# IFRS 7 '금융상품: 공시(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IFRS 7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이 결론도출근거의 용어는 IAS 1(2007년 전부개정)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 하여 수정되지는 않았다.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항목의 분류와 측정과 관련한 IAS 39의 요구사항을 IFRS 9 '금융상품'으로 재배치하였고 이에 따라 IFRS 7을 개정하였다. 결론도출근거를 이러한 변경과 일관되도록 수정하였다.

### 도입

- BC1 IASB가 IFRS 7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일부 사항들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을 두고 다루었다.
- BC2 1990년대 후반에, 국제회계기준 제30호(IAS 30) '은행 및 이와 비슷한 금융기관의 재무제표 공시(Disclosure i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Banks and Similar Financial Institutions)'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분명해졌다. IASB의 전신인 IASC는 IAS 30에서 은행에 대해서만 다루었던 몇 가지 주제를 더욱 포괄적으로 다루는 여러 기준서를 발표하였다. 또 금융서비스산업과 금융기관이 활동 및 위험 익스포저를 관리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 이 때문에 은행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은행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 관련된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와 위험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평가하고 비교하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되었다.

- BC3 IASC는 1999년에 IAS 30을 개정하는 과제를 의제에 추가하였고 2000년에는 운영위원회를 설립하였다.
- BC4 IASB는 2001년에 이 과제를 의제에 포함하였다. 이 과제에 대해 지원을 받고 조언을 듣기 위해, IASB는 재무활동자문위원회 (Financial Activities Advisory Committee: FAAC)로 개명된 IAS 30의 운영위원회를 전문가 자문그룹(expert advisory group)으로 유지하였다. FAAC의 구성원들은 은행, 금융회사, 보험회사에서의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감사인, 재무분석가, 작성자, 감독자가 포함되었다. FAAC의 임무는 다음과 같았다.
  - (1) 금융상품에 유의적으로 노출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자와 감사인의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한다.
  - (2) IASB가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공시와 그 밖의 관련된 공시에 관한 기준서와 실무적용지침을 개발할 때 지원한다.
- BC5 IASB는 2004년 7월에 공개초안 제7호(ED 7) '금융상품: 공시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를 발표하였다. 외부검토의견 제출 마감일은 2004년 10월 27일이었다. IASB는 외부검토의견서 105건을 받았다. IASB는 이 외부검토의견서를 검토한 후, 2005년 8월에 IFRS 7을 공표하였다.
- BC5A IASB는 2008년 10월에 IFRS 7 개정 공개초안 '금융상품에 관한 공시의 개선(Improving Disclosures about Financial Instruments)'을 발표하였다. 개정안의 목적은 공정가치와 유동성위험에 관한 공시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IASB는 외부검토의견서 89건을 접수하였다. 이 외부검토의견서를 검토한 후, IASB는 IFRS 7의 개정을 2009년 3월에 공표하였다. IASB는 이 개정 내용을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반적으로 IFRS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 시행일은 공표한 후 6~18개월 후로 정하지만 금융상품의 강화된 공시에 대한

긴급한 요구가 있어 더 일찍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2011년 1월에 IASB와 미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인 FASB는 공개초 BC5B 안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Offsetting Financial Assets and Financial Liabilities)'를 발표하였다. 이 공개초안은 IASB와 FASB 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상계 규정의 합치를 이루라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요청과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권고에 따른 것이었다. 서로 다른 규정으로 인해 IFRS에 따라 작 성된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금액과 US GAAP에 따라 작성된 재무 상태표에 표시된 금액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생기며, 파생상품 거 래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 특히 그렇다. 공개초안에서는 금융자 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규정을 대체하고 FASB와 공통된 접근법을 수립했었다.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검토한 후에 IASB와 FASB는 각자의 상계모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재무 제표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IASB와 FASB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상계약정(인식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상계 권리를 포함)이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 가할 수 있도록 공시를 추가하는 것에 함께 동의하였다. '공시: 금 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IFRS 7 개정)'는 2011년 12월에 공표하 였고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와 이 회계 연도의 중간 보고기간부터 시행한다.

BC5C IASB는 2024년 7월에 'IFRS 연차개선 Volume 11'을 공표하여 IFRS 7의 실무적용지침 문단 IG1과 IG20B를 개정하였다. 이해관 계자들은 IFRS 7의 실무적용지침에서 제공된 예시가 참조된 IFRS 7 문단의 모든 요구사항을 설명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IASB에 알려주었다. 이러한 예시 중 일부(예: 문단 IG20B)는 참조된 IFRS 7 문단의 요구사항들 중 어떤 요구사항을 예시하고 있지 않은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다른 예시(예: 문단 IG20C)는 그렇지 않다. IASB는 식별한 명확성의 부족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하

였다.

- (1) 문단 IG1을 수정하여 이 지침이 참조된 IFRS 7 문단의 모든 요구사항을 반드시 예시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 (2) 문단 IG1을 수정하여 예시되지 않은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단순화하였다.

# 적용범위(문단 3~5)

### 이 기준서의 적용대상 기업

- BC6 은행 및 이와 비슷한 금융기관만 적용하였던 기준서인 IAS 30을 개정하는 과제에 따라 IFRS 7을 제정하였지만, IFRS 7은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IASB는 많은 국가에서 규제 장벽이 완화되고 은행, 비은행금융서비스회사, 금융그룹 간의 경쟁이 치열해져, 전통적으로 은행과 같이 규제와 감독을 받는 기업에서만 제공하던 금융서비스를 많은 기업이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IASB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이 과제를 은행과이와 비슷한 금융기관에만 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 BC7 IASB는 은행과 그 밖의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특정한 활동(수신, 대출, 유가증권 업무)을 수행하는 기업이 별도의 기준서가 필요한 특유한 위험에 직면하는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모든 기업의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에 관한 공시를 이 과제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결론지었다.
  - (1) 금융상품과 관련된 위험에 관한 공시는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하다.
  - (2) IASB는 수신, 대출, 유가증권 업무에 대한 정의를 적절히 내릴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유가증권 업무를 하는 기업과 투자 및 유동성 관리 목적으로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기

업의 차이를 적절히 구분할 수 없었다.

- (3) 2002년 6월에 발표한 공개초안 'IAS 32의 개선'에 대한 검토의 견에서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IAS 32의 위험 공시 규정이 개선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4) 금융상품 중 일부를 제외하면, 위험공시가 불완전해 지고 오해를 일으킬 위험이 커지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이 발행한 채무상품은 수신, 대출, 유가증권 업무의 일환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기업이 유동성위험, 이자율위험, 환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5) 재무제표이용자는 서로 다른 기업의 비슷한 활동·거래·사건을 일관되게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규제대상 기업에 적용하는 공시 원칙과 이와 비슷하지만 규제대상은 아닌 기업에 적용하는 공시 원칙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 BC8 IASB는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가 IAS 32의 적용범위와 같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IASB는 종속기업·관계기업·공동기업의 지분에 기초하는 파생상품이 IAS 32에서 정의하는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이 기준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지분상품은 재측정되지 않고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 (1) 지분상품 때문에 발행자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는다.
  - (2)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에 관한 공시는 지분상품과 관련되지 않는다.
  - 이러한 금융상품은 IFRS 7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결정하는 목적으로는 IAS 32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 IASB가 고려한 면제 규정

### 보험자

BC9 IASB는 이 기준서를 금융상품을 보유하면서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이 적용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금융상품은 모든 기업이 그 밖의 어떤 자산이나 부채를 보유하는지와 관계없이 위험에 노출되도록 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을 면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발행하면서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기업은 보험계약에는 IFRS 41)를 적용하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는 IFRS 7을 적용한다. 그러나 IFRS 4의 많은 공시 규정은 IAS 32의 현행 규정이나 이와 비슷한 규정들을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IASB는 IFRS 7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IFRS 4에서 요구하는 공시도 수정하되 IFRS 4의 잠정적인 특성을 반영하도록 변경하였다.

### 중소기업

BC10 IASB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중소기업을 면제할 것인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의 정도가 금융 상품을 사용하는 정도와 이와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는 정도에 좌우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 기준서에 따르더라도 금융상품과이와 관련된 위험이 거의 없는 기업은 공시할 것도 거의 없다. 또한 이 기준서의 많은 규정은 기업의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한다. 이로써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는 맞지 않는 지나치게 부담이 되는 규정들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IASB는 그러한 기업들을 IFRS 7의 적용범위에서 면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 결정을 중소기업에 대한 재무보고 과제에서 계속 검토할 것이다.

### 종속기업

<sup>1) 2017</sup>년 5월에 공표된 IFRS 17 '보험계약'은 IFRS 4를 대체하였다.

BC11 ED 7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일부 기업,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발행하는 지배기업이 지분을 모두 소유한 종속기업은 재무제표에 대한 공적 이해관계가 거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해당 종속기업의 개별재무제표에 IFRS 7의 일부 규정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기업이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기업, 각국의 입법기관, 감독기구의 문제이다. 그러한 기업이 IFRS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그 재무제표의 이용자들은 IFRS에 따라 작성된 모든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이용자와 같은 품질의 정보를 얻어야 한다. IASB는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어떠한 기준서의 일반적 규정도 면제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확인하였다.

#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에 관한 공시 (문단 7~30, B4, B5)<sup>2)</sup>

BC12 IASB가 공시사항을 IAS 32에서 IFRS 7로 재배치함에 따라 금융 상품에 대한 모든 공시 규정이 하나의 기준서에 있게 되었다.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에 관한 많은 공시 규정이 종전에는 IAS 32에 있었다. 이 공시사항에 대한 IAS 32 결론도출근거의 관련 문단을 이 결론도출근거에 포함하였다. 이 결론도출근거에서는 IAS 32의 개정(2003년)이나 IFRS 7을 제정할 때 IASB가 다시 고려하지 않았던 규정들은 논의하지 않는다.

# 원칙(문단 7)

BC13 IASB는 IFRS 7의 공시 규정은 문단 7에 있는 분명한 공시원칙에 서 이끌어 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이 원칙을 충족하기

<sup>2)</sup> IFRS 9 '금융상품'에서 IFRS 7 문단 B4를 삭제하였다.

위해 공시사항도 특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면, 문단 8~30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다면 문단 7의 원 칙을 충족할 수 없다.

# 대차대조표 공시(문단 8~19와 B4)<sup>3)</sup>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문단 8)

BC14 문단 8에서는 IFRS 9의 측정범주에 따라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ASB는 각 측정범주의 공시는 재무제 표이용자들이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로 인식된 금액에 회계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BC15 또 IASB는 (1)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과 금융부채로 지정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2)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을 별도로 공시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결론지었다. 그 이유는 기업이 이러한 지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 (문단 9~11, B4, B5)<sup>4)</sup>

BC16 IFRS 9에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비파생금융 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렇게 지정한 경우에는 문단 10~11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IASB가 이러한 공시를 규정한 이유는 IFRS 9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Z5.29~BCZ5.34에서 기술하고 있다.

<sup>3)</sup> IFRS 9 '금융상품'에서 IFRS 7 문단 B4를 삭제하였다.

<sup>4)</sup> IFRS 9 '금융상품'에서 IFRS 7 문단 B4를 삭제하였다.

BC17 문단 9, 11, B5(1)에 있는 규정들은 2005년 6월에 공표한 IAS 39 개정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공정가치선택권(Amendments to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The Fair Value Option)'5과 관련되어 있다. 그 규정의 이유는 그 개정에 대한 결론도출근거에서 논의되었다.

BC18 문단 10(1)에서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이 원인인 공정가치 변동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종전에 IASB는 IAS 39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을 심의할 때이러한 공시를 고려하였다.

BC19 실무에서 이러한 변동을 계량화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IASB는 이러한 정보의 공시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하고 특히 이러한 공시가 없을 때 재무제표이용자가 신용위험의 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2003년에 IAS 32의 개정을 확정할때에 IASB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기준금리의 변동에 기인하지 않은 부분의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변동이 종종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이 원인인 공정가치 변동에 상당히 가깝고 특히 이러한 변동이 클 경우 그러하며, 이러한 공시가 신용위험의 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BC20 그러나 ED 7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 32의 공시가 단순한 채무상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가까운 값을 제공한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기준금리와 관련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에는 내재파생상품의 영향과 같은 다른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의견제출자들은 변액보험계약의

<sup>5)</sup>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이 문단은 IFRS 7 이 공표되었을 때 관련된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다.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이러한 변액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정해진 자산 집합의 성과를 해당 부채의 금액에 반영한다. IASB는 IAS 32에서 개발된 대용치는 기업이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생기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실무적으로 직접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우려를 인정하였고 공유하였다.

- BC21 그 결과로 IASB는 신용위험 변동의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직접 강조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1) 기업이 신용위험 변동이 원인인 공정가치 변동금액을 더욱 충실하게 나타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은 사용한 방법도 공시하고 그 방법이 문단 10(1)(카)의 대용치보다 더 충실한 표현이라는 결론을 내린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 (2) 대용치 공시가 시장위험을 일으키는 시장상황의 변동에 기인하지 않은 공정가치 변동금액이 되도록 개정하였다. 예를 들면일부 기업은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 중 일부분을 지수 변동이 원인인 것으로 식별하여 볼 수 있다. 이 경우 대용치 공시는 지수 변동이 원인인 변동금액을 제외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부 또는 외부 투자펀드의 변동이 원인인 금액을 제외하면 대용치는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더욱 적합하게 된다.
- BC22 IASB는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하는 경우 장부 금액과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만기에 상환하여야 할 금액의 차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문단 10(2) 참조). 공정가치는 결제금액과 유의적으로 다를 수 있는데, 발행 후 유의적인 신용 악화를 겪은 기업의 경우에 남은 기간이 긴 금융부채가 특히 그렇다. IASB는 이러한 차이를 아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또 결제금액은 일부 재무제표이용자들, 특히 채권자에게는 중요하다.

### 재분류(문단 12B~12D)

BC23 IAS 32에서는 공정가치가 아닌 원가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재분류 이유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였다. IASB는 재분류의 이유와 각 범주별 재분류 금액의 공시를 포함하도록이 규정을 확장하였다. 문단 BC1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ASB는 금융상품의 범주화가 금융상품의 측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유용하다고 보았다.

BC23A IASB는 2008년 10월과 11월에 IAS 39<sup>9</sup>를 개정하여 일부 상황에서 특정한 금융자산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IASB는 그러한 재분류를 하게 된 상황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추가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금융자산의 이러한 재분류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유용하다고 본다.

BC23B 2009년 11월 IASB는 IFRS 9의 금융자산 재분류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융자산의 재분류와 관련된 공시요구사항을 개정하였다.

BC2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배경

BC24A 재무제표이용자의 요청과 FSB의 권고에 따라, 2010년 6월에 IASB 와 FASB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

<sup>6)</sup>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이 문단은 IFRS 7 이 공표되었을 때 관련된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다.

잠재적으로 합치되도록 하기 위해 각자의 의제에 과제를 추가하였다. 서로 다른 규정으로 인해 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금액과 US GAAP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금액 간에 차이가 유의적이며, 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 특히 그렇다.

- BC24B 이에 따라 2011년 1월에 IASB와 FASB는 공개초안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를 발표하였다. 이 공개초안에서는 IFRS와 US GAAP에 적용할 공통의 상계 규정을 제안하였고, 상계 권리 및 이와 관련된 약정의 대상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관한 공시를 제안하였다.
- BC24C 대부분의 공개초안 의견제출자는 IASB와 FASB의 합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였지만, 제안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였다. 많은 IFRS 재무제표작성자는, 기본 원칙과 제안된 기준이 IAS 32의 기본 원칙 및 기준과 비슷하며, 그러한 금융상품에 대한 기업의 신용 및 유동성 익스포저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였다. 일부 US GAAP 재무제표작성자는 제안된 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상품을 상계하는 것은, 파생상품과 재매입약정·재매도약정을 제외하면 현재의 모형에 비해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 BC24D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재무상태표에 총액 또는 순액 정보 중 어느 정보를 제공하는지와 언제 총액 또는 순액 정보를 표시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하였다. 그러나 총액 및 순액 정보 모두가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유용하며 필요하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하였다. 재무제표이용자는 IFRS와 US GAAP의 규정 합치를 지지하였고, IFRS와 US GAAP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더 잘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개선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비교 가능한 정보는 투자자들이 비율을 산정하고 분석을 수행할 때 중요하다.

BC24E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의 결과로서 IASB와 FASB는 각 위원회의 상계모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1)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는 경우와 (2)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는 않더라도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및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경우에 인식된 금융상품의 총액 및 순액의 공통된 공시를 요구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공개초안에서 원래 제안하였던 공시를 개정하고 마무리지음으로써 같은 사항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데 동의하였다.

### 적용범위(문단 13A)

BC24F 공개초안의 공시는, 상계 권리를 적용받고(받거나), 기업이 현금이 나 그 밖의 금융상품을 담보로 받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인식된 모든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적용되었을 것이다.

BC24G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IFRS 7 문단 14, 15, 36(2)에서 받거나 제공한 금융상품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을 공시하도록 이미 요구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US GAAP에는 이와 비슷한 공시 규정이 있다. 따라서 (담보약정이나 신용보강이 아닌) 상계 권리의 대상인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IASB와 FASB는 그러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추가 공시정보를 제공한다고 가치가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BC24H 예를 들면 일부 의견제출자는 같은 금융기관에 있는 대출금과 고 객예금을 상계하는 조건부 권리의 공시를 제공하면 실무적 부담이 유의적일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그러한 권리는 흔히 법규에 따른 것이며,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 상계 권리에 기초하여 그러한 금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을 관리하지는 않는다. 또 채무불이행과 같은 상황에서만 고객예금을 대출금과 상계할 수 있는 계약상 권

리가 있는 기업은 이러한 권리를 신용보강으로 보며 신용경감의 주된 원천으로 보지는 않는다. 의견제출자들은 상계에 관한 공시 규정을 논의할 때 재무제표이용자가 이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을 개정된 공시에 포함하는 원가가 효익을 초과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BC24I IASB와 FASB는, 각자의 상계모형을 충족하는 모든 금융상품과,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이나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인식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로 공시범위를 한정하기로 동의하고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같은 금융기관에 있는 대출금과 고객예금은 (각자의 상계모형을 충족하는 제한적인 경우는 제외) 특별히 이 규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축소된 적용범위는 IFRS에 따라 상계된 금액과 US GAAP에 따라 상계된 금액의 정보에 대한 재무제표이용자의 요구에 여전히 부응한다. 이러한 공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의 유형에는, 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액과 US GAAP에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액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일으키는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 BC24J 그러한 금융상품과 관련되는 담보약정이 있다면, 채무불이행과 지급불능 또는 파산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과정에서 기업의 익스포저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러한 약정의 대상인 금액을 공시할 것이다.
- BC24K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대여자가 관련 비금융 담보를 상계하는 권리를 보유한 금융상품을 제외하도록, 제안한 공시의 적용범위를 추가로 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비록 비금융 담보약정이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재무제표작성자가 반드시 보유한 비금융담보를 기초로 그러한 금융 상품에 관련된 신용위험을 관리하지는 않는다.

BC24L 이 공시는 인식된 금융상품과 금융상품 상계약정이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둔다. 또 IASB와 FASB는 신용위험 공시의 전반적인 재검토는 이 과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비금융담보에만 상계 권리가 있는 금융상품은 제외하는 것으로 공시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BC24M 소수의 의견제출자는 이 제안이 금융기관을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보이지만, 비금융기관에도 요구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들은 그러한 공시가 비금융기업의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게 될 효익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BC24N IASB와 FASB는 금융기관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기관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하였지만, 이 공시가 오직 금융기관에만 목적 적합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다른 산업에도 비슷한 금융상품활동이 있고, 신용위험 익스포저를 줄이기 위하여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및 이와 비슷한 약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요구하는 공시가 기업의 사업 특성에 상관없이 기업의 약정에 관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13A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인식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한 양적정보의 공시(문단 13C)

BC24O IASB와 FASB는 IFRS 7 문단 13C의 공시 규정에 포함되는 인식된 금융상품이 서로 다른 측정 규정을 따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였다. 예를 들면 같은 공시 규정(예: IFRS 7 문단 13C(1))을 따르는 파생상품자산 또는 파생상품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될 것이지만, 재매입약정과 관련된 채무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될 수도 있다. 또 IFRS 7 문단 13C(4)(나)를 적용하는 받거나 제공한 모든 금융상품담보의 공정가치금액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기업의 익스

포저에 관한 최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시에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를 공시하는 표는 서로 다른 금액으로 측정된 금융상품을 포함할 수도 있다. IFRS 7 문단 13C에 따라 공시하는 금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IASB와 FASB는 관련 공시에서 이러한 측정의 차이를 기술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순액의 공시(문단 13C(3))

BC24P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할 때, 재무제표이용자는 주석에 있는 정보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액에 맞추어 명확하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IFRS 7 문단 13C에 따라 금액을 공시할 때, 기업이 재무제표의 개별 항목 금액을 통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보다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도 IFRS 7 문단 13C(3)의 공시금액을 재무상태표의 개별 항목 금액에 맞추어 조정을 나타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13C(2)에 포함되지 않는, 집행 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비슷한 약정의 대상인 금액의 공시(문단 13C(4))

BC24Q IFRS 7 문단 13C(4)(가)에서는 IAS 32 문단 42의 상계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인식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공시에는 IAS 32 문단 42(2)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행 상계 권리나 거래상대방 중 어느 하나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급할 수 없거나 파산하는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있는 조건부 상계 권리가 포함될수 있다. 비록 그러한 권리가 IAS 32에 따른 상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재무제표이용자는 기업이 정상적인 사업과정에서 그리고(또는) 채무불이행과 지급불능 또는 파산의 경우에 그러

한 금융상품에 노출되는 정도를 경감하기 위하여 체결한 약정에 관심이 있다.

BC24R IFRS 7 문단 13C(4)(나)에서는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재무상태표에서 상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공시 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현금담보 및 금융상품담보 금액의 공시를 요구한다. 담보약정의 조건에 따라 담보는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지급불능 또는 파산의 경우에 흔히 기업의 익스포저를 줄일 것이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대하여 받거나제공한 담보는 흔히 채무불이행이 생기면 즉시 매각할 수도 있다.따라서 IASB와 FASB는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는 않지만 그 밖의 상계약정과 관련된 담보금액은 IFRS 7 문단 13C(4)(나)에서 요구하는 공시금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 문단 13C(4) 공시금액의 한도(문단 13D)

BC24S IASB와 FASB는 일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담보가 초과된 상태이지만, 다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담보가 부족한 상태인 경우에는 현금담보금액과(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 형태의 담보의 공정가치를 합산하여 공시하면 오해를 일으킬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기업이 담보가 초과된 금융상품으로 담보가 부족한 금융상품을 부적절하게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IFRS 7 문단 13D에서는 기업의 익스포저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인식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공시하는 현금담보 및(또는) 금융상품 담보의 금액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담보에 대한 권리가 금융자산 간에 집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가 IFRS 7 문단 13D에 따라 제공하는 공시에 포함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담보 부족을 이해하기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 금융상품 유형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공시

BC24T 공개초안에서는 금융상품의 종류별 공시를 제안하였다. 기업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공시하는 정보의 특성에 맞게 금융상품의 특성과 적용할 수 있는 상계 권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류별로 각각 묶어 공시하도록 요구받았을 것이다. 많은 재무제표작성자는 채무불이행과 지급불능 또는 파산의 경우에 상계할 권리와 관련된 금액을 금융상품의 종류별로 공시하는 원가가 그 효익을 초과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들은 흔히 거래상대방별로 신용위험을 관리하지만 반드시 금융상품의 종류별로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지적하였다.

BC24U 많은 재무제표이용자는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지만 집행할수 있는 일괄상계약정 및 이와 비슷한 약정(금융담보 포함)의 대상인 인식된 금액의 공시는, 이러한 금액을 재무상태표의 금액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그 금액이 거래상대방별인지, 금융상품의 유형별이나 종류별인지에 상관없이, 유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공시를 금융상품의 유형별, 종류별로나 거래상대방별로 제공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 IASB와 FASB는 이 공시의 목적(IFRS 7 문단 13B)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상계약정이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하는 것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24V IASB와 FASB는 금융상품의 종류별이 아니라 유형별로 공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재무제표작성자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결정하였다. 금융상품 유형별 공시는 IFRS 7의 다른 공시에서 사용되는 금융상품 종류별 공시와 다를 수도 있고 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차이를 둠으로써 이러한 개정이 요구하는 공시의 목적을 보다 잘달성할 수 있는 상황에는 적절하다. 또 IASB와 FASB는 문단 13C (3)~(5)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금융상품의 유형별 또는 거래상대방별로 표시되는지에 대하여 융통성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재무제표작성자가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공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BC24W IASB는 IFRS 7 문단 31에서 보고기간 말에 기업이 노출되어 있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IFRS 7 문단 34에서는 각 위험 유형별로 위험의 집중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따라서 IASB는 금융상품의 유형별 또는 종류별이나 거래상대방별로 공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지에 상관없이, 기업은 이미 위험과 위험관리방식에 관한 정보(신용위험의 집중에 대한 정보를 포함)를 공시하도록 요구받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그 밖의 고려사항

IFRS와 US GAAP 간의 조정

BC24X 일부 재무제표이용자는 IFRS에 따라 상계된 금액을 US GAAP에 따라 상계된 금액과 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요청하였다. IASB와 FASB는 IFRS 7 문단 13C(2), (3), (4)에 따라 공시하는 금액은 아마도 IFRS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제표와 US GAAP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제표에서 서로 다를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IFRS 7 문단 13C(1) 및 (5)에 따라 공시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에 적용되는 상계기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금액은 정상적인 사업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과 지급불능 또는 파산의 경우에도 상계약정이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

BC24Y 따라서 개정된 공시 규정에서 직접 IFRS와 US GAAP의 금액을 조정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지만, 총액 및 순액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으로 모두 제공한다. IASB와 FASB는 IFRS와 US GAAP 간의 완전한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특히 상대적인 원가와 효익을 고려할 때 불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러한 조정을 요구했다면 재무제표작성자는 두 종류의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관련 회계기준의 모든 변경과 관련 국가에서 계약의 모든 변경을 추적했어야 할 것이다.

### 표형식의 정보

BC24Z 다른 형식이 더 적절하지 않다면, 공시는 표 형식(표)으로 표시해야 한다. IASB와 FASB는 표 형식이 모든 상계 권리와 그 밖의 관련 약정이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장 잘 전달하고 그러한 정보의 투명성을 향상한다고 생각한다.

### 경과 규정 및 시행일

- BC24AA IASB와 FASB는 공개초안에서 두 가지의 경과 규정 접근법(전진 적용 및 소급적용)을 구별하였다.
- BC24AB 전진적용 경과 규정은 회계기준을 모든 과거 기간에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만 일반적으로 적절하다. IASB와 FASB는 제안된 공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소급적용 경과 규정에서는 새로운 규정을 표시되는 모든 기간에 적용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는 기간간 재무정보의 일관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소급적용 경과 규정은기업 간에 비교되는 회계정보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 원래의 제안에 비하여 공시의 범위는 축소되었고, 공시는 덜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정하여, 소급적용에 따르는 재무제표작성자의 부담을 줄여 줄 것이다.

BC24AC 공개초안에서는 시행일을 제안하지 않은 대신에 의견제출자들에 게 제안된 규정의 시행에 소요되는 시간 및 노력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다. IASB와 FASB는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에 대한 적절한 시행일을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의견뿐만 아니라 '시행일 및 경과 규정에 관한 의견요청(Request for Views on Effective Dates and Transition Methods)'에 대한 검토의견 그리고 계획된 다른 회계기준과 보고기준의 시기를 고려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BC24AD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상계 제안이 IAS 39를 IFRS 9로 대체하는 과제의 다른 부분들과 시행일이 같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더 이른 시행일을 요구한다면, 제안사항의 적용은 비교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표시되는 회계연도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제안된 공시 규정을 적용하는 잠재적인 부담 때문이다.

BC24AE 개정 공시 규정을 공표하였던 2011년 12월에 IFRS 9은 아직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IASB는 IFRS 9의 과제로 상계공시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금융상품과제의 시행일에 이 개정의 시행일을 맞추면 공통 공시 규정의 시행일을 연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의 지연을 의미할 것이다. 상계와 IFRS 9 과제는 서로 독립적이며, 비교 가능성의 향상에 따른 효익을 재무제표이용자가받을 수 있도록 IASB와 FASB는 공통 공시사항은 가능하면 시행일을 앞당겨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24AF 또 개정된 공시에서 공개초안의 원래 제안에 비하여 적용범위를 축소하였고, 덜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이 이미 인식하고 측정한 금융상품의 표시와 관련되기 때문에, IASB와 FASB는 긴 경과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았다. 따라서 IASB와 FASB는 개정 공시의 시행일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와 이 회계연도의 중간기간부터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BC24AG 결론도출근거의 다른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기술한 바와 같이, IFRS 7 문단 13B~13E에서 요구하는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와 US GAAP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를(특히, 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함에 따른 것이다.
- BC24AH IFRS 7 문단 13B~13E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가 상계약정(기업의 인식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관련된 상계 권리포함)이 IFRS에 따라 표시되는 재무상태표와 US GAAP에 따라표시되는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할수 있도록 할 것이다.
- BC24AI IASB는 IAS 1 문단 10(6)에서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할 때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 제공을 요구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 공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IFRS 7 개정)'의 경우에는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은 공시에만 관련되며,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재작성 또는 재분류와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IAS 1의 문단 10(6)이 IFRS 7의 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워가·효익 고려

BC24AJ 특정 IFRS나 개정 IFRS를 공표하기 전에 IASB는 그것이 필요를 유의적으로 충족하는지와 결과적으로 생산되는 정보의 전반적 효익이 그 정보를 제공하는 원가를 정당화할 것인지를 확인하고자한다. '공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IFRS 7 개정)'의 결론도출근거의 다른 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IASB는 이

러한 공시를 제공하는 것이 시장참여자들에게 유의적인 효익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였다. 이 공시는 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에 표시 표에 표시된 금액과 US GAAP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금액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특히, 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큰기업의 경우) 다룬다. 따라서 이 공시는 두 회계기준에 따라 표시되는 금액을 더 비교 가능하게 한다.

BC24AK IASB는 재심의하는 동안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공시를 제공하기 위하여 드는 원가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고려하였다. 결론도출근거의 다른 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IASB는 공시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변경으로 재무제표이용자가 요청하였던 정보를 여전히 제공하면서도 작성자의원가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BC24AL 이러한 개정의 결론도출근거에서 설명하고, 문단 BC24AJ 및 BC24AK에서 요약한 고려 사항에 기초하여, IASB는 '공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상계(IFRS 7 개정)'의 효익이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작성자의 원가를 초과한다고 결론 내렸다.

# 담보(문단 14와 15)

BC25 문단 15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담보물을 담보물 소유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매도하거나 다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기업은 보유 중인 담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ED 7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보유한 담보물의 공정가치를 실무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공시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ASB는 보유 중이고 채무불이행 상태가아니더라도 매각할 수 있는 담보물의 공정가치는 기업이 알고 있다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론지었다.

# 대손충당금(문단 16)<sup>7)</sup>

BC26 손상차손을 기록하기 위해 별도의 계정(예: 충당금 계정이나 자산의 집합적 손상을 기록하는 데 사용하는 이와 비슷한 계정)을 사용할 때, 문단 16에서는 그 계정의 변동 내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재무분석가와 그 밖의 이용자가 기업의 손상차손에 대한 충당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한 기업과 다른 기업을 비교할때 이러한 정보를 유용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IASB는 차이조정의 구성 요소를 특정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은 각자의 필요에 가장 알맞은 형식을 융통성 있게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BC27 ED 7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기업이 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등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IASB는 이 기준서를 확정할 때 이러한 공시를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집합적으로 손상을 검토하는 IAS 39의 규정 때문에 거의 모든 기업에서 충당금이나 이와 비슷한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문단 B5(4)에서 요구하는 회계정책의 공시에는 금융자산 장부금액에 직접 조정 사용 정보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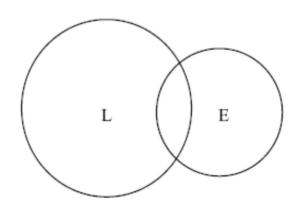
# 복수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복합금융상품(문단 17)

BC28 IAS 32에서는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분리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그 가치가 상호의존적인 복수의 내재파생상품 특성이 있는 복합금융상품(예: 발행자가 보유자에게서 금융상품을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내재되거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금융 상품을 재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내재된 전환채무상품)은 이러한 특성이 없는 복합금융상품보다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분리가 더

<sup>7)</sup>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이 문단은 IFRS 7 이 공표되었을 때 관련된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다.

욱 복잡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지분의 특성이 있는 내재파생상 품과 지분의 특성이 없는 내재파생상품이 상호의존적이라면, 부채 요소와 자본요소의 가치를 별도로 측정하여 합산한 금액은 복합 금융상품 전체의 가치와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BC29 예를 들면 기업이 콜옵션을 행사할 때 보유자의 지분전환옵션이 소멸되거나 보유자가 지분전환옵션을 행사할 때 기업의 콜옵션이 소멸된다면, 상환할 수 있는 전환채무상품에 내재하는 콜옵션 특성의 가치와 지분전환옵션 특성의 가치는 부분적으로 상호의존적이다. 다음의 그림은 상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에 있는 콜옵션과 지분전환옵션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결합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L로 표시된 원은 부채요소의 가치, 즉 일반부채와 일반부채에 대한 내재 콜옵션의 가치를 나타내고, E로 표시된 원은 자본요소의 가치, 즉 일반부채에 대한 지분전환옵션의 가치를 나타낸다. 두 원의 전체 영역은 상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가치를 나타낸다. 별도로 분리하여 결정한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가치 합계와 상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전체의 가치의 차이는 콜옵션 특성과 지분전환 특성 사이의 상호의존성이 원인인 결합가치이다. 이는 두 원이 교차하는 영역으로 나타난다.



BC30 IAS 32의 접근법에 따르면, 복수의 내재파생상품 특성 간의 상호 의존성이 원인인 결합가치는 부채요소에 포함된다. 숫자로 나타낸

예제는 IAS 32의 적용사례 10에 있다.

BC31 이러한 접근법이 자본을 잔여지분으로 정의한 것과 일치하기는 하지만, IASB는 결합가치가 본질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부채요소 또는 자본요소 중 어느 하나로 배분하는 것은 자의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상호의존적인 가치를 지닌 복수의 파생상품 특성이 내재되어 발행된 복합금융상품이 존재한다는 것을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공시는 복수의 내재과생상품 특성이 부채와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에 미친 영향을 강조한다.

### 채무불이행과 계약 위반(문단 18과 19)

BC32 문단 18과 19에서는 차입금 및 그 밖의 차입약정의 채무불이행과 계약 위반에 대한 공시를 규정한다. IASB는 이러한 공시는 기업의 신용도와 미래 차입 전망에 관한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결론지었다.

# 손익계산서와 자본(문단 20)

# 수익·비용·손익의 항목(문단 20(1))

- BC33 문단 20(1)에서는 IFRS 9의 측정 범주에 따라 손익계산서의 손익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문단 BC14에서 기술한 대차대조표의 공시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다. IASB는 이용자가 IFRS 9의 서로 다른 측정 기준에 따른 금융상품의 재무성과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 BC34 일부 기업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손익에 이자와 배당수익을 포함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다.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수익을 기업 간에 비교할 때 재무제표이용 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IASB는 손익계산서의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예를 들면 당기손익-공정가 치 측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순손익에 이자와 배당수익을 포함하는지를 공시해야 한다(부록B 문단 B5(5) 참조).

## 수수료 수익과 수수료 비용(문단 20(3))

BC35 문단 20(3)에서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서 생기는 수수료 수익과 수수료 비용(유효이자율을 결정할 때 포함한 금액은 제외)의공시와 개인, 신탁, 퇴직급여제도, 그 밖의 기관을 대리하여 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신탁활동 또는 이와 비슷한 활동에서 생기는 수수료 수익과 수수료 비용의 공시를 요구한다. 이 정보는이러한 활동의 수준을 나타내고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기업의 가능한 미래 수익을 추정할 때 도움을 준다.

# 그 밖의 공시: 위험회피회계

BC35A IASB는 IAS 39를 대체하기 위해 3단계로 프로젝트를 구분하였다. IASB는 각 단계를 완료했을 때 IAS 39에서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IFRS 9의 각 장으로 대체하였다. IAS 39를 대체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3단계는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것이었다. IASB는 IAS 39에 포함된 위험회피회계를 대체하기로 결정하면서 IFRS 7에 포함된 위험회피회계와 관련한 공시 요구사항의 변경을 고려하였다.

BC35B 재심의기간에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들과 외부의견수집활동을 수 행하였다. 이 외부의견수집활동에는 표시와 공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IASB는 제안한 위험회피회계 공시를 개발하기 위해 외부의견수집활동에서 받은 의견을 이용하였다.

BC35C IASB는 많은 이용자가 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회계 공시가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들었다. 또 많은 이용자는 최초에 IFRS 7에 포함된 위험회피회계 공시가 기업의 위험회피활동의 투명성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BC35D 기업의 위험회피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IASB는 특정 목적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 공시를 제안하였다. 분명한 공시 목적은 기업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하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때 기업의 판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BC35E 다음의 각 소-절에서 위험회피회계 공시(안)와 관련한 IASB의 고려사항을 정리하였다.

#### 일반적 고려사항

#### 위험회피회계의 범위

BC35F 기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특정 위험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예: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기에 적격하지 않은 항목). 거래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용자는 해당 거래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기업이 거래를 체결한 이유와 특정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BC35G 그러나 IASB는 그러한 공시를 강제하는 것은 이 공시목적에 적합한 기업의 위험관리 부분을 판단하고, 공시 요구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정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을 생각했다. IASB는 이는 위험회피회계 프로젝트보다 그 범위가 더 넓어서 이 프로젝트의 일부로 실현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공시가 회계처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BC35H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이용자는 기업의 위험회피활동에 대한 정보를 영업 보고서와 재무보고 이외의 원천에서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얻는 정보에서 종종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를 개략적으로 알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IASB는 2010년에 위험회피회계의 공개초안(이하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계')에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회피에 대한 공시를 제안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BC35I 2010년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대부분의 응답자는 IASB가 제안한 위험회피회계 공시의 범위(기업이 위험회피를 하고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를 제공)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일부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는 않지만 기업이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 익스포저에 대하여 재무제표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BC35J IASB는 IFRS 7에서 기업이 보고기간말에 노출된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정도와 특성, 정보와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양적, 질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IASB는 이러한 공시의 일부로서 재무제표이용자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위험 익스포저를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BC35K 따라서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제안한 대로, 기업이 위험회피를 하고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위험회피회계의 공시범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시의 위치

BC35L IASB는 모든 위험회피회계 공시가 기업의 재무제표 내의 한 곳에

표시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미 다른 곳에 그러한 정보를 표시하였다면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기업이 상호 참조하여 그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상호 참조로 포함할 수 있는 일부 정보에 대해 IFRS 7에서 사용한 접근법과 비슷하다. IASB는 이 정보가 기업의 재무제표 내의 한 곳에 표시된다면 더 투명하고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한다.

#### 위험범주별 공시

- BC35M IASB는 인식과 측정의 요구사항은 경제적 위험회피활동의 일부만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의 위험회피활동을 보고하는 데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그러므로 IASB는 기업의 위험회피활동의 투명성은 다음사항을 고려하는 접근법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 (1) 위험회피회계로 알게 된 기업의 위험관리활동 개요를 명확하 게 제공하는 정보(이 정보를 주요 재무제표에 반드시 제공할 필요는 없음)
  - (2) 주요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
- BC35N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요 재무제 표이외에 포함된 위험회피회계 정보와 주요 재무제표에 포함된 위험회피회계 정보 사이에 명확한 연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연계를 제공하기 위해 IASB는 기업이 위험회피회계 공시를 위험범 주별로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기업은 위험범주별로 다음을 공시해야 한다.
  - (1) 주요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문단 BC35P~BC35BB 참 조)
  - (2) 주요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문단 BC35CC~BC35SS 참조)
- BC35O IASB는 공시가 세분화될 필요가 있는 위험범주를 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기업은 위험회피를 활용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기초로 판단하여 위험을 범주화하여야한다. 예를 들면 기업은 일부 위험회피관계(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변동이자율을 고정이자율로 변경하기 위해) 이자율스왑을 이용하여 변동이자율위험을 관리하는 반면, 다른 위험회피관계(현금흐름위험회피)의 변동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모두 관리하기 위해 이종통화이자율스왑을 이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은 변동이자율위험이라는 하나의 위험범주를 가지며, 변동이자율위험과 결합된외화위험이라는 또 다른 위험범주를 가진다. 그러나 기업은 기업의 위험범주를 제안한 위험회피회계 공시 모두에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한다.

#### 위험관리전략

- BC35P 재무제표이용자는 기업이 위험관리전략을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위험에 대한 기업의 위험관리전략을 이해하는 것은 이용자가 공시된 회계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BC35Q 따라서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IASB는 기업이 각 위험범주별 위험관리전략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제안하였다.
- BC35R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는 이 제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일부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기업이 공시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얼마나 상세하게 제공해야 하는지 가 분명하지 않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 BC35S IASB는 기업이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기초하여 위험관리전략을 식별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설명할 것이라는데 주목하였다. IASB는 기업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위험을 관리하기 때문에 공시해야 할 정보의 구체적인 목록을 정한다고 해서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위험관리전략을 이해하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에 IASB는 위험관리를 설명하는데 포함할 정보의 유형에 대한 지침

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

BC35T IASB는 위험회피회계 공시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재무제표이용 자가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각특정위험에 대한 위험관리전략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양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여기서 위험 익스포저는 기업이 위험회피를 하고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위험만을 말한다.

BC35U 따라서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IASB는 기업이 다음 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 (1) 기업이 관리하는 위험 익스포저와 그 위험 익스포저를 회피하고자 하는 정도에 대한 양적 정보
- (2)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는) 위험회피관계가 지속되는 각 미래기 간에 해당하는 양적 정보의 내역

BC35V IASB는 각 특정 위험범주에 대해 위험회피관계가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천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도록 제안하였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이 정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이유를 이용자가 식별하는 데 도움 될 것이다. 또 이 정보는 이용자가 위험회피관계가 당기손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BC35W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기업이 위험 익스포저의 정보와 위험회피비율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IASB의 제안에 반대하였다. 응답자들은 이에 따라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익스포저와 위험회피비율)가 공시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선택하지 않은 기업들은 전혀 공시하지 않으면서도, 이익이되지 않을 수 있지만 경쟁자의 위험회피 포지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부당한 이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 상

업적으로 민감함은 상장기업이 아니거나 IFRS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는 경쟁기업을 가진 기업에게는 우려가 될 수 있다.

BC35X IASB는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제안은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대상항목)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미래전망 정보에 대한 공시와 미래 거래를 위험회피하는 비율에 대한 공시가 될 것이다. IASB는 이 공시로 경쟁자가 기업의 원가구조를 볼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따라서 IASB는 이 정보가 잠재적으로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총 위험 익스포저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는 정보는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또 IASB는 제안된 공시의 중점을 위험회피대 상항목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바꾸기로 결정하였다. 다시 말하면,이 공시는 위험회피수단의 조건과 상황에 대한 일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이러한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이 노출된 익스포저와 기업이 특정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미래현금호름에 미치는 영향을 유추하는데 여전히 목적 적합하고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BC35Y 또 IASB는 '동적'위험회피의 과정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 위험에 대한 전반적인 익스포저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바뀌는 익스포저에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여 위험회피관계를 자주 중단하고 다시시작하여야 하는 경우를 논의했다. 특히 개방형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IASB는 일반위험회피회계모형에서는 항목 집합에 대한 위험회피와 폐쇄형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순포지션의 위험회피에 위험회피회계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개방형포트폴리오에 대해 '동적'위험회피의 과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즉 기업들은 개방형 포트폴리오를 단기간의 폐쇄형 포트폴리오로 보아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고 해당 기간 말에 또 다른 단기간의 폐쇄형 포트폴리오로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과정의 동적 특성은 위험회피관계의 잦은 중단과 재시작을 필요

로 한다.

BC35Z IASB는 그러한 상황에서 위험회피수단의 조건과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은, 위험회피수단이 단기간만 특정 위험회피관계의 일부가되고 이후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에 지정되거나 지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게 되므로 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반해위험회피수단의 조건 및 상황과 관련된 공시는 기업이 전체 위험회피기간에 대체적으로 동일하게 남아 있는 위험을 회피하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고안한 것이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잦은 위험회피관계의 중단과 재시작과 관련된 '동적'위험회피 과정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위험회피수단의 조건 및 상황을 공시하도록 한 요구사항을 면제하였다.

BC35AA IASB의 관점은 이용자에게 단기간만 위험회피관계의 일부가 되는 (그리고 빈번하게 지정이 변경되는) 위험회피수단의 조건과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보다는 이용자가 기업이 '동적'위험회피 과정의 맥락에서 위험회피회계를 활용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IASB는 그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기업의 위험관리전략을 반영하기 위해 기업이 사용하는 위험회피회계의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위험관리전략의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1) (동적위험회피과정에 대한) 최종적인 위험관리전략이 무엇인지 에 대한 정보
- (2) 기업의 위험회피전략을 위험회피회계를 사용하고 특정 위험회 피관계를 지정하는 데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설명
- (3) 동적위험회피과정의 일부로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고 재시 작하는 빈도의 지표

BC35BB IASB는 지정된 위험회피관계의 잦은 변경 때문에 보고기간 말에 특정 관계가 보고기간의 통상적인 규모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므로 IASB는 보고기간 말의 규모가 보

고기간의 통상적인 규모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문단 42에서 시장위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의 공시 요구사항과 비슷한)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BC35CC 위험회피회계의 한 가지 기능은 위험회피수단의 회계처리와 위험 회피대상항목의 회계처리 사이에 인식과 측정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회피회계 공시는 이러한 인식과 측정의 차이가 감소된 정도를 투명성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용자가 위험회피회계가 기업의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 위험회피회계가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BC35DD 위험회피회계가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IASB는 위험범주별, 위험회피의 종류 별로 정보를 구분하여 표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공시를 제안 하였다. 표 형식으로 공시를 제공하게 되면 이용자가 목적 적합한 숫자와 그러한 숫자가 기업의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BC35EE IASB의 최초 외부의견수집 활동에서 이용자들은 기업의 위험회피활동을 위험회피관계의 종류별(예: 현금흐름위험회피, 공정가치위험회피)로 분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은 기업이 관리하는 위험과 위험회피의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험회피회계가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는 적용된 회계처리(예: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반영해야 한다. IASB는 제안된 표를 위험범주별로, 위험회피 종류별로 작성한다면 이 표는 회계정보와 위험관리 정보 사이의 충분한 연결을 제공한다고 생각했다.

BC35FF IASB는 표 형식으로 공시해야 할 정보를 통합하고 세분화하는 수준을 미리 정하는 것을 제안하지 않았다. 기업은 통합이나 세분화의 적정한 수준을 결정할 때 판단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IASB는 기업이 통합과 세분화의 적정한 수준을 고려할 때 IFRS 7의다른 공시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면, 이용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시하는 금액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공정가치 공시와 제안된 위험회피회계 공시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BC35GG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에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연하도록 요구한다. 이연된 금액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으로 자본변동표에 반영된다. IAS 1에서 기업은 자본의 각 구성요소에 대해 기초와 기말의 장부금액의 조정내역을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위험회피회계 공시의 목적에 맞추어 IASB는 IAS 1에서 요구하는 조정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위험회피회계의 효과를 식별하는 정보와 같은 수준으로 상세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 IASB는 위험의 유형별로 조정을 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그러한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자본과 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위험회피회계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고 보았다.

BC35HH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많은 응답들은 위험회피회계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표 형식으로 공시하자는 IASB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일부 응답자는 제안이 너무 규범적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일부는 제안된 것과 같은 표 형식의 공시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설명할 목적으로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분명하고 충분한 관계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 일부 응답자는 이러한 공시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금융상품과 지정되지 않은 금융상품을 구별할수 있게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응답자들은 금융상품의 지정

이 분명하게 공시된다면 금융상품의 목적과 효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BC35II IASB는 위험회피 유형별(예: 공정가치 위험회피나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범주별, 위험관리전략별로 구분한 표 형식의 공시가 회계정보와 위험관리정보를 충분하게 연결시켜준다고 생각한다.

BC35JJ IASB는 정보를 표 형식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 이외에는 특정 형식을 제안하지 않았다. IASB는 기업이 표 형식이 요구되는 공시를 이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BC35KK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의견조회기간에 IASB는 IFRS 13 '공정가치 측정'을 공표하였다. 이 기준서의 공표로 IASB는 IFRS 7에 포함된 공정가치 공시를 IFRS 13으로 재배치했다. 위험 회피회계 공시의 유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IASB는 같은 기초 정보 와 관련하여 IFRS 7이나 IFRS 13에서 사용된 통합이나 세분화와 같은 수준을 기업이 사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BC35LL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의 재심의에서 또 IASB는 포괄손 익계산서에 인식된 위험회피의 비효적인 부분이 위험회피대상수 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 변동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공시를 고려했다. IASB는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된 근거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변동의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보고기간의 (현금흐름위험회피와 해외순투자위험회피에서 '저가' 검사('lower of' test)의효과를 고려한 후) 가치변동이다. 이는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해표에 포함된 금액과 위험회피수단에 대해표에 포함된 금액 간의차이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BC35MM 또 IASB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금융상품과 그렇지 않은 금 융상품을 나타내는 특정 공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지 않았다. IASB는 그러한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잠재적 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위험회피대 상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금융상품을 투기적 목적으로 보 유하는 것으로 재무제표이용자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다. 기업은 위험회피목적으로 금융상 품을 보유할 수도 있지만 위험회피회계를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 할 수도 있다. 이 뿐만 아니라, IASB는 기업이 IFRS 13에서와 같 이 통합과 세분화를 같은 수준에 기초한 표 형식으로 요구한 정 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이용자는 공시를 서로 간단히 비교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식 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이용자는 위험회피회계 공시 와 관련되지 않지만 IFRS 7에 포함된 공시 요구사항을 활용하여 기업이 금융상품 때문에 노출된 위험 익스포저를 관리하는 방법 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기타포괄손익에 누적한 옵션의 시간가치

BC35NN IASB는 기업이 옵션의 시간가치를 별도로 구분하고 옵션의 내재가지만 (위험회피수단으로)지정하기로 선택하는 경우에, 옵션의 시간가치에 대해 기타포괄손익과 관련한 회계규정을 제안했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제안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관련된 공시를 고려했다.

BC35OO IASB는 IAS 1에서 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기초시점과 기말시점의 장부금액 조정내역의 공시를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 1의 결과로서 기타포괄손익에 누적한 옵션의 시간가치와 관련된 금액과 그 잔액의 변동을 공시한다.

BC35PP 그러나, 2010년 공개초안 '위험회피회계'에서 IASB는 기타포괄손 익누계액의 조정을 공시하는 경우 거래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기간 관련 위험회피대상항목을 구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세분화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시간에 따라 비용화되는 금액과 특정 거래가 발생할 때 대체되는 금액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된다.

BC35QQ 대부분의 응답자는 IASB의 제안에 동의했고, IASB는 2010년 공개 초안 '위험회피회계'에 포함된 공개초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선도 요소와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에 대해 대안적 회계 처리를 허용하기로 한 IASB의 결정으로 IASB는 IAS 1의 목적으로 선도요소와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인식한 금액과 옵션의 시간가치와 관련한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한 신용위험회피

BC35RR 기업이 신용파생상품을 사용하여 신용위험을 회피하는 상황을 위해 IASB는 위험회피대상 신용 익스포저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회계처리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회계처리하는 신용파생상품과 관련된 회계불일치를 감소시키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그러한 회계처리를 적용할 때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공시도 고려하였다.

BC35SS IASB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의 정보가 회계처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1) 신용파생상품의 명목금액과 공정가치 각각의 기초와 기말의 금액 변동내용
- (2) 신용 익스포저에 대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회계 처리를 변경한 결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익

(3) 신용 익스포저에 대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회계 처리를 중단할 때 새로운 간주원가나 상각후원가(대출약정의 경우), 관련되는 명목금액이나 원금

####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BC35TT 2019년 5월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 이전 기간에 대하여 완화규정을 제공하기 위해 IFRS 9와 IAS 39의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안한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2019년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IASB는 2019년 9월 IFRS 9와 IAS 39의 최종 개정사항을 발표하였다. IFRS 9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6.546~BC6.603과 IAS 39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223~BC288은이러한 개정의 배경을 제공한다.

BC35UU 2019년 공개초안에서 IASB는 예외규정을 적용한 경우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의 규모에 대한 공시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4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FRS 7에서 이미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구체적인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일부 식별된 독정 공시사항과 관련하여 제안한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에 관해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도록 제안하였다. 특히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IFRS 7의 문단 24A(1), 24A(3)~(4), 24B(1)(전)~(나), 24B(1)(전) 및 24B(2)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별도로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BC35VV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의 규모에 대한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이 재무제표이용자의 기대 효익과 재무제표작성자의 기대 원가 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지에 대하여 엇갈

린 견해를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이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공 시 요구사항을 단순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BC35WW 또 재무제표이용자들은 IFRS 9와 IAS 39의 개정안이 의무 적용사항이므로 기업의 위험회피관계가 어느 정도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지에 관한 정보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IASB에 말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개정사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으며,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보완될 수 있다. 이러한 공시는 기업의 위험회피관계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불확실성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다.

BC35XX 의견제출자들의 외부검토의견과 재무제표이용자의 의견에 기초하여,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IFRS 7 문단 24H의 공시사항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BC35YY IASB는 IFRS 7 문단 24H(4)의 공시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IFRS 9와 IAS 39의 개정의 목적과 구체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데 추가적인 가정이나 판단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예를 들어, 예외규정은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가정을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이 개정사항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때 유의적인 가정이나 판단을 한다면(예: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이상 나타나지 않는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이에 대한 공시사항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개정사항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한 유의적인 가정이나 판단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BC35ZZ IASB는 IFRS 7 문단 24H(5)의 요구사항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양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 문단에서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을 공시하여 순액기준(자산 포지션의 위험회피수단과 부채 포지션의 위험회피수단을 상계)이 아닌 총액기준으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BC35AAA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28(6)의 공시 요구사항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 문단은 당기 및 비교표시된 각 과거 기간에 대하여 IFRS(또는 IFRS의 개정)를 최초로 적용할 때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조정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BC35BBB 이 의견제출자들은 IFRS 9와 IAS 39의 개정에 대하여 그러한 공시를 요구하는 것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며 재무제표작성자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조정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업이 시스템을 병행하여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이러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오로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IFRS 9 문단 BC6.550과 IAS 39 문단 BC227에 기술된 IASB의 판단과 일관되지 않는다.

BC35CCC IASB는 이러한 외부검토의견에 동의하였고 IFRS 9와 IAS 39의 개정을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 대해서는 IAS 8 문단 28(6)의 요구사항을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밖의 공시: 이자율지표 개혁에 관한 추가 공시

BC35DDD 2020년 4월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 기간 동안에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IFRS 9, IAS 39, IFRS 7, IFRS 4, IFRS 16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2020년 공개초안)'를 발표하였다.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IFRS 9의 문단 6.8.2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이자율지표에 대한시장 전반적인 개혁('개혁')을 말한다. IASB는 2020년 8월에 IFRS 9, IAS 39, IFRS 7, IFRS 4, IFRS 16의 최종 개정을 공표하였다(2단계 개정). IFRS 9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5.287~BC5.320, BC6.604~BC6.660, BC7.86~BC7.99와 IAS 39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289~BC371에서는 이러한 개정의 배경을 논의한다.

BC35EEE 공시가 2단계 개정에 수반되어야 하는지 결정할 때, IASB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효익과 재무제표 작성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원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IASB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드는 원가가 효익을 초과하는 공시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개혁이 기업의 금융상품과 위험관리전략에 미치는 영향에대해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공시 요구사항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IASB는 2단계 개정이 없을 때를가정한 개혁의 영향에 대한 양적공시를 요구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드는 원가가 효익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같은 이유로 IASB는 IAS 8의 문단 28(6)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BC35FFF 2020년 공개초안에서 IASB는 제안된 공시 목적과 그러한 목적에 맞는 공시 요구사항을 정함으로써 제한된 추가 공시요구사항을 제안하였다.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공시 목적을 지지하였고 제안된 공시에 대체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IFRS 7 문단 24J(2)에서 요구하는 공시 사항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기업이 IFRS 9 문단 5.4.6~5.4.8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에 대해 다시 고려할 것을 요청하였다.

BC35GGG 2020년 공개초안의 IFRS 7 문단 24I(2)에서는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자율지표를 계속 참조하는 비파생금융자산, 비파생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파생상품의 명목금액을 공시하도록 제안하였다. 2020 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해 야 하는 나머지 금융상품의 규모에 대한 양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개혁 이행 진척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의견제출자들은 관련 비파생금융상품의 장 부금액에 기초하여 양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보고시스 템 개선에 비용이 들게 하고, 추가적인 통제와 조정을 하도록 요 구하는 것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제한된 기간에 재무제표 작 성자, 특히 2단계 개정을 조기 적용할 계획인 재무제표 작성자에 게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대체 기준 에 따른 양적 정보 공시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예를 들 면, 관련 비파생금융상품의 장부금액에 대한 정보를 과도한 원가 나 노력 없이는 이용할 수 없다면, 기업은 개혁 이행의 일환으로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된 양적 정보에 기초하여 공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BC35HHH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2020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양적 정보는 기업의 개혁 이행 진척도에 대한 유용한 측정치이지만, 비파생금융자산과 비파생금융부채에 대한 양적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의 관련 항목에 이미 표시된 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양적 정보는 (이미표시된 그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기업이 양적 정보를 공시할 다른 기준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양적 정보는 여전히 유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BC35III IASB는 IFRS 7 문단 24J(2)에서 요구하는 공시의 기본적인 목적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 진척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보고기간말 현재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자율지표를 참조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양적 정보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의 개혁 이행의 진척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IASB는 이러한 공시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자율지표를 계속 참조하는 비파생금융자산, 비파생금융부채, 파생상품에 대한 양적 정보는 보고기간말 현재 비파생금융자산, 비파생금융부채, 파생상품의 폭액의 맥락에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BC35JJJ IASB는 기업이 관련 양적 정보를 다른 방법으로 제공하여도 여전히 공시의 기본적인 목적을 충족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공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적적합한 양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이미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 정보 제공 원가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았다.

BC35KKK 따라서 IASB는 보고기간말 현재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지 않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정도를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게 양적 정보를 공시하도록 IFRS 7 문단 24J(2)를 개정하였다. 이 정보는 유의적인 이자율지표별로 세분화될 것이다. 기업은 양적 정보를 공시하는 기준을 선택하고, 어떤 기준을 적용하였는지 설명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양적 정보는 다음을 기초로 할 수 있다.

- (1) 비파생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비파생금융부채의 장부금액, 파생 상품의 명목금액
- (2) 인식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금액(예: 비파생금융자산과 비파생

금융부채의 계약상 액면금액, 파생상품의 명목금액)

- (3) 이러한 금융상품에 대해 기업의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와 같은 주요 경영진(IAS 24에서 정의함)에게 내부적으로 제공한 금액
- BC35LLL 또한, IASB는 보고일에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자율지표를 참조하지만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기 전에 소멸할 금융상품에 대해 IFRS 7 문단 24J(2)의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이 공시 요구사항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문단 BC35III 참조), 기업은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해야 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즉, 만기 이전에)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 BC35MMM 2020년 공개초안에서는 IFRS 9 문단 5.4.7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 용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지 평가하기 위해 내린 유의적인 판 단을 포함하여 기준금리와 그 금리의 조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 록 제안하였다.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개혁의 규제적 특성에 비추어 기업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하도록 충분히 상세하고 기업 특유의 방식으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의미있 는 방식으로 공시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어려움 에 대하여, 종종 서로 다른 대체 지표 이자율에 노출되어 있는 다 국적기업을 참조하여 기술하였다. 이들은 제안된 공시가, 그러한 변경이 경제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의도라면 그러한 공시는 불필요하다고 하였다. 기업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했다는 사실은 기업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 다고 평가했다는 것을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자동적으로 알려준다. 또한 이러한 조건을 적용하기 위하여 유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면, IAS 1 문단 122에 따라 기업은 그러한 판단을 공시해야 할 것 이라고 하였다.

BC35NNN 2020년 공개초안의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에 대해 엇갈린견해를 나타내었다. 일부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제안된 공시가 실무적 간편법이 적용된 금융상품의 변동 정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고 말했지만, 다른 이용자들은 기업이 의미있는 정보를 위해충분히 상세하게 공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특히, 그들은 그러한 공시가 정보가 유용하지 않을 정도의 통합 수준에서 요약될 위험을 우려하였다. 또한 기업이 IFRS 9 문단 5.4.7의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을 어떻게 충족하였는지 설명하는 요구사항을 재무제표에 공시하는 문제가 아니라 감사나규제 집행에 해당하는 문제로 간주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을 IFRS 7의 최종 개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BC35OOO 202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비교표시되는 기간, 즉 이 개정의 최초 적용일보다 앞선 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IFRS 7 문단 24I와 24J를 적용해야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IASB는 IFRS 9, IAS 39, IFRS 4, IFRS 16의 2단계 개정의 경과규정에 따라 기업이이 개정의 적용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그러나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는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기업이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다면 IFRS 7 문단 24I와 24J를 과거 보고기간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

#### 그 밖의 공시: 회계정책

IAS 1 개정(IAS 1 문단 BC76H~BC76AB 참조)

BC35ZA 2021년 2월에 IASB는 기업이 유의적인 회계정책 대신에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기 위하여 IAS 1을 개정하였다.

BC35ZB IAS 1 개정의 일환으로, IASB는 IAS 1 문단 117에서 무엇이 회계 정책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기술('측정기준'에 대한 언급을 포함)을 삭제하였다. IASB는 금융상품의 경우,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준에 대한 정보가 기업의 재무제표에 중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어떤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하다고 평가될 수있는지를 기술하는 '측정기준'에 대한 문단 21의 언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그 밖의 공시: 공정가치(문단 25~30)<sup>8)</sup>

BC36 많은 기업이 전반적인 재무상태를 판단하고 개별 금융상품에 대해 의사결정할 때 공정가치 정보를 내부적으로 사용한다. 많은 경우 공정가치 정보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금융시장의 판단을 반영하므로 재무제표이용자의 많은 의사결정에도 목적 적합하다. 공정가치 정보는 금융상품을 왜 보유하는지 그리고 언제 누가 발행하거나 취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특성이 같은 금융상품 간 비교를가능하게 한다. 공정가치는 금융자산의 매매 또는 보유와 관련된의사결정과 금융부채의 발생, 유지, 소멸에 관한 의사결정의 결과를 보여주어 경영진의 수탁책임을 평가하는 중립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IASB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대차대조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이용자가 일관된 기준으로기업을 비교할 때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보충적 공시로 공정가치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sup>8) 2011</sup>년 5월에 공표한 IFRS 13에서는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측정 규정과 공정가치 측정 치에 관한 정보의 공시 규정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IFRS 7의 문단 27~27B을 삭제하였다.

BC37 공시가격이 없는 지분상품<sup>9</sup>과 이러한 지분상품에 연계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없다<sup>10)</sup>면 요구하지 않는다. 이와 비슷하게, IFRS 4<sup>111)</sup>에서는 보험계약에 관한 IASB 과제의 제2단계가 완료될 때까지 임의배당요소가있는 보험계약에 요구하는 회계처리를 특정하지 않는다. 따라서이러한 요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 공정가치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 적시성 및 원가의 제한 속에서도 충분히 신뢰성 있게 공정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따라서 IASB는 금융자산 또는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정보를 공시하는 규정에서 그 밖의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BC38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공정가치 추정치의 잠재적 변동성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IASB는 사용한 평가기법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 평가 가정들에 대한 공정가치 추정치의 민감도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결론을 내릴 때, IASB는 민감도의 공시가, 특히 공시에 적용하는 가정의 수가 많고 이러한 가정들이 상호의존적인 경우에 어려울 수 있다는 관점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공정가치 추정치가 유의적으로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가정만 상세한 양적 공시를 요구할 뿐, 모든 가정들에 대한 민감도의 상세한 양적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 공시는 공시할 때 가정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반영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IASB는 이 공시가 어느 한 평가기법으로 결정한 공정가치가 다른 방

<sup>9) 2011</sup>년 5월에 공표한 IFRS 13에서는 수준 1의 투입변수를 동일한 자산 또는 부채의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으로 정의한다. 수준 2의 투입변수는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비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포함한다. 그 결과 IAS 39와 IFRS 9에서는 이러한 지분상품을 '동일한 상품의 활성시장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이 없는 지분상품'으로 언급한다.

<sup>10)</sup> IFRS 9는 지분상품투자에 대하여 측정 요구사항을 변경했다.

<sup>11)</sup> IFRS 17을 개발하면서 IASB는 그러한 금융상품에 대해 공정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은 IFRS 17에 있다.

<sup>12) 2011</sup>년 5월에 공표한 IFRS 13의 결과로 IFRS 7의 문단 27B(5)를 삭제하였다.

법으로 결정한 것보다 신뢰성이 낮음을 의미하는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평가기법들로 추정한 공정가치는 관측 가능한 시 장가격으로 결정한 공정가치보다 주관적이라는 점에 주목하였고 이용자들이 이 주관성의 정도를 평가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BC39 문단 28에서는 거래가격이 IFRS 9문단 B5.4.8<sup>13</sup>에 따라 산정한 금융 상품의 공정가치와 다른 경우에 생기는 차이에 관한 공시를 요구한다. 그 공시들은 2004년 12월의 IAS 39 개정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경과 규정과 최초 인식(Transition and Initial Recognition of Financial Assets and Financial Liabilities)'에서 다룬 문제들과관련이 있다. 그 개정에서는 그러한 최초 차이를 후속 기간에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를 특정하지 않는다. 문단 28에서 요구하는 이 공시는 이용자들에게 미래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손익의 금액을 알려준다. IASB는 영향을 받는 기업이 이러한 공시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점에 주목하였다.

BC39A 미국 FASB가 공표한 SFAS 157 '공정가치 측정(Fair Value Measurements)'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세 가지 수준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기초한 공시를 요구한다. 일부 재무제표이용자는 IFRS 7에 이와 비슷한 공시 규정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정가치 측정치 투입변수의 상대적신뢰성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 것을 IASB에 요구하였다. IASB는 이러한 서열체계로 IFRS와 US GAAP의 합치가 증진될뿐만 아니라 공정가치 측정치의 영향에 대한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B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기초하여 금융상품의 공시를 요구하도록 결정하였다. 14)

<sup>13) 2011</sup>년 5월에 공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 측정의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이 IFRS를 공표함으로써 IFRS 9 문단 5.4.8을 삭제했다. 그러나 2014년에 상각후원가 측정과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IFRS 9 제5.4절과 제5.5절에 추가하였다. 상각후원가 측정과 관련된 요구사항은 현재 IFRS 9 문단 B5.4.8에 현재 포함되어 있다.

<sup>14) 2011</sup>년 5월에 공표한 IFRS 13에서는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되는 가치평가기법에서 사용된 투입변수와

BC39B IASB는 공정가치 측정 과제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측정을 위한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제안하지 않고 공시에 대한 공정가치 서열체계만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시를 위한 공정가치 서열체계만 SFAS 157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와 같지만 공정가치 측정 과제가 완료될 때까지는 IFRS의 용어를 사용한다. 비록 IFRS 9에 내재된 측정을 위한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SFAS 157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와 다르지만, IASB는 SFAS 157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와 같은 세 가지 수준의 공시를 위한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BC39C IASB는 IFRS 9에 다음 세 가지 수준의 서열체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았다.

- (1)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는 금융상품
- (2) 같은(즉 수정하거나 재구성하지 아니한) 금융상품의 관측 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와 비교하여 공정가치가 입증되거나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만을 변수로 이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 기초하여 공정가치가 결정되는 금융상품
- (3) 같은(수정하거나 재구성하지 아니한) 금융상품의 관측 가능한 현행 시장거래가격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가정에 기초하고, 구 할 수 있고 관측 가능한 시장 자료에 기초하지 않는, 가치평가 기법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공정가치가 결 정되는 금융상품

BC39D 예를 들면 IASB는 IFRS 9의 문단 B5.4.3~B5.4.5에 따라 측정 목적으로는 활성시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일부 금융상품이 공시 목적으로는 수준 2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또 공시 목적으로는 수준 2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IFRS 9의 문단 B5.4.9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손익도 인식하지 않게 될 수 있다.<sup>15)</sup>

관련된 공시를 위한 세 가지 수준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포함한다.

<sup>15) 2011</sup>년 5월에 공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 측정의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그 기준서를 공표함으로써 IFRS 9 문단 B5.4.3~B5.4.5를 삭제했고 문단 B.5.4.9를 B5.1.2A와 B5.2.2A로 재배치하였다. 그러나 2014년에 상 각후원가 측정과 손상에 대한 규정을 제5.4절과 제5.5절에 추가하였다. 상각후원가 측정과 관련된 규정은 현재 IFRS 9 문단 B5.4.3~B5.4.5, B5.4.9에 포함되어 있다.

BC39E 공정가치 공시 서열체계의 도입은 다른 기준서의 측정 규정이나 인식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히, IASB는 (IFRS 9의 문단 B5.4.8<sup>16)</sup>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금융상품 최초 인식시점의 손익 인식이 공정가치 공시 서열체계로 인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BC39F IASB는 공정가치 측정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상 수준 3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에는 추가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sup>17)</sup> 이러한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가장 주관적인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공정가치 측정치의 영향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다.

BC39G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검토한 후, IASB는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대해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별 공시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자산과 부채의 각 종류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을 비교할 수 있는 공정가치 공시 방식과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데 적용된 방법 및 가정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는 IFRS 7의 문단 25와 27이 유지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18)

BC39H 2024년 7월에 IASB는 IFRS 7 실무적용지침 문단 IG14를 개정한 'IFRS 연차개선 Volume 11'을 공표하였다. 이해관계자들은 IFRS 7 문단 28의 문구와, 문단 28의 일부 공시 요구사항을 설명하는 문단 IG14 간의 불일치에 대해 IASB에 알려주었다. IASB는 2011년 5월에 IFRS 13을 발표할 때 해당 문단의 문구를 IFRS 13에서 사용된 문구 및 개념과 일치시키기 위해 IFRS 7의 문단 28을 개정했지만, 문단 IG14는 개정하지 않았다. 연차개선을 통해 문단 IG14를 수정함으로써 해당 문단의 문구가 IFRS 7 문단 28의 요구사항과 IFRS 9, IFRS 13의 문구 및 개념과 일관되게 되었다. 또한이 개정은 문단 IG14 사례의 문구의 일관성을 개선하였다.

<sup>16) 2011</sup>년 5월에 공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 측정의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그 기준서를 공표함으로써 IFRS 9 문단 B5.4.8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2014년에 상각후원가 측정과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IFRS 9 제5.4 절과 제5.5절에 추가하였다. 상각후원가 측정과 관련된 요구사항은 현재 IFRS 9 문단 B5.4.8에 포함되어 있다.

<sup>17) 2011</sup>년 5월에 공표한 IFRS 13에서는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그 결과로 IFRS 7의 문단 27~27B를 삭제하였다.

<sup>18) 2011</sup>년 5월에 공표한 IFRS 13에 따라 IFRS 7의 문단 27을 삭제하였다.

#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에 관한 공시 (문단 31~42와 B6~B28)

- BC40 IASB는 기업이 노출되어 있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과 같이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과 이러한 위험을 식별하고 측정하며 감독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한 기법들에 관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가치 있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정보의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IASB는 다음 두 가지 목적의 균형을 맞추기로 결정하였다.
  - (1) 이용자가 기업들이 노출된 위험에 대해 비교 가능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기업이 일관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2) 기업이 금융상품을 사용하는 정도와 이와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는 정도에 따라 공시를 제공하여야 한다. 금융상품이 많고이와 관련된 위험에 많이 노출된 기업은 그 위험을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공시를 더 많이 제공하여야 한다.이와 반대로, 금융상품과 이와 관련된 위험이 거의 없는 기업은 공시를 더 적게 제공할 수 있다.
- BC41 IASB는 모든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과 최소한의 규정을 정하는 기준서를 개발하고 이 기준서의 실무적용에 관한 지침을 보충함으로써 이 두 가지 목적의 균형을 맞추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33~42의 규정들은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에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 경영진이 이러한 위험을 판단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질적 공시와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중요한 위험에 관한 양적 공시를 결합하였다. 공시의 정도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에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 기준서의 실무적용에 관한 지침에서는 기업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방법을 예시하고 있다. 이지침은 바젤위원회(Basel Committee)에서 개발한 은행의 공시 규정[필라 3(Pillar 3)으로 알려진 규정]과 일관되므로, 은행은 금융위험에 관한 하나의 통합된 공시를 작성하고, 이용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BC42 IASB는 기업마다 위험을 판단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기업이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기초한 공시는 기업 간에 비교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을 제한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시로는 기업이 부담하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거의 또는 전혀 전달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IASB는 모든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위험 익스포저에 관한 공시를 특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여러 기업 간 위험 익스포저를 비교할 때 공통 기준을 제공하며, 기업들이 해당 공시를 작성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발전된 위험관리 시스템을 보유한 기업들은 더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질적 공시와 양적 공시의 상호작용(문단 32A)

BC42A IASB는 2010년 5월에 공표한 IFRS 연차 개선에서,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에 대한 질적 공시와 양적 공시 사이에 의도된 상호작용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다루었다. IASB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에 대한 질적 공시와 양적 공시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이용자들이 관련 공시를 연계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라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IASB는 질적 공시와 양적 공시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이 이용자들이 기업의 위험 익스포저를 더 잘 평가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공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을 공시하는 위치(문단 B6)

BC43 ED 7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는 다음의 이유로 문단 31~42의 위험에 관한 공시가 재무제표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 (1) 그 정보를 감사하는 것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
- (2) 그 정보는 주관적이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며 경영진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정보와는 다르다. 따라서 해당 정보는 비교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 완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 (3) 이러한 정보를 재무제표가 아닌 경영진 설명서에 포함하는 것은 미국을 포함한 그 밖의 국가들의 실무 관행과 일관된다. 이러한 정보를 재무제표에 포함하면 IFRS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자는 미국의 재무제표 작성자와 비교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다.
- BC44 의견제출자들은 특히 민감도 분석의 공시를 재무제표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재무제표에 있는 정보에서 예상되는 신뢰도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수 없고 민감도 분석의 주관성과 선택할 수 있는 가정치가 재무제표에 인식된 공정가치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 BC45 IASB는 이러한 공시가 재무제표 외에 경영진이 제공하는 정보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비록 의견제출자들이 이러한 공시를 재무제표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ED 7에서 제안한 공시를 유용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의 견해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에 관한 공시가 없으면 재무제표가 불완전하고 잠재적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공시는 재무제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IASB는 투명성을 높이면 기업이 불리해 진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투자자에게 더욱 큰 확신을 주어 기업의 자본원가를 낮추는 유의적인 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 BC46 IASB는 일부 기업이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재무제표를 구성하지는 않는 경영진 설명서나 위험보고서와 같은 자료와 함

께 제공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일부 기업은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비슷한 정보를 별도 보고서로 제공하도록 감독기관에서 요구받을 수 있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공시를 재무제표에서 제공하거나, 재무제표이용자가 재무제표와 같은 조건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와 서로참조하는 별도의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양적 공시(문단 34~42와 B7~B28)

## 기업이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기초한 정보(문단 34와 B7)

BC47 IASB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에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에 대해 공시를 요구하여야 하고 이러한 공시는 위험을 판단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즉 이사회나 최고경영자 등의 주요 경영진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기업이 위험을 판단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 (2) 경영진이 사용하지 않는 가정 및 방법에 기초한 정보에 비하여 더 예측가치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예를 들면 불리한 상황에 기업이 대처하는 능력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
- (3) 위험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의 변경과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다.
- (4) 위험관리에 사용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 작성 자에게 실무적으로 유리하다.
- (5) 국제회계기준 제14호(IAS 14) '부문보고(Segment Reporting)'<sup>19</sup>에 서 사용한 접근법과 일관된다.

<sup>19) 2006</sup>년에 IAS 14는 IFRS 8로 대체되었다.

BC47A IASB는 2010년 5월에 공표한 연차 개선에서 IFRS 7 문단 34(2)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였다. IASB는 이러한 언급이 IASB의 의도와는 다르게, IFRS 7의 공시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요구됨을 암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평균에 대한 정보

BC48 IASB는 기중의 평균 위험 익스포저에 대해 양적 정보를 요구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평균 정보는 보고일의 위험익스포저가 기중의 전형적인 익스포저와 다른 경우에 더욱 유익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평균 정보도 작성하기는 더욱 부담이 된다. IASB는 이를 모두 고려하여, 모든 경우에 보고기간 말 현재 익스포저의 공시를 요구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제공되는 정보가기중의 위험 익스포저를 적절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에만 추가 정보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 신용위험(문단 36~38, B9와 B10)

#### 공시 목적

BC48A 이 기준서에서 손상공시 요구사항을 개발하면서 IASB는 특히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손상모형에 따라 생기는 재무제표이용자의추가 정보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 공시사항을 보완하기로 하였다. 목적 적합한 경우 IASB는 최초의 공개초안 '금융상품: 상각후원가와 손상(Financial Instruments: Amortised Cost and Impairment)(2009년 공개초안 '손상')과 보충문서 '금융상품: 손상)(Financial Instruments: Impairment) 중 IASB만을 위한 부록에서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에 대해 받은 의견을 고려했다.

BC48B 기대신용손실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동안, IASB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하기 위해 시도하는 어떤 접근법도 측정의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고 경영진의 판단과 사용된 정보의 질을 더 많이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인지하였다.

BC48C 그러나, IASB는 기업이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이러한 수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을 예측할 수있게 하는 정보가 유용하고 목적 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따라서 IASB는 공시 요구사항을 위한 세 가지 목적을 식별하였고 이기준서에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을 이해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적, 양적 공시 모두를 요구한다.

- (1) 기업의 신용위험 관리실무와 이러한 실무가 기대신용손실의 인식과 측정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측정한 기대신용손실에서 생기는 재무제표상 금액(기대신용손실의 추정치의 변동과 그 변동의 이유를 포함)
- (3) 보고기간 말의 유의적인 신용위험 집중도를 포함한 기업의 신용위험 특성(기업의 금융상품에 내재된 신용위험)

#### 신용위험 관리실무

BC48D 기업이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도록 요구하게 되면 예측의 중요성과 기업의 판단의 사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IFRS 9은 IAS 39와 비교해 볼 때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기업이 새로운 유형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기 위하여 기업이 사용한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도움이 된다.

BC48E 2013년 공개초안 '금융상품: 기대신용손실(Financial Instruments: Expected Credit Losses,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 포함된 제안을 개발할 때, IASB는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가정, 정보에 대한 공시는 2009년 공개초안 '손상' 이후 여전히 공

시에서 핵심부분이며 기업이 기대신용손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다른 기업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만 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른 정보와 평가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기업이 사용한 정보와 기법은 금융상품의 특성과 그 밖의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BC48F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이를 인지하고 허용하였다. IASB는 기업이 제안된 기대신용손실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정보가 목적 적합하고 유용하다고 보았다.

- (1)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하고 식별하는 방법
- (2) 채무불이행을 정의한 방법과 그 정의를 선택한 이유
- (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인지를 기업이 평가하는 방법
- (4) 적용된 제각정책

BC48G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의 응답자는 양적 정보의 공시를 지지하였으며, 일부 응답자는 금융상품의 변경과 기대신용손실의 추정에 거시경제의 정보가 포함된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질적 정보의 공시를 요청하였다.

BC48H IFRS 9 문단 BC5.25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채무불이행의 개념은 손상모형의 적용에 핵심이며, 이는 특히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해야 하는 모집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IASB는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의 재심의 기간에 채무불이행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질적 요소에 근거하여 판단이 폭넓게 필요한 정의에서부터 지급이 되지 않은 것에만 중점을 두어 판단이 필요하지 않는 좁은 범위까지 다양하다. 또 적절한 정의는 금융상품의 특성에 의존하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여 IASB는 기업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정의와 그 정의를 선택한 이유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BC48I IASB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과도한 원가와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도록 하는 IFRS 9의 요구사항에 비추어 볼 때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거시경제 정보를 포함한 미래전망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합리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또 IASB는 기업이 금융자산의계약상 현금흐름 변경에 IFRS 9 문단 5.5.12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변경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시점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다고 보지 않을 정도로 개선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포함)이 기업이 변경과 재조정을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수 있다고보았다.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기업이 제각하였지만 여전히 회수활 BC48I 동(enforcement activity)을 진행 중인 금융자산의 명목금액을 공 시하도록 제안했다. 이용자는 제각된 자산의 회수가 가능한 정도 를 알고자 한다는 재무제표이용자의 의견 때문에 이를 포함하였 다. IASB는 이러한 요구를 인지하였으나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 각되었지만 여전히 회수활동 중에 있는 금융자산의 금액을 합친 공시는 가장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 예를 들면 미회수액을 회수할 전망은 극히 낮더라도 명목금액 은 매우 클 수 있다(특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산에 법적으로 이자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뿐만 아니라 IASB는 연장된 기간에 이러한 금액을 추적하는 것은 운영상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 을 작성자로부터 받았다. 그 결과 IASB는 공시를 변경하기로 결 정하였고 기업이 기간에 제각한 금융자산의 금액을 공시하고 이 전에 제각하였지만 여전히 회수활동 중에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서술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BC48K IASB는 양적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서술적 공시를 제안했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재무제표이용자는 기대신용손실 추정의 변동에 대한 질적 설명으로 추가적인 효익을 얻을 수 있다. 기대 신용손실의 추정은, 예를 들면 금융상품의 규모의 변동, 전체적 시장상황의 변동, 유의적인 사건(예: 국가채무위기, 날씨와 관련된 사건이나 그 밖의 재난)의 결과 때문에 변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공시는 유의적인 사건이 기업의 기대신용손실의 추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술하는 질적인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개별 기준으로 평가하는 금융상품

BC48L 이전에 IFRS 7 문단 37(2)는 보고기간 말 현재 개별적으로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한 금융상품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였다(그러한 금융상품의 신용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판단할 때 기업이 고려할 요소의 분석을 포함한다). 이미 많은 기업은 집합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평가한 대출 잔액과 손실충당금을 공시하고 있다. 따라서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기업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인식을 위해 기업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융상품에 한정하도록 하는 개정을 제안하였다.

BC48M 외부의견수집 활동 중에 재무제표이용자는 특히 개별적 평가가 신용위험의 증가와 금융상품의 밀착 관리 때문인 경우 어떤 금융 자산을 개별기준으로 평가하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집합기준으로 평가한 것 보다 신용위험이 더 많이 증가하지 않았을 수 도 있지만, IASB는 이 구분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이 신용위험을 관찰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신용위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BC48N 그러나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 대한 일부의 응답자는 개별 기준으로 평가하는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그리고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손살충당금으로 인식한 금액)의 공시는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손실모형에는 목적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응답자들은 IAS 39와는 달리 손실충당금은 개별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 증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BC48O IASB는 개념적으로 개별기준 또는 집합기준의 평가가 같은 결과 가 나와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FRS 9 문단 B5.5.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은 금융자산이 연체가 되기 전에는 개별기준으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는지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 더구나 기업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데 집합기준으로만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므로 IASB는 기업이 금융상품을 집합으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대신용손실에서 생기는 금액

총 장부금액과 손실충당금의 조정

BC48P '보충문서'에서 신용손실에 대해 의무적으로 손실충당금 계정을 사용할 것과 기업이 손실충당금을 산정할 목적으로 구분한 금융 자산의 두 집합[예: 우량 집합(good book)에 포함된 자산과 부실 집합(bad book)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조정을 별도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거의 모든 응답자는 의무적으로 손실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따라서 2013년 공개 초안 '손상'에서 이 제안을 유지하였다.

BC48O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은 '보충문서'에서 손실충당금을 산정하는 목적(12개월 기대신용손실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따라 금융 자산을 집합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각 집합별 금융자산의 총 장부 금액과 관련 손실충당금의 조정을 보여주는 제안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응답자(작성자 포함)는 일반적으로 손실충당금 변동의 조 정(흐름 정보)을 공시하는 것을 지지하였고 이는 적용할 수 있고 유용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보충문서에서 받은 외부의견과 비슷 하게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 대한 응답자는 금융자산의 총 장 부금액의 조정을 별도로 보여 주는 것은 부담이 되며, 특히 손실 충당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간의 변동의 영향을 공시하도 록 요구할 때 더 부담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그들은 손실충당금을 집합기준으로 산정할 때 기업은 개별금융자산으로 손실충당금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작성자는 이러한 공시와 흐름 정보와 관련된 비용은 상당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개방형 포 트폴리오에 대해 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은 개별 금융상 품의 신용위험 변동을 추적해야하며 신규 대출, 제거된 자산, 12 개월 손실충당금과 전체기간 손실충당금간의 변동, 신용손실 추정 의 변동에서 생기는 손실충당금의 변동을 계산해야 한다. 그들은 이러한 정보는 개별 금융자산 기준으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 가를 식별할 수 없더라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도록 요구한 IFRS 9의 요구사항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BC48R

외부의견수집 중에 재무제표이용자는 금융상품의 신용의 질과 기업의 신용위험 관리실무를 이해하는 데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의 변동과 손실충당금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한 요소라는 관점을 일관되고 강하게 표명하였다. 이용자는 금융상품 총 장부금액의 조정은 기업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투명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진다. 이러한 공시에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하고이 정보를 제공하는 비용이 클 수 있지만 IASB는 이러한 조정이

12개월 손실충당금과 전체기간 손실충당금 간의 변동, 기대신용손실의 변동 원인, 규모와 신용의 질의 변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핵심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 주목했다.

BC48S 그러므로 IASB는 손실충당금의 변동의 조정을 제공하는 요구사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의 변동을 조정해야하는 적용상 부담이 있다는 의견의 측면에서 IASB는 조정의 목적은 보고기간에 손실충당금의 변동 원인이 되는 범위에서 총 장부금액의 변동의 핵심 원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변동에 대한 핵심 원인의 예로 보고기간 중 새로운 금융자산의 발행과 매입, 전체기간 손실충당금으로 바뀌게 되는 기존 금융상품의 악화, 금융자산의 제각이 포함될수 있다. 또 IASB는 가장 목적 적합하고 유용한 정보는 손실충당금 측정 범주 간 총 변동을 공시하여 제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또는 금융자산의 유형에 따라 순액기준으로 손실충당금의 변동을 공시하는 것(예를 들면, IFRS 9의 일반적인 접근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매출채권)이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

BC48T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의 기대신용 손실은 재무상태표에서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IASB는 손실충당금을 표시할 수 있는 대응되는 자산이 없기 때문 에 그러한 금융상품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BC48U IASB는 대부분의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해서 기업이 하나의 금융상품(한도약정) 수준에서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해야 하므로실행된 구성요소(금융자산)와 미사용 한도약정요소(대출약정)와 관련된 기대신용손실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 2013년 공개

초안 '손상'의 의견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각 구성요소에 별도로 손실충당금을 표시하기 위해 이러한 구성요소 각각에 기대신용손실을 배분하는 시도는 적절해 보이지 않고 배분하더라도 자의적일 것이다.

BC48V 그러므로 IASB는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기업이 별도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기대신용손실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다면 관련된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손실충당금으로 함께 표시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대출약정이나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액이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관련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나머지 금액은 충당부채로 표시해야 한다.

최초 발생시점이나 매입할 때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BC48W IASB는 최초 인식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과 그렇지 않은 금융자산과의 비교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최초 인식하는 시점에 가격 결정에 반영된 할인되지 않은 기대신용손실을 공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무제표이용자는 그러한 공시로이러한 회계 분야의 복잡성의 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해당 자산에서 기대신용손실에 유리한 변동이 있다면 이용자는 기업이 회수할 수 있는 가능한 계약상 현금흐름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변경

BC48X 손상프로젝트를 통해 재무제표이용자는 현행 공시와 정보가 불충분한 분야는 재조정과 변경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전 세계 금융위기 동안 이용자는 기업이 기업의 금융자산과 관련해서 수행하고 있는 재조정 활동의 범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표명하였다.

BC48Y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 금융자산의 존속기간 중 전체기간 기 대신용손실로 손실충당금을 측정 할 때 변경되고 후속적으로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으로 바뀐 금융자 산의 총 장부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제안했다. 이 제안된 요구사항은 재무제표이용자가 변경된 금융자산으로서 후속적으로 신용의 질이 향상된 금융자산의 금액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한 결과이다. 재심의과정에서 IASB는 작성자에게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개별 금융자산(특히, 정상상태로 회복 된 지 오래되었고 더 이상 신용위험관리목적으로 밀착 관리하지 않는 금융자산)을 추적할 필요성에 대한 적용상 우려가 제기되었 다는 점에 주목했다. IASB는 이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자산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보의 유용성이 줄어 들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므로 IASB는 이전에 한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고 이후 보고기간 중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다시 변경한 금융자산에 이 요구사 항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BC48Z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을 재심의하면서 IASB는 IFRS 9에서 변경지침은 신용이 손상된 자산의 변경이나 신용위험 관리목적상 수행된 변경에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IASB는 이 관점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이 지침의 범위는 변경의 이유에 상관없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모든 변경에 적용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정에서 IASB는 상각후원가 장부금액이 예상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와 같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장부금액은 변경이 발생한 이유에 상관없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동을 반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계약조건의 변동은 그변동이 작다 하더라도 신용위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더구나 IASB는 이전에 신용위험관리를 위해 이루어진 이러한 변경을 식별하는 것이 적용상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전부터 들어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결과적으로 IFRS 7 문단 35J의 공시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모든 변경에 적용한다.

#### 담보와 신용위험감소 공시

BC48AA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은 기업의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면 보다 충분히 담보된대출채권을 보유한 기업은 그 밖의 모든 것이 같더라도 무담보 대출채권을 보유한 기업보다 더 작은 신용손실충당금을 계상할 것이다. IFRS 7 문단 36(2)의 이전 요구사항은 2013 '손상'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것과 비슷한 정보의 공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담보의 공시는 작성하는 데 너무 부담이 되고 비용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받았다. 그래서 최초 인식 이후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금융상품에 대해 양적 담보공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제한하기로 제안하였다.

BC48BB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 대한 의견에서 응답자는 최초 인식 이후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담보에 대한 양적 정보의 공시가여전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IASB는 담보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정보가 유용하다는 관점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IASB는 담보의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뿐만 아니라 IASB는 모든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데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이 어떻게 고려되었는지를 공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신용위험 익스포저

BC48CC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인식은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기초하기 때문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최초 신용위험의 범위가 넓을 수 있다(예: 최초에 신용 위험은 높지만 후속적으로 신용위험이 증가하지 않는 대출의 손실충당금은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에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신용이 높은 대출의 손실충당금과 같이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다). 기대신용손실의 변동과 기업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 익스포

저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2013 공개 초안 '손상'은 12개월 기대신용손실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모 두에 대해 신용위험 범주별로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을 세분화할 것을 제안했다.

BC48DD 신용위험별 세분화는 특정 시점(보고일) 현재의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와 신용위험 특성을 보여준다. 재무제표 이용자는 기업의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신용위험의 범위에 기초한 공시의 상대적 특성에 대해 우려해 왔고 그 결과 비교가능성이 저하(어느 한 기 업의 높은 위험은 다른 기업에게는 중간 정도의 위험에 불과할 수 있음) 될 것이라 점을 지적했다. 더구나 경과기간 정보가 없다 면, 이용자는 위험 프로파일의 변동이 기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 변동의 결과인지 보고기간 중 인식한 신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 의 결과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위험의 세분화 는 여전히 기업의 신용위험의 익스포저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따라 재무제표의 주석에 그 정보를 포함하는 것 을 지지하였다. IASB는 위험의 변동이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영 향을 미치고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이 변동되 는 동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시를 요구하였 다. 또 IASB는 특히 이 정보를 총 장부금액과 손실충당금의 조정 과 함께 고려했을 때 신용위험의 경감과 시간 경과에 따른 대략 적인 신용위험 변동에 대한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다는 점에 주목했다.

BC48EE IASB는 기업에게 이 정보를 내부 신용위험 등급으로 조정하도록 요구하는 공시를 제안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했다. 그러나 '보충문서'에 대한 응답에서 이 내부 위험등급 정보는 기업의 자산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구체화 수준에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IASB는 이 조정을 제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BC48FF 또 2013년 공개초안 '손상'의 일부 응답자는 일부 종류의 자산과 비금융기업의 경우 이러한 공시가 신용위험 관리실무와 맞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고 이 공시는 기업의 내부 신용위험 접근법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의견과 관련해서 IASB는 최소한 세 개의 신용위험등급으로 세분화해서 제공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없애는 대신에 신용위험을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맞추어 세분화하는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추가적으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차입자에게 특정된 정보로 연체정보만을 이용할 경우 금융자산의 연령분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한 간편법

BC48GG 이 기준서는 기업이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해 일반 공시의 면제를 포함한다. IASB는 이 면제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해야 하는 실무적인 우려의 일부를 감소시키기 위해 이러한 범주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손상모형의 적용을 간단히 하려는 의도이며 일관성 있는 경감을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 신용위험에 최대로 노출되는 정도(문단 36(1), B9와 B10)

BC49 문단 36(1)에서는 보고일에 신용위험에 최대로 노출되는 정도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ED 7에 대해 일부 의견제출자는 대여금 포트폴리오에서 식별된 문제가 없고 담보권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공시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다음과 같다.

- (1) 이러한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정도 에 관한 일관성 있는 측정치를 제공한다.
- (2) 이러한 정보는 손실에 최대로 노출되는 정도가 대차대조표에 인식된 금액과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한다.

BC49A IASB는 2010년 5월에 공표한 IFRS 연차 개선에서 문단 36(1)의 공시 규정이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보고기업이 신용위험에 최대로 노출되는 정도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IFRS 7 내의 일관성을 높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에 상당히 가까운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고기술한 문단 29(1)에서 택한 접근법과 일관된다. 또한 IASB는 이러한 자산의 장부금액이, 많은 경우에 신용위험에 최대로 노출되는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규정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해당 자산에 중복적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공시 규정이 재무상태표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신용위험에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BC50 ED 7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공정가치가 신용위험에 대한 미래의 잠재적 익스포저를 항상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파생상품계약의 신용위험 최대 익스포저가 파생상품계약의 장부금 액인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문단 B10(2) 참조). 그러나 IASB는 문단 36(1)에 따라 보고일 현재 신용위험에 최대로 노출되는 정도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는 금액을 공시해야 하는데, 그 금액은 장부금액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 보유하고 있는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문단 36(2)와 37(3))

BC51 ED 7에서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불이행 시 생길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담보 및 그 밖의 신용보강의 공정가치를 공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ED 7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는 원가와 효익을 근거로 이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의견제출자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정가치 정보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1) 담보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은행이 아닌 기업의 경우

- (2) 적시에 모두 상환되는 대여금의 담보 가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대출의 실행 시점에만 수집하는 은행의 경우(예: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모기지 포트폴리오로서 개별 자산을 기준으로 가치 평가를 지속하지 않는 경우)
- (3) 기업이 보유하는 모든 자산에 대한 기업담보(floating charge) 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담보의 경우
- (4) 공정가치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없는 담보를 보유하는 보험자 의 경우
- BC52 IASB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일부 대여금에는 담보를 초과하여 설정하고 다른 대여금에는 담보를 부족하게 설정하는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 담보의 공정가치를 통합하여 공시하면 오해를 일으킬수 있다는 의견제출자들의 우려에도 주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유형 담보의 공정가치 합계와 차입금 합계를 상계하면 신용위험의 금액을 지나치게 적게 보고하게 된다. IASB는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는 신용 익스포저 금액의 합계에서 담보 총액을 차감한 것이 아니고 이용할 수 있는 담보를 고려한 후에 남는 신용익스포저 금액이라는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 BC53 따라서 IASB는 보유한 담보의 공정가치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보유한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에 대한 설명만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그러한 공시가 모든 담보에 공정 가치를 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특히 일부 담보의 공정 가치가 대여금의 장부금액을 초과한다고 판단한 경우), 따라서 공 정가치를 공시하는 것보다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았다.

연체되지도 않고 손상되지도 않은 금융자산의 신용 건전성 (문단 36(3))<sup>20)</sup>

<sup>20)</sup> IFRS 9 '금융상품'에서 IFRS 7 문단 36(3)을 삭제하였다.

BC54 IASB는 신용 건전성에 대한 정보가 자산의 신용위험에 대해 더욱 깊은 통찰력을 주고, 이러한 자산이 미래에 손상되기가 쉬운지 아닌지를 이용자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보는 기업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IASB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그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조건을 재협상한 금융자산(문단 36(4))

BC54A IASB는 2010년 5월에 공표한 IFRS 연차 개선에서 조건을 재협상한 금융자산에 대한 공시 규정과 관련된 실무적 우려를 다루었다. IASB는 금융자산의 조건을 재협상하지 않았더라면, 연체되거나 손상되었을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문단 36(4)를 삭제하였다. IASB는 연체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조건을 재협상한 (그 밖의 상업적 이유는 없는) 금융자산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였다. IASB는 종전 규정을 당기 보고 기간에 조건을 재협상한 금융자산에만 적용하는 것인지 그러한 자산의 과거의 협상도 고려해야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다. 더욱이 IASB는 대여금의 거래 조건이 손상과는 관련 없는 이유로 정기적으로 재협상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무에서는 특히 대규모의 대여금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어떠한 대여금이 연체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조건을 재협상한 것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 연체되거나 손상된 금융자산(문단 37)21)

BC55 IASB는 신용위험이 가장 큰 금융자산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연체되거나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문단 37). 이러한 공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sup>21)</sup> IFRS 9 '금융상품'에서 IFRS 7 문단 37을 삭제하였다.

- (1) 보고일에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매출채권 포함)의 연령분석(문단 37(1)). 이 정보는 손상될 가능성이 높은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미래 손상차손의 정도를 이용자가 추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 (2) 보고일 현재 손상되었다고 개별적으로 판단한 금융자산에 대한 분석. 손상을 판단할 때 고려한 요소를 포함한다(문단 37 (2)). IASB는 연령 외의 요소(예: 거래상대방의 특성, 손상된 자산의 지역 분석)별로 손상된 금융자산을 분석하는 것은 이용자가 손상이 생긴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결론지었다.

BC55A IASB는 2010년 5월에 공표한 IFRS 연차 개선에서 담보의 공정가치 공시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다루었다. 자산의 한 종류 내에서 일부 자산은 초과하여, 다른 자산은 부족하게 담보가 설정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공정가치를 통합하여 공시하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IASB는 담보 및 그 밖의 신용보강의 공정가치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문단 37(3)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자산의 재무영향에 대한 정보가 이용자에게 유용하다고 본다. 따라서 IASB는 보유하고 있는 담보와 신용보강에 대한설명을 공시하고 관련 재무영향을 공시하는 규정을 문단 36(2)에 포함하였다.

# 담보물과 그 밖의 신용보강(문단 38)

BC56 문단 38에서는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그 밖의 신용보강을 요구하여 취득하게 된 자산의 특성 및 장부금액과 이러한 자산의 처분 방침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이러한 정보가 그러한 활동의 빈도에 대한 정보와 담보의 가치를 획득하고 실현하는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결론지었다. ED 7에서는 장부금액이 아니라 취득한 자산의 순공정가치를 공시해야 한

다고 제안하였다. IASB는 처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담보를 획득한 경우에는 이러한 금액이 더 목적 적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금액은 손상 계산에 포함하여 대차대조표에 인식된 금액에 반영될 것이며, 이 공시의 목적은 그러한 자산에 대해 대차대조표에 인식된 금액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BC56A IASB는 2010년 5월에 공표한 IFRS 연차 개선에서 보고일 현재 담보권을 실행하여 취득한 자산의 금액을 공시하도록 한 문단 38을 명확히 하여 IFRS 7 내의 일관성을 높였다. 이것은 보고기간 말 현재기업이 노출되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IFRS 7의 목적과일관된다.

# 유동성위험(34(1), 39, B10A와 B11A~B11F)

BC57 IASB는 금융부채의 남은 계약기간을 보여주는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론지었다(문단 39(1)과 부록B의 문단 B11~B16)22). 유동성위험, 즉 금융부채와 관련된 약정을 이행할 때 어려움에 직면할 위험은,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부채의 상환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긴다. 이러한 가능성은 종종 희박할 수도 있다. IASB는 계약상 가장 이른 만기일에 기초한 공시가 상황이 최악인 시나리오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BC58 일부 의견제출자는 이러한 계약상 만기분석은 부채의 예상 만기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는데, 요구불예금이 많이 있는 은행과 같은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예상 만기가 계약상 만기와 매우 다를 수 있다. 그들은 계약상 만기분석만으로는 정상적

<sup>22) 2009</sup>년 3월에 공표한 IFRS 7 개정에 따라 문단 39와 문단 B11~B16이 개정되었다. 문단 BC57의 참조 문단은 이러한 개정으로 수정되지 않았다.

인 상황에서 예상되는 조건에 대한 정보나 예상 만기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IASB는 계약상 만기분석으로 표현되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BC58A IASB는 2009년 3월에 유동성위험의 특성 및 정도에 대한 공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1) 유동성위험의 정의를 개정하여 문단 39가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자산을 유출하는 금융부채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 개정에 따라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될 금융부채와 IFRS 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로서 비금융자산으로 결제되는 부채에는 이 공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해 진다.
- (2) 문단 34(1)에 따라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유동성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관한 양적 자료의 요약을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IFRS 7의 원칙이 강화된다.
- (3) 문단 39의 계약상 만기분석에 관한 공시 규정을 개정하였다.

BC58B 문단 39(1)과 39(2)의 규정은 문단 34(2)에서 정한 최소한의 표준적 공시와 관련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용하기 쉬울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IASB는 일부 파생금융부채는 남은 계약기간에 기초한 공시를 제공하게 하는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웠고, 이러한 규정을 따르더라도 많은 기업이 그러한 금융상품의 유동성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항상 보여주지는 않았다는 점에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일부 상황에서는 파생금융부채의 계약상만기 정보를 공시하게 하는 종전의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IASB는 비파생금융부채(IFRS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발행된금융보증계약 포함)와 일부 파생금융부채에 대한 최소한의 계약상만기 공시는 유지하였다.

BC58C IASB는 비파생금융부채(IFRS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발행된 금융 보증계약 포함)와 일부 파생금융부채의 경우에는 계약상 만기는 부채와 관련된 현금흐름의 시기를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 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하다. IASB는 이러한 금융부채의 남은 계약기간에 기초한 공시를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BC58D IASB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만기분석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유동성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면 해당 정보를 공시하게 하는, 현행 규정을 강조하였다.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유동성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질적 공시와 양적 공시의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였다.

IASB는 2023년 5월에 발표된 '공급자금융약정'에서 IFRS 7 문단 BC58E B11F의 유동성위험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사례로 공급자금융약정 을 추가하였다. 공급자금융약정은 유동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자금의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자금융약정을 체 결함으로써 부채 중 일부가 다양한 공급자 집합 대신 하나 또는 소수의 금융제공자로 집중될 수 있다. 만약, 급박하게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제공자가 하나 이상의 약정을 철회 하는 경우, 기업의 현금흐름 압박을 증가시키고 만기가 도래할 때 부채 결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급자는 금융위기 상황 에서 고객(기업)과 지급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거나 그럴 의향이 있을 수 있지만, 자본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해야하는 금융제공자 는 지급조건 재협상이 불가능하거나 그럴 의도가 없을 수 있다. 재무제표이용자는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유동성위험 익스포저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해당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가 필요하다. IFRS 7 문단 B11F 개정은 기업 이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유동성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의 중 요성을 강조한다.

# 시장위험(문단 40~42와 B17~B28)

- BC59 IASB는 각 유형별 시장위험에 대한 민감도 분석(문단 40)의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이용자는 민감도 분석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하였다.
  - (2) 민감도 분석은 모든 유형의 시장위험에 대하여 모든 기업이 공시할 수 있고, 이해하고 계산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 (3) 민감도 분석은 비금융기업을 포함하여 금융상품을 보유한 모든 기업에 적합하다. 이는 위험관리 방법의 공시로 보충된다. 따라서 종전에 IAS 32에서 요구하였던 조건의 공시와 이자율 위험의 갭분석(gap analysis)을 포함하는 그 밖의 접근법에 비해 더욱 단순하고 적합한 공시이다.

IASB는 단순한 민감도 분석에서 제공하는 정보로는 기업 간 비교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론과 그에 따라 나온 공시가 기업의특성과 위험관리 시스템의 복잡성에 따라 다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BC60 IASB는 한 가지 변수만의 변동을 보여주는 단순한 민감도 분석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예를 들면, 그 분석은 민감도의 비선형성이나 변수들 간의 상호의존 영향을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 IASB는 민감도 분석이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공시를 요구함으로써 첫 번째 우려에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문단 42). IASB는 위험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는, 더 복잡한 민감도 분석을 요구함으로써 두 번째 우려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한 분석은 더욱 유용한정보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수행하기가 더 복잡하고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따라서 IASB는 이 분석을 요구하지 않고, 경영진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이 분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 분석의 공시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BC61 ED 7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최대손실예상액(Value at risk: VaR) 은 당기손익이나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초로 관리하는 기업들은 단지 이러한 공시 목적으로 별도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IASB의 목적은 민감도 공시를 요구하는 것이었지 특정한 형식으로 민감도 분석을 공시하도록 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IASB는 대체 방법으로 민감도를 공시한다면 당기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BC62 ED 7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민감도 분석에 관한 지침을 보다 많이 제공하고, 민감도 분석에 대해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지침과 명확화를 요청하였다.
  - (1) 관련 위험변수에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변동이란 무엇인가?
  - (2) 공시에서 알맞은 통합 수준이란 무엇인가?
  - (3)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 BC63 IASB는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때 사용되는 방법론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IASB는예를 들면 수익률 곡선이 100 베이시스 포인트만큼 평행으로 이동한 영향을 공시하는 경우와 같이 투입변수, 절차, 방법론에 대해 특정한 요구를 하면 더 비교 가능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특정한 요구사항에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자율과 같은 관련 위험변수가 어느 한 경제환경에서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변동이지만, 인플레이션율이높은 경제와 같은 다른 경제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변동의 영향은 기업의위험 익스포저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그 변동들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BC64 그러나 IASB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변동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방법과 공시를 통합하는 알맞은 수준에 대해 개략적인 적용지침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ED 7에 대해 접수된 외부검토의견에 따라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 (1) 기업은 유의적으로 다른 경제환경에서 생기는 위험에 대한 중 요한 익스포저에 관한 정보를 통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 업이 하나의 경제 환경에서 한 가지 유형의 시장위험에만 노 출된 경우에는 세분화된 정보를 보여주지 않을 수 있다.
  - (2) 민감도 분석에서는 관련 위험변수가 달라졌다면 당기손익이 어떻게 되었을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민감도 분석은 목적 적합한 위험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변동이 대차대 조표일에 존재하는 위험 익스포저에 적용된다면 당기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 (3)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변동은 기업이 영업하는 경제 환경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하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상황이 최악인' 시나리오나 '위기상황분석'을 포함하지 않는다.
  - (4) 기업은 목적 적합한 위험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모든 변동의 영향이 아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변동 범위의 한계에서 변동의 영향만을 공시해야 한다.
  - (5)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변동을 판단하는 기간은 다음 공시 전까지이며 통상적으로 다음 연차 보고기간이 된다.

IASB는 민감도 분석의 공시 방법에 대한 간단한 사례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 운영위험

BC65 IASB는 운영위험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IASB는 운영위험의 정의와 측정이 초기 단계에 있고 금융상품과 반드시 관련되지는 않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IASB는 이러한 공시는 재무제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더 적절하게 제공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 문제를 경영진 설명서에 관한 연구과제에 미루기로 결정하였다.

배경

BC65A IFRS와 US GAAP의 제거(derecognition) 규정 개선과 합치를 이루기 위한 IASB와 FASB의 양해각서에 따라, 2009년 3월에 IASB는 IAS 39<sup>23)</sup>의 제거 규정을 대체하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양도와 관련한 IFRS 7의 공시 규정을 개선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공개초안에 대해 접수된 의견에 따라 IASB는 공개초안에서 기술한 대안 모형을 보다 완전하게 개발하고, IASB와 FASB는 이대안 모형을 논의하였다.

BC65B 2010년 5월에 IASB와 FASB는 다음의 관점에서 제거 과제의 전략 과 계획을 다시 고려하였다.

- (1) 공개초안에서 기술한 대안 제거모형의 공동 논의
- (2) FASB가 2009년 6월에 발표한 US GAAP의 제거 지침 개정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제거와 관련된 규정을 개선하여 IFRS 와 US GAAP의 차이를 줄인 점
- (3) IASB가 받은 각국 회계기준제정기구의 의견 중 금융위기 동안 IFRS 제거 규정으로 대체적으로 유리한 효과가 있었다는 의견

BC65C 그 결과로 2010년 6월에 IASB와 FASB는 다른 기업에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IFRS와 US GAAP의 공시 규정을 개선하고 일치하도록 하여 두 기준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단기적 우선 순위라는 데 합의하였다. 또 IASB와 FASB는 IFRS와 US GAAP을 개선하거나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추가 노력의 특성과 방향을 판단하는 기초로서, FASB의 최근 개정 규정 중 일부에 대한 기준서 적용 후 검토(post-implementation review)를 포함하는 추가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sup>23)</sup>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 BC65D 그 결과로 IASB는 공개초안에서 제안하였던 제거에 대한 공시와 관련 목적을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IASB는 2010년 10월에 '금융자산 양도에 관한 공시(IFRS 7 개정)'를 공표하여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다음을 도와 주는 공시를 요구하였다.
  - (1)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과 관련 부채의 관계의 이해
  - (2) 제거된 금융자산의 특성과 이에 대한 양도자의 지속적 관여와 관련된 위험의 평가

####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

BC65E 금융자산이 양도되지만 제거되지 않을 때에는, 교환 거래가 있었지만 회계 규정의 결과로 그 교환 거래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IASB는 그 상황에서 재무제표이용자는 양도자가 인식하는 양도 금융자산과 관련 부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양도자가 필요한 현금흐름과 양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때 도움이 된다.

BC65F IASB는 IFRS 7에서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았다. IASB는 그 공시가 제거되지 않은 양도 금융자산과 관련 부채의 관계를 이해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공시를 계속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BC65G 그러나 IASB는 다음과 같은 추가 공시도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 (1) 양도자산과 관련 부채 간 관계의 특성에 대한 질적 설명(양도 로 생기는 보고실체의 양도자산 사용 제약을 포함)
- (2) 관련 부채의 거래상대방이 양도자산에 한정하여 소구권을 가 진 경우에는 양도자산, 관련 부채, 순포지션의 공정가치를 보 여주는 명세

BC65H IASB는 이러한 공시가 기업의 자산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효익을 (자산이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것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제한없이 사용할 수 없는 정도를 평가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이러한 공시는 양도자산에서 받는 수익금으로 전부 결제될 부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거래상대방이 일반적으로 양도자의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부채를 식별해 준다. IASB는 기초가 된 현금흐름을 관련된 부채를 갚기 위해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 금융자산, 관련 부채, 순포지션의 공정가치를 보여주는 명세(그러한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 관계를 보여주는 정보에 추가된 정보)도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양도거래에 따른 양도자의 순익스포저를 이해하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 전체가 제거된 양도 금융자산

- BC65I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와 감독기구 등에게서 종종 '부외거래'라고 불리는 활동에 대한 공시 규정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금 융자산의 양도, 특히 금융자산의 증권화는 그러한 활동의 일부로 식별되었다.
- BC65J IASB는 양도자가 제거된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이용자는 양도자가 여전히 노출된 위험에 대한 정보에서 효익을 얻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한 정보는 양도자의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을 평가할 때 목적 적합하다.
- BC65K IASB는 IFRS 7에서 이미 금융상품 종류별 또는 위험 유형별로 일부 공시를 요구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해당 정보를 통합된 수준에서 요구하므로 제거 거래에 특정된 정보를 종종 구할 수 없다. IASB는 이용자 등의 요청에 따라, 제거 거래에 특정된 공시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BC65L IASB는 공시가 양도자의 위험 익스포저에 집중해야 하며, 수익의 시기와 제거된 금융자산을 미래에 재매입하기 위하여 요구되거나 요구될 수 있는 현금유출의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자산 재매입 행사가격이나 재매입가격, 지속적 관여의 공정가치, 손실에 최대로 노출되는 금액과 재무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양도자의 의무에 대한 질적 정보를 결합한 공시가 양도자의 위험 익스포저를 이해할 때 목적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BC65M 또 IASB는 양도자의 제거 손익과 그러한 손익의 인식시기에 대한 정보는 양도자가 양도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당기손익의 비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 정보는 일정한 형태의 지속적 관여와 이로 인한 위험 익스포저가 유지되는 금융자산 양도에서 당기손익이 발생하는 정도를 평가할 때 유용하다.

BC65N IASB는 (제거조건을 충족하는) 양도의 대가 총액이 그 행위가 일어난 보고기간에 균등하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예: 양도 행위의 총 금액 중 많은 액수가 보고기간 종료일에 생기는 경우)고 보았다. IASB는 양도 행위가 보고기간 말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공시하면 양도거래가 지속적인 상업적 또는 재무적목적보다는 재무상태표의 외양을 바꿀 목적으로 행해지는지를 보여준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 개정에 따라 해당 보고기간 중 언제 가장 많은 양도 행위가 일어났는지, 그 양도 행위로인식된 금액은 얼마인지와 대가 총액은 얼마인지를 공시해야 한다.

### 관리용역계약에 대한 공시규정의 적용

BC65O IFRS 7 문단 42A~42H에 따르면 양도자는 해당 양도거래의 발생시기와 무관하게 보고일에 존재하는, 전체가 제거되지 않은 양도된 모든 금융자산 및 전체가 제거된 양도된 자산에 남아 있는 지속적관여에 대해 공시하여야 한다.

BC65P

IASB는 IFRS 7 문단 42E~42H의 공시규정을 적용하는 목적 상관리용역 계약이 지속적관여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받았다. 제기된 질문은 IFRS 7 문단 42C(3)에 따라 관리용역 계약이 이 공시규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지였다.

BC65O

IASB는 IFRS 7 문단 42C(3)에서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 할 계약상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해당 현금흐름을 하나 이상의 기업에게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IFRS 9 문단 3.2.5 (1)~(3)의 조건('이체 약정(pass-through arrangement)'<sup>24</sup>)을 충족하는 약 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았다. IFRS 7 문단 42C(3)은 이체(pass through)를 위해 회수된 현금흐름은 그 자체로는 양도공시 규 정의 목적 상 지속적관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했다. 결론 적으로 IASB는 양도된 금융자산에서 수취한 현금흐름을 하나 이상의 기업에게 이체해야 하는 관리용역 제공자의 의무는 그 자체가 공시규정의 목적 상 지속적관여가 아니라고 보았으며, 이는 현금흐름을 이체하는 활동은 그 자체로는 양도된 금융자 산의 미래성과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는 대부분의 경우 관리용역 제공자는 계약의 결과로 양도 된 금융자산의 미래성과에 대한 지분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 으로 관리용역 계약이 공시규정 목적 상 지속적관여에 해당한 다고 보았다. 관리용역 수수료의 수취 금액 및(또는) 수취 시기 가 양도된 자산의 현금흐름의 수취 금액 및(또는) 수취 시기에 따라 결정된다면 이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이는 관리용역 제 공자가 관리용역 수수료를 받는 방법(즉, 관리용역 제공자가 양도된 금융자산에서 수취하는 현금흐름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 는지 또는 수취한 모든 현금흐름을 이체하고 양수인이나 다른 기업에게서 수수료를 별도로 받는지)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BC65R

이러한 검토에 근거해서 IASB는 관리용역 계약으로 양도 공시 규정의 목적 상 지속적관여가 발생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IFRS 7 문단 42C와 B30을 고려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 는 IFRS 7 문단 42C의 지침을 관리용역 계약에 적용하는 방 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IFRS 7의 적용지침에 지침을 추가하기

<sup>24)</sup> IFRS 9가 적용되기 전이라면 해당 참조는 IAS 39 문단 20(3)나와 문단 30을 의미한다.

로 결정하였다.

BC65S

이 회계논제를 논의하는 동안 IASB는 IFRS 7 문단 42E~42H에 있는 공시규정을 적용하는 목적 상 IFRS 7 문단 42C에 설명된 지속적관여가 IFRS 9 문단 3.2.6(3)(나)와 3.2.16<sup>25)</sup>에서 사용된 의미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이 논점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두 기준서의 지속적관여에 대한 설명에서 이미 이러한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시행일과 경과 규정(문단 43-44A)

BC66 IASB는 많은 기업이 IFRS를 최초로 채택할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에는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기준서의 '안정적인 회계기준체계(stable platform)'의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 또일부 작성자들은 IFRS를 따르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변경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IFRS 7의 시행일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가 되어야 하며 조기적용을 권장하기로 결정하였다.

BC67 IASB는 IFRS 7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만 IFRS 7을 적용하는 기업들이 비교 정보를 작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보았다. 이 결론은 IFRS 7을 조기 적용하는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IFRS를 채택할 때 자국의 회계기준에서 IAS 32와 IAS 30으로 변경하고 1년이나 2년 후에 다시 IFRS 7로 변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05년에 IFRS를 최초 채택할 때, IFRS 7을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는 그 시간이 극히 짧을 것이다. 따라서 IASB는 (1) IFRS 최초채택기업이면서 (2) 2006년 1월 1일 전에 IFRS 7을 적용하는 기업에는 IFRS 7을 적용하는 최초 연도에 비교 정보의 공시를 면제하였다. IASB는 최초채택기업들에 대한 이러한 면제는 IAS 32와 IFRS 4에도 존재하며 이 면제 규정을 제공하는 이유

<sup>25)</sup> IFRS 9가 적용되기 전이라면 해당 참조는 IAS 39 문단 20(3)나와 문단 30을 의미한다.

가 IFRS 7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다.

BC68 IASB는 이미 IFRS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IFRS 7을 조기 적용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 비교 정보의 공시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것인지도 고려하였다.

BC69 IASB는 IFRS 7이 두 가지 유형의 공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종전 IAS 32의 규정에 기초한 회계공시(문단 7~30)와 새로운 위험공시(문단 31~42)이다. IASB는 기존 IFRS 이용자는 IAS 32의 규정을 이미 따르고 있을 것이고, 이러한 회계공시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BC70 IASB는 대부분의 위험공시, 특히 시장위험에 관한 공시는 보고기간 말 현재 수집되는 정보에 기초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IFRS 7이 2005년 8월에 발표되었지만 기업이 2005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IFRS 7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2004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비교 정보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IASB는 2005년에(즉 2006년 1월 1일 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IFRS 7을 적용하는 기업은 위험공시에 관한 비교 정보를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BC71 IASB는 위험에 관한 비교공시는 예측가치를 지니기 위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공시가 덜 목적 적합하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따라서 위험에 관한 공시는 다른 유형의 공시보다 더 빨리 목적 적합하지 않게 되고, 과거회계기준에서 요구하였던 어떠한 공시도 IFRS 7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공시들과 비교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최초채택기업이 아니면서 2006년 1월 1일 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IFRS 7을 적용하는 기업은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에 대한 비교공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결론을 이끌어 내면서 IASB는 더 많은 기업이 IFRS 7을 조기에 적용하기를 권장하는 이점이 제공되는 정보가 줄어드는 단점보다 크다고 보았다.

- BC72 IASB는 이 면제 규정을 다음과 같이 확장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고려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 (1) 2006년 1월 1일 전에 IFRS 7을 적용하는 최초채택기업만이 아닌 2007년 1월 1일 전에 IFRS 7을 적용하는 최초채택기업의비교 정보 제공 의무의 면제. IASB는 2006년 1월 1일 이후에IFRS를 최초로 채택하고자 하는 기업은 2005년 1월 1일 이후에시작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시간이 충분할 것이고,이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대한비교공시 제공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 (2) 최초채택기업만이 아닌 2006년 1월 1일 전에 시작되는 회계연 도에 이 기준서를 채택하는 모든 기업에 금융상품의 유의성에 대한 비교공시 제공 의무의 면제. IASB는 최초채택기업이 IAS 32와 IAS 30을 먼저 한 회계연도에만 적용하지 않고 IFRS 7을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초채택기업에만 특별한 완화 규정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초채택기업이 아닌 기 업은 IAS 32와 IAS 30을 이미 적용하고 있고 2007년 1월 1일 전에 IFRS 7을 적용할 필요는 특별히 없다.
  - (3) 2006년이 아닌 2007년 1월 1일 전에 시작되는 기간의 위험에 관한 비교공시 제공 의무의 면제. IASB는 2006년 1월 1일 후에 IFRS 7을 적용하는 기업은 이 기준서의 발표 이후 준비하는 기간이 만 1년이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 BC72A 2014년 9월에 공표한 'IFRS 2012-2014 연차 개선'에 따라 IFRS 7 문단 B30을 개정하고 B30A를 추가하였다. IASB는 이 개정의 최초 적용일 전에 표시된 기간에 개정 내용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IFRS 7 문단 42E(2)에 따라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자의 지속적관여를 나타내는 자

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공시하여야 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그러한 기간에 개정사항을 적용하려면 이전에 결정되지 않았 던 해당 기간 말 현재 관리용역자산 또는 관리용역부채의 공 정가치를 결정하여야 할 수 있다. 사후판단 없이는 관리용역자 산 또는 관리용역부채의 공정가치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 을 것이다. 또 IASB는 IFRS 7 문단 44M에서 양도공시규정을 비교표시되는 기간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면제 경과 규정 을 두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후판단을 적용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 IASB는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기 초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에만 이 개정사항의 적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IASB는 최 초채택기업도 그와 같은 경과 규정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보았다. IASB는 이 면제에도 불구하고 관리용역자산 또는 관리용역부채를 공시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과거 제 거사건을 소급해서 보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IFRS 7 문단 44AA에 경과 규정을 소급하는 것으로 포함하였다.<sup>26)</sup>

# 상계관련 IFRS 7 개정사항의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적용 가능성(문단 44R)

BC72B

IASB는 2011년 12월에 공표한 IFRS 7의 개정 '공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IFRS 7 상계 관련 개정')'를 요약중간재무제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것은 IFRS 7 문단 44R에 언급된 '이 회계연도 내의 중간보고기간'이라는 문구의 의미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IFRS 7 문단 13A~13F와 B40~B53에서 요구한 공시사항을 IFRS에 따라 작성한 요약중간재무제표에 포함하도록 한 것인지, 그렇다면 이러한 공시사항을 모든 중간기간의 요약재무제표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공시규정을 유효한 최초 회계연도에 표시되는 중간기간의 재무제표에만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IAS 34 '중간재무보고'의 원칙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지가 불명확하였다.

<sup>26) 2016</sup>년 12월에 공표한 'IFRS 2014-2016 연차개선'에 따라 IFRS 1을 개정하여 최초채택기업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단기 면제 규정을 삭제하였다(IFRS 1 문단 BC99 참조).

BC72C

IASB는 요약중간재무제표에 공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한 모든 경우에는 IAS 34를 개정하지만 상계와 관련된 IFRS 7의 개정을 공표하면서는 후속적으로 IAS 34를 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결과적으로 IASB는 상계 관련 IFRS 7 개정 에서 요구한 추가 공시사항을 모든 중간기간에 대해 분명하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IFRS 2012-2014 연차 개선'에서 IFRS 7 문단 44R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러나 이 개정을 고려할 때, IASB는 IAS 34의 일반적 규정에 따라 추가 공시를 포함하도록 요구한다면 그 기준서에 따라 작 성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에 이러한 추가 공시를 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 34에서는 정보의 공시를 누락하여 요약 중간재무제표를 오해하게 된다면 요약중간재무제표에 그 정보 를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IASB는 IAS 34 문단 15에 따라 "기 업은 중간재무보고서에는 직전 연차 보고기간 말 후 발생한 재 무상태와 재무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 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IASB는 IAS 34 문단 25에 따라 "중간재무보고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간기간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모 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공개초안의 주요 변경 요약

BC73 ED 7의 제안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ED 7은 신용위험 변동이 원인인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의 대용치로서 기준금리의 변동에 기인하지 않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을 공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기준서에서는 대체 방법이 더 충실한 표현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대체 방법을 사용하여 신용위험 변동이 원인인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대용치의 공시는 시장위험을 일으키는 시장상황의 변동에 기인하지 않는 공정가치 변동금액이 되도록 수정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대용치를 산정할 때 기준금리

- 의 변동이 아닌 요소들을 제외할 수 있다.
- (2) (IFRS 9 문단 B5.4.8<sup>27)</sup>에 따른 공정가치로 사용하는) 최초 인식 시점의 거래가격과 후속 측정에 사용할 평가기법의 결과 간의 차이에 대한 공시 규정을 추가하였다.
- (3) ED 7에서 제안한,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는 요구하지 않는다.
- (4) 민감도 분석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다.
- (5) 비교표시의 면제를 확대하였다.
- (6) 자본 공시는 IAS 1의 독립적인 개정이고 이 기준서의 일부가 아니다. 경영진이 설정한 자본 목표를 기업이 달성하였는지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의 결과에 대한 공시는 요구하지 않는다.
- (7) 보험회사의 시스템 변경을 줄이기 위해 IFRS 7에 관련되는 IFRS 4의 개정을 수정하였다.

<sup>27) 2011</sup>년 5월에 공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 측정의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그 기준서를 발표함으로써 IFRS 9 문단 B5.4.8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2014년에 상각후원가 측정과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IFRS 9 제5.4 와 제5.5에 추가하였다. 상각후원가 측정과 관련된 요구사항은 현재 문단 B5.4.8에 포함되어 있다.

# 기타 참고사항

#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와 국제재무보고기준 제7호(IFRS 7)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재무보고기준 제7호 (IFRS 7) '금융상품: 공시(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에 대응하는 기준이다.

한국의 법률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부분을 제한적으로 수정하였다.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대상기업과 적용시기를 밝히기 위하여 문단 한3.1, 한44A.1, 한44A.2, 한44A.3을 추가하였다. 우리나라기업이 본래의 적용시기 이후 최초채택기업으로서 이 기준서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본래의 시행일과 경과 규정 그리고 기준서 등의 대체와 관련된 문단 43, 44, 44A, 44C~44G와 45를 삭제하였다. 이러한 수정을 분명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해당 국제회계기준에 추가한 문단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에 접두어 '한'을 붙여 구분하였다. 그리고 해당 국제회계기준의 문단을 삭제한 경우는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 옆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이라고 표시하였다.

# 국제재무보고기준 제7호(IFRS 7)의 준수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는 IFRS 7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하였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를 따르면 IFRS 7도 따르는 것이 된다.

#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이 기준서에서는 금융상품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1.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일부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 2. 공시의 원칙

- (1) 이 기준서에 따라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시하는 정보의 특성에 맞게,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개별 항목과 대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2)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한다.
- (3) 보고기간 말 현재와 회계기간에 노출되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와 기업이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그러한 위험에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등이 포함된다.

# 제ㆍ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 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 서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였다.

제・개정일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23. 10. 27 개정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
	1007호 '현금흐름표와	Amendments to IAS 7 and IFRS 7
	제 110/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공급자금	
	융약정'	
2020. 12. 18. 개정	1 ' ' ' ' ' '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단계	- Phase 2
2019. 12. 20. 개정	이자율지표 개혁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2015. 02. 27.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Improvements to IFRSs 2012-2014
	2012-2014 연차 개선	Cycle
2014. 12. 12. 개정	번역개선	-
2012. 05. 24. 개정	공시: 금융자산과	Disclosures-Offsetting Financial
	금융부채의 상계	Assets and Financial Liabilities
2011. 04. 27. 개정	금융자산 양도에 관한	Disclosures - Transfers of
	공시	Financial Assets
2010. 08. 27.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Improvements to IFRSs
	연차 개선	Improving Disclosures about
2009. 04. 14. / η ' δ	개선	Financial Instruments
	금융자산의 재분류:	Reclassification of Financial
2000. 12. 12. 711 8	시행일 및 경과 규정	Assets - 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Amendments to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and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2008. 11. 28. 개정	금융자산의 재분류	Amendments to IAS 39 and IFRS 7
	금융상품: 공시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이 기준서는 다른 기준서의 제 ·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28).

제・개정일자	타기준서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21. 09. 10. 개정	회계정책 공시	Disclosure of Accounting Policies
		- Amendments to IAS 1
2021. 04. 23.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IFRS 17 Insurance Contracts
	'보험계약'	
2017. 05. 22.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IFRS 16 Leases
	제1116호 '리스'	
2015. 09. 25. 제정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2015. 05. 26. 개정	재무제표 표시	Disclosure Initiative:
		Amendments to IAS 1
2013. 02. 22. 개정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	Investment Entities(Amendments
	서 제1110호, 제1112호,	to IFRS 10, IFRS 12 and IAS
	제1027호의 개정)	27)
2011. 11. 18. 제정	연결재무제표	IFRS 10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2011. 11. 18. 제정	공동약정	IFRS 11 Joint Arrangements
2012. 01. 27. 제정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Amendment to IAS 1 Presnetation
	표시	of Financial Statements:
		Presentation of Items of Other
		Comprehensive Income
2011. 11. 18. 개정	공정가치 측정	IFRS 13 Fair Value
		Measurement

# 개정 주요 내용

# ○ 2008년 11월 개정

- 1. 금융자산을 재분류한 경우의 공시 추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2007년 제정)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개정에 따라 금융자산을 당기손

<sup>28)</sup> 아래 표는 개정안의 최근 공표일 순으로 표시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제정 의결일은 2011년 11월 18일이나 공표일은 2012년 11월 28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보다는 최근에 공표된 것이다.

익인식항목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하였거나 매도가능항목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한 경우의 공시를 추가하였다.

### ○ 2009년 4월 개정

#### 1. 공정가치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2008년)에서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른 공시 요구는 없으나, 이 개정에서는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된 공정가치 서열 체계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2. 유동성 위험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2008년)에서는 모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 남은 계약기간별 분석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 개정에서는 파생상품의 경우 계약상 만기가 현금흐름의 시기에 대한 이해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남은 계약기간을 만기분석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 2011년 11월 개정

- 1. 금융자산 양도 시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경우의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2009년 개정)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에 추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2011년 개정)에서는 양도된 자산과 관련 부채의 관계에 대한 기술 등 두 가지 사항의 추가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 2. 금융자산 양도 시 전체가 제거된 경우의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2009년 개정)에서는 금융자산 양도 시 전체가 제거된 경우에 공시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2011년 개정)에서는 전체가 제거된 경우에 지속적 관여에 관한 정보 등의 상세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 ○ 2012년 5월 개정

- 1. IFRS와 US GAAP의 금융상품 상계 관련 금액에 대한 총액 및 순액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을 제공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2012년 개정)에서는 금융자산·금융부채별로 (1) 상계하기 전 총액, (2)상계된 금액, (3)재무제표에서 상계표시된 순액, (4) 상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괄상계약정 등이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 향과 (5)그러한 영향을 반영한 후의 순액을 공시하고, (1)~(5)의 정보는 다 른 형식이 더 적절하지 않다면 표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개정하였다.